

현안분석 2007-

비교법제 연구 07-01

#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1)

## — 브라질의 FTA —

김동훈 · 김봉철 · 류창호

#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 (1)

## — 브라질의 FTA —

A Study on FTAs of BRICs Countries (1)  
- An Legal Analysis of Brazil's FTAs -

연구자 : 김동훈(한국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  
Kim, Dong-Hoon  
김봉철(영국 런던대 킹스칼리지 연구원)  
Kim, Bong-Chul  
류창호(부연구위원)  
Ryu, Chang-Ho

2007. 4. 30.

## 국문 요약

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는 다수국 공동의 규범이 각국의 무역행위 등을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게 규율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규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FTA로 대표되는 지역 무역협정의 체결추세라는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정부가 체결하고 국회를 통과한 FTA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는 단어는 2003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용조항을 비롯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BRICs의 구성국으로서,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연자원과 남미 최대의 시장을 보유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제3세계의 리더로서 군림하여왔다. 과거의 경제 위기를 상당부분 극복한 브라질은 남미 주변국들과 MERCOSUR를 형성하여 활발한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ERCOSUR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남미지역의 협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현재는 단순한 관세동맹에서 나아가 공동시장과 그 이상의 경제통합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의 구성국들은 MERCOSUR에 지역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권한 등을 위임하여 MERCOSUR 전체의 이름으로 지역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한다. MERCOSUR는 남미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미지역과 유럽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MERCOSUR는 남미지역 국가들을 넘어서, 인도와 아프리카와의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도 MERCOSUR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과 한-미 FTA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FTA 정책의 추진과 함께 기존 무역 관련 규범에 대한 몇 가지 개정을 실시하였고, 구조조정 및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FTA 관련 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FTA의 광범위한 영향과 규범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국내법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 키워드 : 자유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지역주의, 개발도상국,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관세제거, 무역자유화, 허용조항.

# Abstract

RTA and FTA recently became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 vast majority of WTO members are party to one or more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surge in RTAs has continued unabated since the early 1990s until now.

On the other hand, we can hear often another new term, BRICs(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No less a financial judge than the Goldman Sachs investment bank concluded in its 2003 report that the economies of the BRICs could surpass the G6 in less than 40 years, leaving only the US and Japan among the globe's six largest economies.

After that, much attention has been plac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the BRICs, but there is no consensus about whether these countries will be significant economies in the coming decades. These countries have quite different economic histories and strategies for stimulating economic growth, but all have seen high growth rates and have the potential to continue.

During the 1960s and 1970s, Brazil successfully implemented import substitution models, which increased economic growth and allowed its industrial sector to develop and diversify, since it did not have to deal with foreign competition with greater market power. This strategy also helped the country to reduce its reliance on their agriculture such as coffee as its main export, so it succeeded on moving from an agricultural economy to a manufacturing one. However, inward-looking strategies, such as import substitution, are difficult to continue as a long-term strategy because they are costly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ies.

Trade liberalisation in Brazil did not occur until 1990, since the 1980s were spent stabilising the economy after suffering from the oil shocks and dealing with the budget deficit created by import substitution. The reforms reduced tariffs and other trade barrier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negotiations started between Brazil and Argentina, the two major players on the South America, concerning regional community integration. The negotiations resulted in the 1991 Treaty of Asunción. The economically highly dependent countries of Uruguay and Paraguay also acceded. This is the base of the MERCOSUR.

Brazil entered the MERCOSUR in 1994 with Argentina, Paraguay and Uruguay, which moved the country further toward the global economy. MERCOSUR is based on an international treaty establishing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laying down objectives which all sound quite familiar: the realisation of a customs union and a common market, linked to the four freedoms. It also has common policy areas and the accompanying harmonisation. As such it is an intergovernmental structure with a community integration project in mind; in short, quite definitely not limited to a free trade association.

The WTO Agreements contain special provisions which give developing countries special rights and which give developed countries the possibility to treat developing countries more favorably than other WTO Members. These are calle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These special provisions include, for example, longer time periods for implementing Agreements and commitments or measures to increase trading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can also receive technical assistance. The delivery of WTO technical assistance is designed to assist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low-income countries in transition to adjust to WTO rules and disciplines, implement obligations and exercise the rights of membership, including drawing on the benefits of an open,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official name of Enabling Clause in WTO legal system is ‘the 1979 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decision by GATT contracting parties in 1979 allows derogations from the MFN treatment obligation of Article I of the GATT.

The conditions that RTAs under Enabling Clause must meet are less demanding and less specific than those set out in Article XXIV of GATT. In particular, its paragraph 2(c) permits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in goods trade. It has continued to apply as part of GATT 1994 under the WTO, and is therefore still in force. The RTAs under the Enabling Clause include MERCOSUR and AFTA.

Through analysing the articles of WTO agreements on FTAs, We can detect the problems of the articles that could cause trade disputes. These investigations would be grounding to make legal solutions. Especially speaking, the Enabling Clause for developing countries is still ambiguous in legal point of view.

Korea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FTAs at late 1990s.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several ambitious FTA policies including Korea-MERCOSUR FTA since then. Korea-Chile FTA in 2002 became the first fruit of this FTA policy. Two more FTAs(Korea-Singapore FTA and Korea-EFTA FTA)



had effect in 2006. There have been some partial amendments of Korean national laws regarding the FTA policies. Moreover, several new acts have made for the policies.

However, it is still needed to have take a long term view for both the Korean FTA policy and legal infrastructure which is related the policy.

※ Key words : FTA, RTA, MERCOSUR, BRICs, Brazil, WTO, Regionalism, Ouro Preto, Treaty of Asuncion, ALADI, Developing Country, GATT, Enabling Clause.

# 목 차

국 문 요 약 .....	3
Abstract .....	7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9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	21
제 2 장 지역주의와 FTA .....	23
제 1 절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	23
1. 의 의 .....	23
2. 지역주의의 출현 배경 .....	25
3. 지역주의의 발전 .....	26
4. 지역주의의 발전단계별 유형 .....	29
(1) 자유무역협정 .....	29
(2) 관세동맹 .....	30
(3) 공동시장 .....	31
(4) 경제동맹 .....	31
(5) 완전경제통합 .....	32
5. 지역주의의 확산 .....	32
(1) 지역주의 확산현상 .....	32
(2) 지역주의 확산의 원인 .....	33
6. 지역주의에 대한 전망 .....	35
(1) 환경·노동·안보의 문제와 지역주의 .....	35
(2) 다자주의에 대한 영향 .....	36
제 2 절 FTA에 대한 분석 .....	38

1. FTA의 의의 .....	38
2. WTO의 출범과 FTA의 변화 .....	40
3. 유 형 .....	41
4. FTA의 경제적 효과 .....	43
(1) 긍정적 효과 .....	43
(2) 부정적 효과 .....	46
5. 법적 성격 및 근거 .....	47
<b>제 3 장 BRICs 국가로서 브라질 .....</b>	<b>49</b>
<b>제 1 절 BRICs .....</b>	<b>49</b>
1. BRICs의 출현과 의미 .....	49
2. BRICs 경제의 성장원인 .....	51
(1)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	51
(2) 외국인투자 유입과 수출 확대 .....	53
(3) 인구증가 .....	54
3.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55
4. BRICs 사이의 협력 확대 .....	56
5. BRICs와 한국경제 .....	58
(1) 대BRICs 협력 현황 .....	58
(2) 협력의 주요 특징 .....	59
<b>제 2 절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협력 .....</b>	<b>61</b>
1. 브라질의 경제 환경 .....	61
2. 한-MERCOSUR FTA의 진행 .....	63
(1) 한국의 FTA .....	63
(2) 한-MERCOSUR의 FTA 추진 현황 .....	64
(3) 한-MERCOSUR FTA의 영향 .....	65

제 4 장 브라질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	67
제 1 절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 개관 .....	67
1. 브라질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	67
2. 브라질 지역무역협정의 특징 .....	69
(1) 오랜 역사 .....	69
(2) MERCOSUR 중심의 협정체결 .....	69
(3) 단계적 협정 .....	70
(4) 중남미지역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정체결 .....	71
제 2 절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	71
1. ALADI의 출범 .....	71
2.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의 체결과 내용 .....	72
3. ALADI와 브라질 .....	75
제 3 절 MERCOSUR .....	76
1. MERCOSUR의 체결과 발전 .....	76
2. MERCOSUR의 설립과 기능을 위한 협정들 .....	78
3. 아순시온 협약 .....	80
4. Ouro Preto 의정서 .....	82
5. MERCOSUR의 주요 구성조직 .....	86
(1) 공동시장위원회 .....	86
(2) 공동시장그룹 .....	87
(3) MERCOSUR 무역위원회 .....	89
(4) 공동의회위원회 .....	90
(5) 경제사회자문포럼 .....	91
(6) MERCOSUR 행정사무국 .....	91
6. 분쟁해결절차 .....	92

7. MERCOSUR 의회 설립 의정서 .....	93
제 4 절 MERCOSUR의 제 3 자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진행 .....	96
1. 제 3 자와의 지역무역협정 개관 .....	96
2. MERCOSUR-SACU PTA .....	99
3. MERCOSUR-인도 PTA .....	101
4. MERCOSUR-EU 기본협정 .....	103
5. FTAA .....	105
제 5 장 개발도상국으로서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검토 .....	109
제 1 절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의 특별취급 .....	109
1. WTO와 개발도상국 .....	109
(1) 개발도상국가에 관한 WTO 협정의 특별규정 .....	110
(2) 무역 및 개발 위원회 .....	110
(3) WTO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 .....	111
2. WTO 출범 후의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에 대한 대우 .....	111
3.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허용조항 .....	112
제 2 절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허용조항의 적용 .....	115
1. 허용조항의 적용요건 검토 .....	115
(1) WTO 회원국 .....	115
(2)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	116
(3) 내용상의 검토 .....	116
2. ALADI 및 MERCOSUR의 적용 사례 .....	117
제 6 장 FTA 관련 국내법규에 대한 개편 방향 .....	119
제 1 절 FTA 관련 국내법규 .....	119

1. 무역관련 법규 .....	120
(1) 관세법·대외무역법·산업피해구제법의 FTA 규정 .....	120
(2) 한-칠레 FTA 관세특별법 .....	121
(3) FTA 관세특별법 .....	122
(4) 무역관련 법규의 평가와 문제점 .....	124
2.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관련 법규 .....	126
(1)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	126
(2) 무역조정지원법 .....	128
(3)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관련 법규의 평가와 문제점 .....	129
3. 정책의 추진·이행 및 절차 관련 법규 .....	131
(1) 정부조직 관련 규범 .....	131
(2) 자유무역협정 절차규정 .....	132
(3) 한-미 FTA 지원위원회 규정 .....	133
(4) 정책의 추진·이행 및 절차 관련 법규의 평가와 문제점 .....	134
제 2 절 FTA 정책의 추진에 따른 통일적인 규범제정의 필요성 .....	134
1. 미국의 NAFTA 이행법 .....	134
2. WTO 이행법의 제정과 내용 .....	137
3. FTA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률의 제정 .....	139
(1) 법률의 제정을 통한 FTA 정책의 추진 .....	139
(2) FTA 추진·이행법의 내용 .....	140
(3) FTA 추진·이행법과 국내법규와의 관계 .....	142
제 7 장 결론 및 요약 .....	145
참 고 문 헌 .....	147

## ▣ 부 록

[부록1] TREATY OF ASUNCIÓN .....	155
[부록2] PROTOCOL OF OURO PRETO .....	167
[부록3] 1980 TREATY OF MONTEVIDEO .....	187
[부록4] MERCOSUR-INDIA PTA .....	219
[부록5] MERCOSUR-SACU PTA .....	231
[부록6] MERCOSUR-GCC FRAMEWORK AGREEMENT .....	247

## 표 차례

< 표 1 > FTA의 유형 .....	42
< 표 2 > BRICs의 경제성장을 전망 .....	50
< 표 3 > BRICs의 개혁개방정책 .....	52
< 표 4 > 한-MERCOSUR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	65
< 표 5 > 브라질이 체결하여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	67
< 표 6>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의 구조 .....	72
< 표 7 > MERCOSUR의 회원국 .....	77
< 표 8 > MERCOSUR 설립 및 기능에 관한 협정들 .....	79
< 표 9 > 아순시온 협약의 구조 .....	81
< 표 10 > Ouro Preto 의정서의 구조 .....	83
< 표 11 > Ouro Preto 의정서에 규정된 공동시장위원회의 기능 .....	87
< 표 12 > Ouro Preto 의정서에 규정된 공동시장그룹의 기능 .....	88
< 표 13 > Ouro Preto 의정서에 명시된 MERCOSUR 무역위원회 기능 .....	89
< 표 14 > Ouro Preto 의정서에 규정된 MERCOSUR 행정사무국 기능 .....	91
< 표 15 > MERCOSUR 의회 성립을 위한 의정서의 구조 .....	94
< 표 16 > MERCOSUR와 제3자간 지역무역협정 .....	97
< 표 17 > MERCOSUR-SACU 특혜무역협정의 구조 .....	100
< 표 18 > 인도-MERCOSUR P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	102
< 표 19 > MERCOSUR-EU 지역간 기본협력협정의 구조 .....	104
< 표 20 > FTAA 제3차 초안의 구조 .....	106



< 표 21 > 허용조항을 근거로 GATT 및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	113
< 표 22 > FTA 관련 주요 국내법규 .....	119
< 표 23 >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 .....	127
< 표 24 > FTA 관련 정부조직 규정 .....	131
< 표 25 > NAFTA 이행법 제108조의 협상 원칙 .....	136

##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1 절 연구의 배경

현재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규범은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WTO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부터는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체결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른바 지역주의(Regionalism)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WTO체제가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규범인 까닭에 구체적·개별적인 상황에서는 체제의 부적절성 내지 불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FTA를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을 의미한다. FTA를 체결하는 주체들은 협정을 통하여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역내시장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역내무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반면에 이들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여 역내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감수해야 하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FTA가 체결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연계현상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가 300여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범형태는 WTO와 견줄만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WTO와 같은 다자주의와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규범의 두 축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수의 국가들

은 대부분 이 두 체제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기존의 FTA는 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규범에 관한 공유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의 FTA는 무역규범뿐만 아니라 투자 및 경제일반분야, 노동, 지적재산권 기타 다른 분야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FTA의 체결은 단순히 무역분야에서의 관세철폐에서 벗어나 당사국 사이의 경제외적인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조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도 마무리 된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의 FTA 협상은 최근에 타결되었으며, 일본과 인도 등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거나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 역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즉 BRICs 국가들이 국제경제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거대한 인구, 자원, 시장 등을 보유하여 이미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BRICs 국가들 역시 FTA 확산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BRICs 국가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 또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주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와 BRICs라는 두 단어의 연결점을

법적 관점에서 찾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브라질(Brazil)은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연자원, 그리고 남미 최대의 시장을 보유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제 3 세계의 리더로서 군림하여왔다. 또한 브라질은 과거의 경제위기를 상당부분 극복하였고,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변국들과 MERCOSUR(남미공동시장)을 형성하여 EU와 NAFTA에 견줄만한 견고한 역내시장의 확대를 이루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브라질은 MERCOSUR를 통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는 등 지역주의 경제협력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도 브라질이 포함된 MERCOSUR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MERCOSUR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BRICs 국가 특히 남미의 중심국인 브라질의 FTA와 MERCOSUR 등에 대하여 법적인 고찰과 규범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본 연구시리즈의 주된 목적은, BRICs 국가들이 체결한 FTA에 관하여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WTO 규범체제와 연계하여 그 특성 및 법적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연구시리즈의 본문에서는 FTA 일반에 관한 법적인 분석을 초반에 배열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른 본 연구시리즈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분배하였고, 이를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FTA를 포함한 각종 지역무역협정들은 그 목적과 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특혜를 부여하고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 규제들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장벽 제거와 경제협력’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들을 넓은 의미에서 FTA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러한 협정들의 협정문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시리즈 중에서 브라질의 FTA 분석에 관한 제 1 편은, 브라질의 법적 지위와 상황 등을 BRICs 전체 및 WTO 체제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또한 브라질과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FTA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무역협정들에 관하여 전면적인 법적 분석을 통하여, 브라질 FTA의 특성을 도출한다.

WTO의 개발도상국 FTA에 관한 특별규정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의 내용을 분석하고, 브라질 또는 MERCOSUR의 FTA와 관련하여 이 조항의 적용요건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MERCOSUR FTA 체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FTA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국내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제 2 장 지역주의와 FTA

### 제 1 절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 1. 의 의

지역주의(Regionalism)라 함은 국가간 지리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연관성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정 국가들이 무역에 관한 자유주의 및 무차별주의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무역의 움직임을 말한다. 지역주의를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무역체제(regional trading system)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sup>

본래의 지역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WTO의 이념과 같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비되는 개념인데,<sup>2)</sup> 일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당해 지역의 경제적 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y)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sup>3)</sup> GATT와 WTO로 이어지는 다자주의 경제체제는 무차별원칙에 입각하여 국제경제의 기본질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주의 속에서도 지

- 
- 1) 지역주의를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개념과 구분하여, 지역주의가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서 지역화는 그 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주의가 ‘경제적 흐름의 지역적 집중’이라고 하면서 지역화는 경제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01, 429면].
  - 2) GATT, WTO 등과 같이 다수 국가들 사이의 무역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질서나 체제를 가리켜 흔히 다자주의(Multilateralism/Globalism), 다자간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 또는 세계무역체제(World trading system) 등으로 부른다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5면]. 이에 대하여, 다자주의 대신 ‘보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35면].
  - 3) 지역경제공동체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경제블록(economic bloc) 또는 무역블록(trade bloc),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867면].

역주의는 점차 확산되어 왔으며, 지역주의의 규범적 틀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다자주의 규범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를 규율하는 ‘규범적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역내국가 사이에 관세인하를 비롯한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무역자유화를 추구하면서도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조치를 취한다. 이점은 다자주의의 무차별원칙 또는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s: MFN)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양자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온 부분이다.<sup>4)</sup>

지역주의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사이의 협력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리적 인접성’만으로는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지역주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즉, 지역주의를 단순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협력으로 정의한다면, 지리적 인접성을 가진 기존의 지역주의에서 발전하여 문화적·언어적·종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이루는 경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고 경제적 보완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원거리 지역주의 현상<sup>5)</sup>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sup>6)</sup> 새롭게 등장

---

4) 이에 관해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면서도, 지역주의를 다자주의로 이행되는 중간단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대에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서로 상이한 경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조석홍, □□국제통상론□□, 두남, 2001, 227면].

5) 우리나라와 칠레 사이의 FTA처럼, 문화·언어·종교상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고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도 않은 협력이 가능하다.

6) 지역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대략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 정보 및 운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통의 지리적 지역경제를 공유할 것, 무역자유화에 관한 상호보완이 가능한 무역관행과 규범을 보유할 것,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확보할 것, 국제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 강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것, 경제통합을 통한 실제 성장

하는 여러 가지 지역주의 형태는 이와 같은 요건이 지역주의가 성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지역주의 차원에서 체결되는 모든 무역협정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이라고 하며, 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의를 구성하는 법적 기초가 된다. 지역무역협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WTO의 근거규정인 GATT 제24조의 정의에 따르면 ‘체약국 사이에 체약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지역협정’이다.<sup>7)</sup> 지역주의는 지역무역협정을 법적인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며, 현재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대부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2. 지역주의의 출현 배경

지역주의의 개념은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발전하였는데, 지역주의가 발달한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첫째, 세계경제구도의 재편과정에서 지역주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1970년대 일본경제의 부상과 19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 경제국가군(Newly Industrialising Economies: NIEs)의 등장은 당시 미국과 선진 유럽의 국제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고, 이들을 축으로 하던 세계경제구도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상실된 경제우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주의라는 개념을 고안해 낸 것이다.

가능성을 실현할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한다[최승환, 앞의 책, 870면].  
7) 조현, 『지역주의에 대한 한국외교의 대응』, □□외교□□, 한국외교협회, 2002, 65면.  
8)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1998, 165면 ; 이상운,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5, 362~363면 ; 조석홍, 앞의 책, 228~229면.



둘째, 자유무역의 쇠퇴와 보호무역의 확산은 지역주의를 확고히 하였다. 1970년대 이후 나타난 무역경쟁의 심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와 미국의 강력한 무역정책 등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형성되어온 GATT 체제를 약화시키고 1930년대의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확산시켰다. 이러한 보호무역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별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의 이익을 제한적이거나 유지하려는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된 것이다.

셋째, 국가 사이의 상호의존성으로 지역주의가 확대되었다. 정보·통신·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경제에 있어 국경의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국가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이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경제정책에 관하여 협력하기 용이한 국가들 사이에 지역주의가 발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3. 지역주의의 발전

지역주의 개념은 베네룩스(Benelux) 관세동맹,<sup>9)</sup>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지역주의 초기의 ‘지역협력적 의미’는 1960년대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으로 퍼졌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지역경제협력체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협력체는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경제구조의 낙후성, 정치적인 갈등으로 상당수 소멸하였거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로 지속되었다.<sup>10)</sup>

9) 베네룩스 관세동맹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유럽 3개국이 모여 1947년 설립되었다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흡수되었다.

10) 당시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주의는 역내시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체로 수입을 대체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낮은 경제발전단계와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

1970년대의 경제협력체가 EEC와 E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미국이 여전히 다자주의를 고수함에 따라 초기의 지역주의는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미국이 이스라엘, 캐나다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지역주의는 전환기로 들어섰다.<sup>11)</sup> 1990년대부터는 전 세계적인 체제의 변화와 개방정책, WTO의 출범과 함께 지역주의가 확대되었다. 특히 EU, NAFTA, APEC 등의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 이외의 개발도상국들도 다시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지역주의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국간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유럽연합(EU)이며, 개발도상국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이루어진 지역주의의 성공적인 표본은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이밖에도 동남아시아의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 국가들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을 체결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관계 강화 무역협정(ANCERTA)이 있으며, 대규모 경제통합체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는 아

---

한 비효율적인 지원, 그리고 관료적이며 경직적인 산업배치 등으로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원용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통상법률□□, 법무부, 1997, 16면]. 또한 동유럽 등에서 사회주의의 이념아래 구축되었던 지역협력체들은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많은 수가 붕괴되었다[김중렬·권원순, 『지역주의의 새로운 추세』,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25면].

11) 미국의 입장변화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국내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주의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기존의 다자주의가 다른 나라에게만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반성과 함께,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와 상치된다는 기존관념이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으며 지역주의를 통한 지역간 협력이 다자주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원용걸, 앞의 논문, 16~17면].

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도 지역주의의 새로운 발전 형태이다.<sup>12)</sup>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랍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중동·북아프리카의 경제협력인 ‘중동 북아프리카 경제정상회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Economic Summit: MENA)’과<sup>13)</sup>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협력체인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등 지역주의 현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의는 인접한 국가 사이의 경제협력·통합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연계나 다른 지역에 속하는 국가 사이의 경제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NAFTA와 MERCOSUR를 중심으로 한 미주지역 국가들은 범미주 자유무역협정(FTAA)을 통하여 아메리카 대륙 전반의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EU와 MERCOSUR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AFTA와 ANCERTA 사이의 연계와 NAFTA와 EU 사이의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 TAFTA)의 체결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APEC 전략에 대응하여 EU와 아시아 국가들은 포럼형태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를 마련하였다.<sup>14)</sup> 북미국가와 유럽국가 사이의 FTA나 유럽국가와 남미국가의 FTA, 아시아국가와 남미국가 사이의 FTA 체결 등 각각 다른 지역에 속하는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협력도 기존의 지역주의 현상과는 다른 발전된 지역주의 형태이다.<sup>15)</sup>

12) APEC은 1989년에 결성되었으나, 회원국간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EU나 NAFTA와는 달리 비조직적이다[서정두, 앞의 책, 167면].

13) 중동지역의 지역주의 현상은 다자주의 체제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즉, 다자주의가 강화되면 아랍·비아랍의 구분 없이 지역주의를 형성하고, 다자주의가 약화되면 아랍의 실체를 강조하여 아랍·비아랍의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홍성민, 『중동·북아프리카의 경제협력 : MENA』,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0, 195면].

14) ASEM은 1996년 3월 방콕에서 EU 15개국 및 동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첫 정상회의를 가졌고, 2년마다 유럽과 아시아를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고 있다.

15) 북미국가와 유럽국가의 지역무역협정의 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FTA이며, EU와 칠레 사이의 FTA는 유럽과 남미국가의 지역무역협정이다. 그리고 한국과 칠레의 FTA는 아시아국가와 남미국가의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 4. 지역주의의 발전단계별 유형

지역주의는 내부의 결속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몇 가지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서 하나의 지역주의 형태이다. 지역주의를 분류하는 기준은 견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지역주의의 발전 단계별로 그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본다.<sup>16)</sup>

##### (1)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TA)<sup>17)</sup>는 당사국(협정 체결국, 회원국 또는 역내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관하여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면서, 비당사국(협정 비체결국, 비회원국 또는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역주의 형태이다. 따라서 FTA는 당사국의 경제주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법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FTA에서는 당사국들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현상이

16) 지역주의의 발전단계별 분류는 Balassa가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한 경제통합의 5단계로 나누었던 것이 대표적이다[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rgra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61, pp. 2~3.; 서정두, 앞의 책, 166면에서 재인용]. 지역주의 유형을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완전정치통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원용걸, 앞의 논문, 8면 참고].

17)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또는 Free Trade Arrangement)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자유무역지대협정(Free Trade Area Agreement) 등으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8면 참고]. 그러나 ‘자유무역지대’는 ‘관세자유지대’(Customs Free Area)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특구’의 의미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문에서도, 당사국 사이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표기한다.

발생한다. 즉, 비당사국들은 역외관세가 가장 낮은 FTA 체결국에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동일한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높은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체결국으로 이 상품들을 재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각 체결국의 관세정책 실시에는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별 관세정책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FTA에서는 역내에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같은 공동의 시장운영규칙을 설정한다.<sup>18)</sup>

FTA는 1960년 형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1994년 출범한 NAFTA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FTA이다.

## (2) 관세동맹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면서, 비회원국에 대해서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부과하는 등 공동의 무역정책을 채택한다. 즉, FTA에서는 당사국이 역외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관세를 부과하지만, 관세동맹에서는 비회원국에 대한 관세를 관세동맹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정하여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관세동맹의 회원국들은 경제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지만, 무역정책 분야에서는 대부분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대외관세의 결정과 같은 공동무역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업무 수행기관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관세동맹은 FTA보다 대외적인 협상에서 회원국의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다.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는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다.

18)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24~25면.

### (3) 공동시장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회원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 사이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는 형태이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보다 더욱 많은 부분에서 회원국의 공동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권의 많은 부분을 상실한다. 따라서 공동시장은 회원국이 갖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동질성이 가장 중요한 형성의 기반이 된다.

과거 유럽공동체(EC)는 공동시장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MERCOSUR가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밖에 공동시장의 대표적인 예는 카리브 공동시장(Caribbean Common Market: CARICOM), 중미 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 안데스 공동시장(Andean Common Market: ANCOM)이 있다.

### (4) 경제동맹

경제동맹(Economic Union) 또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는 공동시장에서 더욱 발전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회원국 사이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 외에도, 금융정책, 재정정책, 사회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까지 공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경제동맹에서 각 회원국은 각각 별도의 행정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의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경제기구를 설치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독립성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1993년 이후 EURO화 출범전의 유럽연합(EU)<sup>19)</sup>이 이와 같은 단

19) EU 또는 EC는 특성과 존재시기에 따라서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

계의 전형에 해당한다.

### (5) 완전경제통합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또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이란 경제동맹에서 더욱 발전하여, 회원국들의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사회·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완전한 경제적 통합을 이룩하는 형태이다. 또한 완전경제통합에서는 각국이 공동의 통화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완전경제통합은 각 회원국들이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하나의 단일경제단위가 되는 경제통합의 최종단계이며, 어느 면에서는 정치적 통합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EU는 EURO화로 공동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EU는 완전경제통합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 5. 지역주의의 확산

### (1) 지역주의 확산현상

WTO 회원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 회원국은 GATT 제24조 제 7 항에 따라서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WTO에 의하면, 2006년 9월 현재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344개이다.<sup>20)</sup>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는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WTO 출범 이전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124건으로 연평균 약 2.7건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의 지역

---

제통합 등으로 분류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EU는 관세동맹에서 출발하여 경제동맹 상태를 거쳐 완전경제통합의 상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20) 원용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0년의 평가』, 통상법률 70호, 법무부, 2006, 8, 13면.

무역협정 중에서 36건은 1990년 이전에 통보되었으며, 나머지 98건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 이후에 통보되었다.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증세를 보였던 1970년대와 달리, 1980년대에는 잠시 주춤하다가 1990년대 들어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증가현상에 대하여, 당시에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마무리되고 WTO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즉, 지역무역협정이 GATT 체제라는 다자주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WTO가 출범하면서 지역주의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WTO의 출범 이후 2006년까지 약 10년 넘는 기간 동안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220건을 넘는다.<sup>21)</sup> WTO가 출범한 1995년 직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WTO가 국제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WTO로 인하여 개별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공존하였다. 따라서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 이외에도 이해관계가 크면서 ‘뜻이 통하는’(likely-minded) 국가 사이의 무역자유화에 각국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다자주의 체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국이 전략적으로 추구하여 온 무역정책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 (2) 지역주의 확산의 원인

지역무역협정은 WTO와 같은 다자주의를 통해서 원하는 이익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국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체결한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와 비교하여 개별국가의 이익을 보

21) 원용걸, 위의 논문, 13면.

22) 정인교, 앞의 책, 25면.



다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은 협상을 타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각 계약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협상결과 이행이 더 확실해질 수 있다.<sup>23)</sup> 그러므로 지역주의가 확대된 주요한 원인은 다자주의로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각국의 경제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확산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 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985년 체결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FTA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능력을 제고하고 중동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체결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외에도 정치적인 유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남미국가들의 MERCOSUR 체결은 회원국의 경제력 신장을 위한 목적이 주요한 것이었으나, NAFTA와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미지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최근의 중국과 ASEAN 사이의 FTA 체결은, 중국이 일본의 주도권을 의식하여 동남아시아의 ‘화교문화’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화교자본’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해진 ‘화남경제권’ 또는 ‘중화경제’를 형성하는 지역주의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24)</sup>

지역주의의 확산은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에 영향을 받은 점도 있다. 즉, 다자주의만을 고수하던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FTA의 체결을 추진하던 시기는 유럽에서도 경제통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시점

23) 이에 비해 다자주의 체제는 협상타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결된 협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24) 중국은 이와 같은 ‘중화경제’ 전략으로 지역주의 현상에 대응하고 있으며 WTO 가입으로 다자주의 체제에도 참여하고 있다[남광규, 『중화경제: 지역화(Regionalization)를 통한 중국경제의 확대 - 화남경제권과 동남아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68~69면].

과 비슷하였으므로, 많은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지역주의에 대한 다자주의의 느슨한 규범체계가 지역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지역주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자주의 규범인 GATT 제24조는 정교하지 못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번 채택되면 수정되기 어려운 다자주의 규범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1940년대 만들어진 이후에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속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sup>25)</sup> WTO 체제에서도 지역무역협정의 규율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확실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26)</sup>

## 6. 지역주의에 대한 전망

### (1) 환경·노동·안보의 문제와 지역주의

현재의 지역주의가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의 지역주의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었던 주제를 새롭게 규율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세 등에 대한 무역규범은 다자주의나 과거의 지역주의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환경과 노동을 비롯한 비교적 새로운 주제가 NAFTA의 경우와 같이 무역규범과 연계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주제는 다자주의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주의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 제재와 보복이 매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과 환경문제를 연계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NAFTA에서 두드러진다. 이밖에 미

25) 물론, 양해규정과 허용조항 등을 통해서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26)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시리즈 중 [러시아의 FTA 제 2 장]을 참고할 것.

국과 요르단 사이의 FTA에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다자주의 차원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나 미국과 싱가포르 FTA에도 환경문제와 관련된 무역구제 규정을 포함시키려고 하였다.<sup>27)</sup> 안보와 무역의 연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FTA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지역주의에서 새로운 분야와 무역규범을 연계하여 환경보호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빌미로 위장된 보호주의를 추구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지역무역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규율하는 것은 무역과 환경·노동·안보 등의 관심이 더 이상 무역이나 경제와 독립된 사안으로 다루어 질 수 없다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sup>28)</sup>

## (2) 다자주의에 대한 영향

지역주의 현상은 다자주의 체제에 여러 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지역주의의 본질적 특색인 역외국에 대한 ‘배타성’이 심하게 드러난다면 회원국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WTO 회원국 대부분의 무역이 여러 지역무역협정에 입체적·중첩적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속도와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수도 다자주의 규범에 위협으로 작용한다. 결국 지역주의 현상이 더욱 확산된다면 지역주의의 배타성이 다자주의 규범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 규범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다자적(multilateral) 무역자유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자유무역협정협정과 무역·환경 연계정책의 새로운 전개』, □□KIEP동향분석속보□□, 2001, 3면.

28) 강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경이슈』, □□FTA 경제연구회 발표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30면.

지역무역협정의 규율범위가 다자주의 규범보다 더 넓고 자세한 경우가 있다. 투자, 환경, 노동, 관광 등을 비롯한 특정한 범위에 관하여는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규범보다 자세하고 명료한 경우가 있으며, 각국의 특색이나 상황을 배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종 지역무역협정은 이미 다자주의 규범보다 깊게 각국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무역협정은 다자주의 규범에 반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하는데, FTA 보다는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 등 비교적 발전되고 견고한 지역주의 체제가 역내 회원국의 정책이나 법규를 통제하고 다자주의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규범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WTO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규범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줄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자주의 협상이 대체로 느리게 진행되며, 다자주의 규범의 개정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역주의적 경향은 계속되어 다자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sup>29)</sup>

WTO가 세계경제질서를 다자주의 규범으로 규율하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WTO 스스로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GATT 제24조 지역주의 조항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한 지역무역협정은 당사국을 구속하는 법규로 작용한다. 그러나 체결된 많은 지역무역협정의 내용 또는 운용 상태를 분석하면 GATT 제24조의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충분하다. WTO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다자주의 차원에서 지역주의를 수용하면서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의제로 거론하기도 하였다.<sup>30)</sup>

29)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지역주의에 동참하는 이유는, 선진국들과의 무역분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주의나 다자주의 규범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다.

30) 2001년 11월 9일부터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이름을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라고 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의제에는 농업, 서비스, 환경, 지적재산권, 투자, 반덤핑, 보조금 등과 함께 지역무역협정도 포함되었

## 제 2 절 FTA에 대한 분석

### 1. FTA의 의의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등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FTA는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FTA는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형성이 그 출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FTA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체결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주의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관심을 보이면서 몇 개의 FTA를 체결하였고,<sup>31)</sup> 미국의 입장 변화는 그 동안 FTA에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에는 WTO의 성립과 함께 다자주의 체제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오히려 FTA가 체결되는 수는 크게 늘어났다.

FTA는 관세동맹과 함께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관세동맹에 비하여 매우 높다.<sup>32)</sup> FTA

---

다[정재호, 『WTO DDA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3, 54면].

31)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FTA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관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GATT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1980년대 미국의 FTA 정책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철폐 외에도 지역주의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의 추구, 쌍무적인 무역관계 개선과 균형 있는 무역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정책상의 목적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NAFTA가 발효되어 북미지역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49~50면].

32) 특히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95% 이상이 상품무역 또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FTA이고, 관세동맹 등의 기타 지역무역협정은 소

가 관세동맹에 비하여 지역주의의 가장 기본적 형태로 자리잡은 이유는, 협정의 모든 체결국이 동일한 대외관세 정책을 취해야 하는 관세동맹에 비해서 개별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협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3)</sup>

FTA는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일반적인 FTA의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FTA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무역규범분야를 포괄한다. 이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sup>34)</sup> FTA의 범위가 확대되는 주된 원인은 다자주의 체제의 발전과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각국이 다른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sup>35)</sup> 그러나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FTA의 중심요소는 상품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수량제한을 제거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것이다. 즉,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과 상계조치, 예외와 유보사

---

수에 불과하다.

33)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 2003. 5. 22, 6면.

34) NAFTA는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원산지규제,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환경, 노동, 수량제한금지, 관세평가와 세관수속, 기준과 인증, 위생식품검역, 일반예외, 합동위원회, 인적이동 등을 포괄하여 그 대상 범위가 넓다.

35)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25면.

항, 분쟁의 해결에 관한 부분이 FTA 협정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범위를 포함하는 FTA를 좁은 의미의 FTA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FTA에서 더 나아가 투자보장협정, 조세조약, 상호인증협정,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하거나 무역촉진·원활화를 위한 여러 조치<sup>36)</sup>를 첨가하는 FTA도 있다. 이와 같이 FTA의 중심요소에 더하여 부수적인 협정이 포함되는 경우를 넓은 의미의 FTA라고 하며,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FTA가 증가하는 추세이다.<sup>37)</sup>

## 2. WTO의 출범과 FTA의 변화

WTO의 출범으로 인하여 FTA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 WTO 출범 이전의 전통적인 FTA의 목적은 단순한 관세인하 또는 무역의 확대에 있었으나, WTO의 규범들이 무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FTA는 단순한 무역규범의 성격에서 벗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또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FTA의 대상 범위가 넓어진 것도 WTO 출범 이후의 현상이다.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변화하면서 다자주의 규범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그 규율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인데, FTA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즉, 각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무역장벽의 철폐를 기본으로 하였던 기존 FTA의 틀에서 벗어나 투자, 노동, 환경, 경제협력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FTA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시도하였고, 결국 각국이 처한 상황과 협정의 상대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FTA가 출현하였다.

과거의 FTA는 유사한 경제발전단계의 국가 사이에 체결되거나 지

36) 무역촉진과 원활화를 위한 조치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인력·사회·문화의 교류 등이 있다.

37) 삼성경제연구소,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Issue Paper□□, 2001. 2. 27, 3면.

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도 많은 FTA가 체결되었고,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서로 다른 지역주의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도 FTA가 체결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자간 FTA가 기본적인 체결방식이었으나, 여러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sup>38)</sup>

이와 같은 변화는 WTO 체제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각국의 FTA에 대한 시각이 변화한 것과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FTA에 대하여 각국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지역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지역간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는 FTA의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강조되었다. 각국과 WTO는 FTA를 통한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가 결국 다자주의적 차원의 무역자유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3. 유형

일반적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확대하였던 초기 FTA에서 발전하여, 인접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도 FTA가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어느 국가가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인접국가 아닌 다른 지역협력체에<sup>39)</sup> 속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 또는 지역협력체 자체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도 등장하게 되었다. FTA는 이러한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40)</sup>

38) FTAA는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의 34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39) 여기에서 지역협력체란,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의사결정 및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권을 가지는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 집단(bloc)을 의미한다.

40) FTA의 유형을 당사국의 수가 2개국인 양자간 FTA(bilateral FTA), 당사국의 수가



&lt; 표 1 &gt; FTA의 유형

유형	예	효과
국가간 FTA (양자간·복수국간)	한-칠레 FTA (양자간) NAFTA (복수국간)	- 기존 시장의 확대 - 새로운 시장진출
국가-지역협력체 FTA	MERCOSUR-칠레 FTA	- 지역협력체로의 시장편입 - 새로운 시장 진출
지역협력체간 FTA	FTAA	- 대륙간 규모의 시장 확대 - 다자주의 수렴

첫째, 국가간 FTA는 양국 또는 복수국 사이에 FTA를 통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각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가 FTA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FTA의 체결 당사국이 인접하거나 동일한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상대국이 인접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는 주요한 목적이 상대국이 속한 지역협력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간 FTA 중에서 한국과 칠레 사이의 FTA가 양국간 FTA의 예이며, 복수국간 FTA의 형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FTA인 NAFTA가 대표적이다.

둘째, 하나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FTA의 체결이 가능하다. 만일 어느 지역협력체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 지역협력체에 인접한 경우, FTA는 해당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편입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MERCOSUR와 칠레 사이의 FTA가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sup>41)</sup> 멕시코와 EU의 FTA와 같이 어느 국가

3개국 내지 5개국 이하인 복수국가 사이의 FTA(plurilateral FTA), 그리고 당사국이 6개국 이상인 준다자간 FTA(quasi-multilateral FTA)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고준성, 앞의 책, 77면].

41) 칠레는 MERCOSUR와 FTA를 체결하여 MERCOSUR의 준회원국이 되었다.

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협력체가 FTA를 체결하는 경우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협정을 체결한 지역협력체)가 상대방 지역협력체(또는 상대방 국가)에 경제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이의 FTA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가 아니라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FTA를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FTA를 통해서 기존의 지역협력체가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가 발전하여 다자주의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MERCOSUR와 NAFTA 사이의 FTA인 FTAA, 그리고 MERCOSUR와 EU의 FTA 체결을 위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 4. FTA의 경제적 효과

##### (1) 긍정적 효과

FTA의 체결 국가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이룩하고 무역을 활성화시킨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FTA의 역내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역창출효과(貿易創出效果, 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貿易轉換效果, 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진다.

무역창출효과는, 이전에 소비되던 높은 가격의 국내 상품이 FTA 발효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비교우위를 갖는 역내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무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결국 무역창출을 통해 비교우위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FTA 당사국 사이에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특화가 이루어진다.<sup>42)</sup>

그러나 FTA로 인한 무역장벽의 제거는 무역의 변동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FTA의 특혜적인 역내무역장벽의 제거는 역외국에 대한 상대

42) 생산측면에서는 역내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FTA 이전에 효율적인 생산구조로 비교우위를 가진 역외국의 특정제품이 있었다면, FTA의 체결은 기존 역외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해한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무역장벽의 제거와 역외 무역장벽의 유지로 인하여 역외국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역내상품으로 대체되어 역내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즉, FTA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상품이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산업구조, 경쟁성, 포괄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FTA에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능가한다.<sup>43)</sup> 또한 몇 차례의 다자주의의 무역협상으로 역외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sup>44)</sup> 무역전환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FTA로 인하여 단기간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및 경쟁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산업재배치 등은 FTA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이다.

우선 FTA로 역내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제품의 생산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협정이전에 비교우위를 가지던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

---

43) 정인교, 앞의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1, 47면.

44) 다자주의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이란 무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의 국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무역협상을 의미하며, ‘라운드’(round)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목적은 국제무역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의 요소를 제거·완화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WTO 설립이전 GATT 체제에서의 다자주의 무역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까지 모두 여덟 차례 진행되었는데, GATT의 중요 목표가 관세의 인하였으므로 기본적인 논의를 관세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수준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1964년의 케네디라운드는 평균 35%, 1973년의 동경라운드는 평균 33%, 1986년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평균 33%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역내상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킨다.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당사국들은 역내의 외국 기업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할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도 촉진된다. 기업의 경쟁은 상품의 가격인하, 서비스 개선,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효율성은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규제완화와 맞물려 더욱 극대화된다.<sup>45)</sup>

FTA 체결로 역내 투자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FTA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협정<sup>46)</sup>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관세 혜택이나 원산지규정 등으로 단일 투자협정 이상의 투자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를 통해서 주요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려는 경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역내 판매에 있어서도 운송비 등을 줄이고 무관세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FTA의 체결 의도가 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많은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역외국의 기업이 FTA로 형성된 역내 시장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FTA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역내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FTA를 체결하면 생산요소의 재배치(relocation)현상이 나타난다. 협정이전부터 역내 각국에서 생산을 하였던 기업들은 무역장벽의 축소로

45) 그러나 규모의 경제나 기업간의 경쟁효과는 오히려 FTA의 무역전환효과를 기반으로 하여 역내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즉 FTA가 당사국의 무역규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이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박변순·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 31~32면].

46)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자유화 협정에는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과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투자협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이다.

기존의 생산설비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고, 비교우위를 찾아 생산시설의 입지조건에 따라서 산업시설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 생산요소의 재배치 현상은 자본과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역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 (2) 부정적 효과

FTA는 무역과 투자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FTA로 국가경제 전체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과 산업분야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FTA 자체가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FTA를 체결하면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영향력이 작은 국가는 FTA의 틀에 막혀 주변국에 머무르면서 중심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sup>47)</sup>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소비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역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은 역외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다자주의 차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경제가 운용되거나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반감된다. 이에 더하여 단기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약산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 실업문제와 높은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FTA로 단기적인 문제가 커진다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자유화의 폭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FTA의 이행기간이나 유보사항을 설정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

---

47) 주변국에 머무르는 작은 국가는 독자적인 FTA 정책의 추진이 어렵고, 중심국의 경제정책과 규범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것은 산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sup>48)</sup>

## 5. 법적 성격 및 근거

FTA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의 확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므로, 국제법적 기본 단위인 국가<sup>49)</sup>가 체결하는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sup>50)</sup> 따라서 FTA는 조약의 성립요건<sup>51)</sup>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국제경제규범으로 작용한다.

FTA를 체결하는 경우 협정의 서명권자는 국가원수이거나 국가원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FTA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서명 후 협정 체결국의 국가원수가 FTA의 효력에 국가가 구속받겠다는 비준을 하여야 한다.<sup>52)</sup>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비준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다.<sup>53)</sup>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

48) 정인교, 앞의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0~51면.

49) 물론 국가 이외에도 지역무역협정에 의해 설립된 지역협력체가 FTA를 체결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은 FTA의 체결에 대하여 소속 국가가 권한을 부여하고 국내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므로,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5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제2조 제1항.

51) 조약의 성립요건은 조약당사자가 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질 것,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자가 조약체결의 정당한 권한을 가질 것, 대표자 사이에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조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할 것, 조약이 국내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절차에 따라 체결될 것 등이다[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849면].

52)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3조].

53)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

해서 체결된 FTA는 국내법적인 근거와 효력을 가진다.<sup>54)</sup> 미국이나 EU와 같이 FTA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별도의 국내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sup>55)</sup>

FTA에 대한 WTO 차원의 근거규정은 GATT 제24조, GATS 제 5 조,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합의된 허용조항(Enabling Clause), WTO 설립 협정 부속서 1A 중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등이 있다.<sup>56)</sup>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체결되는 FTA는 당사국이 아닌 국가와의 역외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가 FTA의 체결로 인하여 그 이전의 규제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야 하고, FTA의 당사국 사이의 관세나 기타 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FTA를 체결한 당사국은 즉시 WTO에 통보해야 한다.

---

호통상항해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 60조 제 1 항].

5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6 조 제 1 항].

55)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시리즈 중 [인도의 FTA 제 2 장]을 참고할 것.

5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시리즈 중 [러시아의 FTA 제 2 장]을 참고할 것.

## 제 3 장 BRICs 국가로서 브라질

### 제 1 절 BRICs

#### 1. BRICs의 출현과 의미

최근 들어 BRICs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경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BRICs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영문 국가명 첫 글자를 묶어서 만든 단어이다. 2003년 10월 미국의 투자자문회사인 Goldman Sachs가 작성한 보고서<sup>57)</sup>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위 4개국이 각 대륙을 대표하여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의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RICs 전체 경제규모는 2039년에 현재의 주요 선진국들인 G6(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합친 경제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중국은 2015년에 일본을 추월하고 2039년까지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고서는 성장속도가 가장 느린 브라질도 2040년까지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57) 이 보고서는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s Paper No. 99, Goldman Sachs, 2003]이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 대륙별로 가장 중요한 개도국들을 뽑아 경제성장 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에 발표된 'How Solid are the BRICs?'라는 보고서에서는 BRICs 국가들의 최근 수년간의 성장세가 기존의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라고 재확인하였다[이동휘, 『BRICs의 국제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우리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11. 10, 2면].



< 표 2 > BRICs의 경제성장을 전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브라질	0.5	4.9	2.3	3.1	3.7	3.6	3.8	3.9
러시아	7.3	7.2	6.4	6.4	5.2	4.5	4.1	4.0
인도	8.6	7.5	8.4	7.6	7.2	6.8	6.4	6.3
중국	10.0	10.1	9.9	10.6	9.0	8.3	8.0	7.8

BRICs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들 국가들이 모두 인구와 국토면적에서 세계 7위권 내에 속해있는 대국이라는 점이다. BRICs 4개국을 합한 인구 점유율은 세계의 약 42.5%, 국토면적은 약 28.7%에 달한다. 또한 경제규모는 2004년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중국이 2위, 인도가 4위, 브라질이 9위, 러시아가 10위 등으로 BRICs 4개국이 모두 10위권 내에 포함되고, 이 수치는 세계 전체의 약 24.6%에 해당한다. 한편 BRICs 국가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량도 많다. 농산품에서도 브라질이 사탕수수, 중국이 쌀, 인도가 밀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다. 이밖에도 인구의 평균연령이 선진국들보다 낮아 미래의 노동력 공급에서도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4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언제나 대국들로 인식되어 왔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들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대국으로 BRICs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최근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면서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대의경제의 비중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세계경제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BRICs의 부상은 이미 상당 부분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는 중국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에게도 제 1의 교역 및 투자대상국이 된 점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2. BRICs 경제의 성장원인

BRICs 경제가 주목받는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이들이 추진해온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정책을 들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수출 확대가 역시 큰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선진국의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이들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sup>58)</sup>

### (1)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최근 BRICs의 경제성장은 공통적으로 각국의 내부에서 시장지향적인 개혁 및 개방 정책이 추진되어 온 점과 관련이 깊다. 중국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는 1990년대 초부터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이 추진되어 온 결과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산업과 무역이 확대되면서 빠른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과거 BRICs 국가들은 사회주의 정책(러시아, 중국) 또는 수입대체 위주의 공업화 정책(인도, 브라질)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해

58) 주동주, □□신흥 경제대국 BRICs와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2005. 12, 22면.

왔다. 그런데 20세기의 최후반기에 들어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 표 3 > BRICs의 개혁개방정책

	내 용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 추진</li> <li>• 공공부채 축소와 물가안정을 최우선</li> <li>• 연금 및 세제개혁으로 정부지출 축소</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자유화와 사유화</li> <li>• 변동환율제 도입, 상품가격 및 임금에 대한 국가통제의 철폐, 무역 자유화</li> <li>• 시장경제 정착과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 및 법규의 개혁</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완화와 대외개방</li> <li>• 통제완화 - 산업인가제도 철폐, 독점규제 완화, 시장진입 및 퇴출장벽의 완화,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li> <li>• 대외개방 - 수입규제 완화, 관세 인하, 외환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유치</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기업 주식화, 농업집단화 해체, 임금에 시장 논리 도입 등 소유와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li> <li>• 조세 및 금융제도 개혁으로 사유화와 상업활동의 자유화 등 촉진</li> <li>• 무역의 국가독점 완화, 외국인투자·관광·차관 등에 대한 규제 완화</li> <li>•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설치</li> <li>• 2001년 WTO 가입과 각종 국제행사 유치 등 대외개방 가속</li> </ul>

각국마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는 과거의 국가 중심 경제체제에서 시장 중심 체제로의 전환과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을 통해 자본

주의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경제의 실패가 확인된 1990년대 이후로는 세계화의 물결에 이들 국가들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 외국인투자 유입과 수출 확대

최근 BRICs 각국의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입에 의한 산업 성장과 수출 신장에 힘입은 바 크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의 인상적인 성장에 외국인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크게 늘어왔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2년부터는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535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세계 1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었는데, 2005년에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724억 달러가 되었다. 인도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0년대 후반에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시 2001~2002년에는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5년에는 66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개방정책 초기부터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각 산업 부문의 빠른 성장과 수출 확대가 이루어져 왔고, 이것이 양국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sup>59)</sup> 2005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146억 달러였고, 브라질은 151

59) 중국의 수출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줄곧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개방정책 초기인 1979년에 1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던 수출은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sup>60)</sup>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의 증가 추세가 일정하지 않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도 최근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 (3) 인구증가

BRICs 경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인구의 증가이다. BRICs 4개국의 인구 변동 전망을 본다면 러시아의 경우 2000년 이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중국은 2040년 이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와 브라질은 205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 경부터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선진국의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BRICs의 인구 증가 추세는 그 자체가 BRICs 경제의 부상에 커다란 요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61)</sup>

---

1994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5,934억 달러를 기록하여 25년 만에 무려 44배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차지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외국인 투자가 매우 큰 기여를 해왔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도 개방정책 도입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각 산업 부문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최근 인도 경제의 성장을 상징하는 IT 산업의 빠른 발전에 외국인투자가 결정적 역할을 해왔음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60) 조양현, 『OECD 회원국 및 신흥경제권의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분석』,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6. 8, 14면.

61) 특히 브라질의 경우 다른 BRICs 국가들보다 낮은 연평균 3~4% 내외의 성장 추세 하에서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인구증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3.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BRICs 국가들은 동서 냉전시대에 미국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립하던 국가들의 중심축이었거나, 최소한 자립적 경제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들이 현재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적극적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우선 BRICs 각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현황에서 드러난다. 4개국 모두 최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들이다. 이는 BRICs 국가들이 이미 미국 등 기존의 선진국들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면서 세계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세계 3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그 자체가 높은 경제성장으로 무역 수요를 창출하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BRICs 각국의 주요 국제기구 가입 현황도 이들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우선, 구소련의 몰락 후 이를 승계한 러시아가 IMF와 World Bank에 가입한 점은 사회주의체제의 종주국이 자본주의체제의 일원으로 편입하였음을 시사한다.<sup>62)</sup> 또한 러시아는 GATT를 승계한 WTO에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지체되고 있다.<sup>63)</sup>

중국은 IMF와 World Bank에는 일찍 가입한 상태였으나, WTO의 가입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다. 중국은 1983년 GATT의 옵서버 자격을 얻은 뒤 1986년에 가입을 정식 신청했으나, 미국 등 회원국들과의 이견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WTO 출범 후인 1999년이 되어서야

62) 구소련은 이 체제에 대항해 COMECON 체제를 주도하면서 동맹국 경제를 이끌었다.

63) 현재 러시아의 WTO 가입 승인을 놓고 이견이 빚어지고 있는 주요 사안은 농업 및 에너지부문에 대한 보조금 삭감, 금융, 보험, 통신시장의 개방 등이다.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0년에는 유럽연합과 협상을 마친 후 실무 작업을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마침내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sup>64)</sup>

IMF와 World Bank, 그리고 WTO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체제에 동맹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를 통해 무역과 금융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역에서는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에 의해 회원국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관세 인하가 자동 적용되며, 금융에서는 차관 및 투자 유치가 한결 쉬워진다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들에게 관세를 인하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여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평균 관세율을 40%에서 15.3%로 대폭 인하했으며, 2005년 말까지는 이를 다시 9.4%로 인하할 계획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 시장의 개방을 통해 그 자체가 세계경제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제 3세계의 중주국을 자처하는 인도와 브라질은 IMF, World Bank, WTO 등에 모두 창설 멤버로 가입하였다.

#### 4. BRICs 사이의 협력 확대

최근 BRICs 국가들간의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BRICs 라는 용어가 등장한 2003년 말 이후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BRICs간의 교류 확대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발생적 현상이기도 하고, BRICs라는 집단의 자의식 형성에 따른 인위적 유대

---

64) 이 밖에 개방 이전인 1977년에 21개의 국제기구와 71개 비정부기구에 가입하고 23개의 조약에 서명하였던 중국이, 1994년에는 50개의 국제기구와 955개의 비정부 기구에 가입하고 125개의 다자조약에 서명하였다. 1996년에 이르면 중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숫자가 미국의 8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 노력이 더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BRICs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경제질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제를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외교 무대에서 빈번히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BRICs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9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20개 개도국그룹 회의를 주도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개방 요구를 반박하고 선진국의 농산물 시장도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sup>65)</sup> 또한 BRICs 국가들은 인도, 브라질, 남아공화국 등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배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UN과 WTO 등 각종국제기구가 개도국의 목소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2004년 개최된 중국-브라질, 중국-인도간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공동성명에 채택하였다.

최근 BRICs 국가들 사이의 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모두 정상들간의 교환 방문을 실현하면서 BRICs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주도해왔는데, 중국과 BRICs 국가들 사이의 교역은 최근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인도, 러시아, 브라질 교역은 2000년에서 2004년 동안 각각 연평균 46.9%, 27.5%, 44.3% 증가하였다. 또한 2004년 말 현재 인도와 브라질의 2대 수출시장이고, 러시아의 3대 수출시장이며, 수입 면에서는 인도, 러시아, 브라질에서 각각 3위,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sup>66)</sup>

브라질이 주축이 되어 있는 MERCOSUR도 각각 인도,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4월의 정

65) 이 그룹에 참가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 대만, 터키, 베네수엘라 등이다.

66) 주동주, 앞의 책, 62면.



상회담에서 2008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를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4년에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발족하였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은 석유, 알루미늄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 5. BRICs와 한국경제

### (1) 대BRICs 협력 현황

한국의 BRICs에 대한 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과 수입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199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전체 무역 성장세를 주도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3국의 무역도 모두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4년 이후에는 브라질을 상대로 한 무역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중국 무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크지 않다.<sup>67)</sup>

BRICs에 대한 수출 증가 추이는 지난 10여 년간 전체 수출증가율의 두 배를 오르내렸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995~2004년간 전체 수출증가율의 세 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고, 그 결과 2003년 이후로 중국은 우리의 전통적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제1위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도와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브라질에 대한 수출도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BRICs 전체에 대한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집적회로반도체 등의 전자부품과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학기기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자동차 부품등 주로 산업용 부품과 소재가 큰 비중을 차지

67) 대중국 수출은 2005년 1~9월 기준 총수출의 21.9%, 그리고 대 BRICs 수출의 85.0%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세 나라가 우리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 내외로 미미하다.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우리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

나머지 3국에 대한 수출도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소재 및 부품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무선전화기, 컬러TV 등 고가의 소비재 수입도 동시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공업화진전에 따른 수요 확대로 최종재와 산업용 소재 및 부품의 수입 수요가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는 철강제품과 IC 회로 등 산업용 부품과 직물의류 등 일부 소비재의 수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들로부터는 원유, 철광석, 알루미늄 등 일차 상품과 나프타, 면사 등 일차 가공품의 수입이 중심을 이룬다.

투자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해마다 투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중국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 미국에 이어 2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이외에 BRICs 국가들에 대한 산업협력의 주요한 사업으로는 플랜트 수출과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BRICs 국가들과 모두 정상외교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 및 통상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 (2) 협력의 주요 특징

BRICs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도출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68)</sup>

68) 주동주, 앞의 논문, 82~88면 참고.

- 압도적인 중국 의존도

BRICs에 대한 우리의 산업협력 현황을 놓고 볼 때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대 BRICs 무역은 4개국 전체에 대한 수출의 약 80%, 그리고 수입의 약 76%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국 집중도가 더욱 심하다. 우리나라의 총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투자건수의 약 97%, 그리고 금액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되었다.

- 대규모 무역흑자

무역 면에서 우리의 대 BRICs 무역은 압도적인 수출 우위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무역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BRICs에 대한 무역은 중국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흑자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압도적인 부분이 BRICs와의 무역에서 발생해 왔는데, 그 수치는 전체 무역흑자의 약 70%에 해당한다. 특히 과거 적자를 기록해오던 러시아, 브라질과도 2005년을 넘어서면서 흑자를 기록하여, BRICs 4개국에 대한 무역이 모두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BRICs 국가들이 우리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외화획득을 위한 시장으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일방적인 수출 특화

다음 무역상품 구조면에서 본다면, 대BRICs 무역은 우리가 공산품(최종재 및 소재, 부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선-후진국간 무역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은 BRICs 국가들이 우리 공산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서 BRICs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공업국가로서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추구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조업의 거의 모든 제품 분야에서 강한 수출특화 구조를 지니고 있는 BRICs 국가들은 이상적인 무역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해외생산기지로서의 BRICs

BRICs에 대한 투자의 90% 내외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고, 업종 면에서는 80% 이상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어 BRICs가 무엇보다도 우리 제조업체들의 해외생산기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RICs내에서 본다면 국가별로 다소간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도하면서 건당 규모가 중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인도의 경우 중국보다 현지시장 개척을 노린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경우 1인당 소득이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낮은 생산비를 구현할 수 있음에도 아직 중소기업들의 투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협력

### 1. 브라질의 경제 환경

브라질은 오랜 기간 동안 군부정권과 수입대체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무역에 중심을 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아

르헨티나 등 주변 국가들과 MERCOSUR를 설립하면서 무역자유화 및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후반 금융 외환위기 이후에는 안정화를 진행하면서, MERCOSUR 역내시장의 확대와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된 정치상황 속에서 꾸준한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국제신용도 상승과 MERCOSUR의 발전으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은 빈부격차, 치안불안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은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변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나 테러 등으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69)</sup>

브라질 경제의 주요 성장요인으로는, 풍부한 부존자원, 거대한 시장 규모 및 발전된 국내산업, 건전한 경제정책의 지속, MERCOSUR 등 지역경제협력의 발전 등이 꼽힌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성장에 대한 장애요인들도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대표적 장애요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채, 낮은 저축률과 투자재원의 해외 의존, 빈부격차와 치안불안 등이 꼽힌다. 게다가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라 불리는 복잡한 법체계, 고율의 세금, 높은 금융비율, 관료주의, 인프라 부족 등도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브라질의 주요 산업은 커피 및 사탕수수 등의 대규모 농업, 각종 광업 및 철강 생산,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등이며, 이밖에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업의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최근 브라질의 IT 산업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1959년부터 국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양국 정부 간에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였다.<sup>70)</sup>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무역은 2004

69) 브라질의 GNP는 2004년 3천3백 달러, 2005년에는 4천 3백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2004년에 4.9%, 2005년에 2.3%를 기록하였다.

70) 우리나라와 브라질 정부 사이에 체결한 주요 협정은, 문화협정(1967), 이중과세방지협약(1991), 과학기술협력협정(1995), 투자보장협정(2001), 원자력협력협정(2002),

년 약 4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전기, 전자, 기계, 섬유류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목재, 펄프, 사료, 커피 등이다.

## 2. 한-MERCOSUR FTA의 진행

### (1) 한국의 FTA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무역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WTO 차원의 무역환경 개선만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개방정책이 필수적이고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FTA가 다양한 무역 분야에서 WTO 보다 발전된 규범형태를 포함하므로, 개방정책에 수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 스스로 FTA의 체결 등이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의한 것은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처음이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국내 산업과의 상호보완성, 해당지역에서의 비중, FTA의 체결 의사 등을 감안하여 칠레와의 FTA 협상을 우선 시작하기로 의결하였다. 칠레와의 무역은 공산품 위주의 수출과 원자재 수입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칠레가 중남미 각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칠레 이외에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여러 국가들과 함께 FTA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한-칠레 FTA<sup>71)</sup> 체결 이후 한

일반사증면제협정(2001) 등이다.

71) 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 FTA,<sup>72)</sup> 한-EFTA FTA<sup>73)</sup>를 완료하고, 최근 미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이밖에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히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 및 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sup>74)</sup>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FTA 전략은 첫째, 동시다발적인 추진으로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마다 나타나는 서로 다른 효과들을 상호 상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흥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FTA 내용에 있어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를 지향하는 것이다.<sup>75)</sup> 넷째,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sup>76)</sup>

## (2) 한-MERCOSUR의 FTA 추진 현황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 국가들과 설립한 MERCOSUR를 통하여 다른 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MERCOSUR는 이러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권한을 각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한다. 한국과 MERCOSUR는 지난 2004년부터 FTA 또

---

72) 2006년 3월 발효.

73) 2006년 9월 발효.

74)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의 법적 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 시리즈 중 [인도의 FTA 제6장]을 참고할 것.

75)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WTO 규범을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한다.

76)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수차례의 공동연구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와 MERCOSUR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77)</sup>

< 표 4 > 한-MERCOSUR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일 정	내 용
2004. 11	대통령 남미 순방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5. 5. 4~5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 (아순시온, 파라과이)
2005. 8. 17~18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 (서울)
2006. 3. 2~3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FTA) 공동연구 제 3차 회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6. 10. 31 ~11. 1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FTA) 공동연구 제4차 회의 (브라질리아, 브라질)

당초 양자간 FTA의 추진 계획은 2006년 말까지 공동연구를 마무리 하고, 2007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말에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이었으나, 그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 (3) 한-MERCOSUR FTA의 영향

우리나라와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 사이의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무역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MERCOSUR에 대한 수출의 상당부분을

77) [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9](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9)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무역이 받을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브라질은 정보통신 제품과 일반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정보통신 제품, 전기전자 등 완제품의 경우 14-35%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첨단제품, 자본재 등의 경우 0%의 관세율 또는 저렴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자동차 품목으로 수입관세가 35%이며, 가전제품 등 일반 완제품의 경우 14% 내지 20% 내외이다.

따라서 FTA 추진으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부품류, 기계류, 타이어, 직물 등의 품목에서 큰 폭으로 수출확대 가능할 것이다. 반면, 과일류, 커피, 설탕, 대두 등의 농산물과 철광 등의 광산물 수입증가도 예상된다.<sup>78)</sup>

---

78) KOTRA 통상전략팀, 『한-MERCOSUR FTA 체결의 효과 분석』, 2005. 6, 2면.

## 제 4 장 브라질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분석

### 제 1 절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 개관

#### 1. 브라질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브라질은 1960년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기구(LAFTA) 설립을 위한 몬테비데오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의 경제협력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LAFTA가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LAIA)로 대체되면서 이를 위한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MERCOSUR 회원국으로서 다른 중남미지역의 국가들과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중남미지역 외의 국가들과도 여러 종류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협정들 역시 MERCOSUR를 통한 것이었다. 다음은 현재 브라질이 체결하여 발효 중인 주요 지역무역협정들이다.<sup>79)</sup>

#### < 표 5 > 브라질이 체결하여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1980 Treaty of Montevideo for Asociación Latino 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 체결 1980. 8. 12 / 발효 1981. 3. 18
- 남미공동시장 설립을 위한 아순시온 협약(Treaty of Asunción for MERCOSUR) 체결 1991. 3. 26 / 발효 1991. 11. 29
- 브라질 - 멕시코 경제보완협정 제53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3) 체결 2002. 7. 3
- 브라질 - 수리남 부분적 경제보완협정 제41호(Partial Scope Economic Com-

79) [http://www.sice.oas.org/Trade/bra\\_e.ASP](http://www.sice.oas.org/Trade/bra_e.ASP)

- plementation Agreement No. 41) 체결 2005. 4. 21
- MERCOSUR - 안데안공동체(Andean Community)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the Andean Community and MERCOSUR) 체결 1998. 4. 16
  - 브라질 -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베네주엘라 경제보완협정 제39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39) 체결 1999. 8. 12 / 발효 1999. 8. 16
  - MERCOSUR - Andean Community 경제보완협정 제56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6) 체결 2002. 12. 6
  - MERCOSUR - 페루 경제보완협정 제58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8) 체결 2003. 5. 25
  - MERCOSUR -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경제보완협정 제59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9) 체결 2003. 12. 16
  - MERCOSUR - 볼리비아 경제보완협정 제36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36) 체결 1996. 12. 17 / 발효 1997. 3. 2
  - MERCOSUR - 칠레 경제보완협정 제35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35) 체결 1996. 6. 25 / 발효 1996. 10. 1
  - MERCOSUR - Egypt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 2004. 7. 7
  - MERCOSUR - European Community 지역간 기본협력협정(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1995. 12. 15 / 발효 1999. 7. 1
  - MERCOSUR - Indi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 2003. 6. 17
  - MERCOSUR - India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체결 2004. 1. 25
  - MERCOSUR - Mexico 경제보완협정 제54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4) 체결 2002. 7. 5
  - MERCOSUR - Mexico 경제보완협정 제55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5) 체결 2002. 9. 27
  - MERCOSUR -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체결 2004. 12. 16

## 2. 브라질 지역무역협정의 특징

### (1) 오랜 역사

브라질이 체결한 주요 지역무역협정들을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LAFTA 협정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은 이 시기부터 남미지역 주변국가들과의 활발한 지역경제협력을 추구하였는데, 1980년대 이후 그 협력의 틀이 ALADI로 변화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의 수는 더 늘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지역의 LAFTA와 ALADI 경제협력은, 1957년 유럽에서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그것을 계승하는 EC의 자극이 컸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ALADI 체제에서 시작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긴밀한 경제협력과 MERCOSUR의 설립은 브라질의 지역주의에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이후부터 주변 국가들과 체결한 수많은 지역무역협정들은 브라질의 역내시장의 확대와 경제적 영향력의 신장에 도움을 주었다. 이 시기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의 출범과 맞물려 있다.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 현상이 주로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에 비추어 보면, 브라질과 브라질이 주도한 남미지역의 지역주의 현상은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셈이다. MERCOSUR의 회원국들이 선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MERCOSUR의 발전단계가 상당한 수준인 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협력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 MERCOSUR 중심의 협정체결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은 MERCOSUR 출범 이후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것은 MERCOSUR가 국제법적 법인격을 취득하여 지역무역협정

의 당사자로 직접 나서게 되면서 협정 체결의 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즉, MERCOSUR의 회원국가들 사이의 많은 협정 체결 이외에도, 주변 국가들과 MERCOSUR의 협정 체결이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Andean Community와의 협정과 그 소속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지역무역협정들, 또한 칠레 및 볼리비아 등과의 경제보완협정은 MERCOSUR 또는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수를 대폭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주의의 확산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고,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 역시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집트,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관세동맹과의 협정 체결과 협력 움직임은 MERCOSUR가 남미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강화하였다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EU 및 NAFTA 지역과의 연계 협상이 장기간 동안 진전되면서, MERCOSUR가 거대규모의 시장연계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 (3) 단계적 협정

브라질 및 MERCOSUR의 지역무역협정들은 몇 단계의 발전을 통하여 무역자유화 및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MERCOSUR 자체의 구성을 보면, 아순시온 협약을 시작으로 Ouro Preto 의정서 등 새로운 협정들을 추가하면서 그 조직이 더욱 견고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MERCOSUR가 제 3 국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체결하는 협정의 성격도 그러하다. 2003년에 체결된 MERCOSUR-인도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A)은 양자간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자 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었고, 이듬해에 체결된 MERCOSUR-인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는 양자간의 관세축소와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집트와 EC를 상대

로 체결한 기본협정들은 차후 협상과 연구를 통하여 PTA 또는 FTA 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 (4) 중남미지역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정체결

MERCOSUR가 최근까지 체결하였거나 진행 중인 지역무역협정이 대부분 중남미지역의 국가들 또는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브라질과 브라질이 주도한 MERCOSUR 회원국들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브라질은 1960년대부터 약 20년 동안의 군부정권이 내수시장 육성과 제 3세계국가들과의 연계를 기본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1980년대 이후에도 크게 작용하였는데, 그러한 결과 얻어진 결과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 멕시코 등의 개발도상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선진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지역과 북미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또는 추진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 제 2 절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 1. ALADI의 출범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sociación Latino 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는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1980 Treaty of Montevideo)을 통해서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통합을 위해 출범하였다. ALADI는 1960년 몬테비데오 협약으로 출범한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기구(Asociación Latino Americana de Libre Comercio, ALALC/Latin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LAFTA)를 대체하여,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를 강화하였다.<sup>80)</sup>

80) LAFTA는 당시의 회원국들의 경제적 특이성을 고려, 역내 국가들간의 수입관세

ALADI는 각 회원국 사이의 개별적인 무역협정의 체결을 장려하고, 이러한 협정들이 축적되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역내관세의 축소 및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역내관세의 제거와 대외관세의 통일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ALADI 체제 내에서 회원국들 사이의 역내무역을 촉진하는 많은 협정들이 체결되었는데,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면서 MERCOSUR 출범에 밑거름이 되었다. 현재까지도 ALADI 체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경제통합은 이제 MERCOSUR를 중심으로 강화되어가고 있다.

## 2.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의 체결과 내용

ALADI를 설립하는 법적 기초는 1980년 8월 12일에 체결된 몬테비데오 협약(1980 Montevideo Treaty)이다. 이 협약에는 라틴아메리카 11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주엘라)의 외무장관들이 서명하였다. 본 협약은 1960년 몬테비데오 협약으로 설립된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기구를 대체하는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의 설립을 명시하며,<sup>81)</sup>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었다. 협약의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다.<sup>82)</sup>

### < 표 6>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의 구조

제 1 장 목적, 의무, 원칙 제 1 조 - 제 3 조
-----------------------------------

인하를 위해 회원국들 간의 주기적이고 선별적인 협상방식을 채택하였다. 회원국의 실정에 맞춘 이러한 협상 모델은 초기에는 역내 국가들 사이의 교역을 증진하는데 효과를 보았으나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 70년대 들어서면서 그 실효성을 거의 상실했다.

81) 1980 몬테비데오 협약 제 1 조.

82) <http://www.aladi.org/nsfaladi/juridica.nsf/inicio2004i>

제 2 장 체 계
제 4 조
제 1 부 지역특혜관세
제 5 조
제 2 부 지역협정들
제 6 조
제 3부 일부협정들
제 7 조 - 제14조
제 3 장 상대적 저개발국에 대한 호의적 제도
제15조 - 제17조
제 1 부 지역협정들
제18조
제 2 부 일부협정들
제19조 - 제23조
제 4 장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및 경제통합지역들과의 협력과 통합
제24조 - 제25조
제 5 장 타 경제통합지역들과의 협력
제26조 - 제27조
제 6 장 설치조직
제28조 - 제43조
제 7 장 일반규정
제44조 - 제51조
제 8 장 법적 지위, 면제, 특권
제52조 - 제54조
제 9 장 최종규정
제55조 - 제64조
제10장 이행규정
제65조 - 제69조

본 협약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공동시장 형성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sup>83)</sup> 또한 회원국의 정치 및 경제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



원주의, 각 회원국 사이의 개별 무역협정의 양적 증가와 이를 누적하여 점진적으로 남미시장의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렴주의, 다원주의와 수렴주의의 실천에 있어서 일부 협정들에 대한 융통성, 경제 발전에 따른 회원국 분류와 이들에 대한 차등적 대우 등이 본 협약의 기본원칙이다.<sup>84)</sup>

본 협약은 회원국들의 지역관세특혜, 지역협정, 일부협정 등을 통하여 경제특혜지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협정’(Regional scope agreement)이란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협정이며, 본 협약의 목적과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sup>85)</sup> 또한 ‘일부협정’(Partial scope agreement)이란, ALADI의 일부 회원국들이 체결하는 ‘일부범위에 적용되는’ 협정을 말한다.<sup>86)</sup> 이러한 협정들은 그 규율 대상에 따라, 무역협정(Trade agreement),<sup>87)</sup>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sup>88)</sup> 농업협정(Agricultural agreement),<sup>89)</sup> 무역진흥협정(Trade promotion agreement)<sup>90)</sup>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ALADI 회원국들 중에서 ‘경제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들’(Relatively less advanced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에 대해서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차별적인 특별대우를 한다.<sup>91)</sup>

이밖에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ALADI의 정치적 기구로서 외무장관 위원회(The 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평가 및 발전

---

83)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 1 조.

84)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 3 조.

85)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 6 조.

86)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 7 조.

87)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10조.

88)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11조.

89)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12조.

90)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13조. 본 협약에서 무역진흥협정은 비관세무역장벽에 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무역협정과 다르다.

91)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15조 내지 제23조.

협의회(The Evaluation and Convergence Conference), 대표자 평의회(The Committee of Representative)를 설치하며,<sup>92)</sup> 행정업무를 위하여 총사무국을 둔다고 명시하였으며, 각 기구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sup>93)</sup>

### 3. ALADI와 브라질

브라질은 ALADI 체제에서 다른 회원국들과 무역협정의 기본적인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경제보완협정 제18호를 통해서 MERCOSUR의 공동대외관세의 수립과 제3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의 채택을 대비하였다.

1995년부터 MERCOSUR가 관세동맹으로서 공동대외관세를 발효하자, ALADI 내에서 브라질의 협상활동은 주로 MERCOSUR 회원국들과 본 기구의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기존의 협정에 대한 재협상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MERCOSUR는 1996년 8월 1일과 1997년 2월 28일 각각 발효된 경제보완협정 제35호 및 제36호를 칠레 및 볼리비아와 체결하였다.

1999년 8월에는 특혜관세협정을 안데안 공동체(Andean Community,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주엘라)와 체결하면서, 장래 있을 협상에 따른 MERCOSUR-Andean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브라질과 ALADI 회원국들의 무역협정들은 MERCOSUR 관세동맹을 공고히 하고, Andean과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쿠바가 ALADI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국들과의 무역협정 갱신작업을 시작하였다. 1999년 12월 22일 브라질과 쿠바가 경제보완협정 제43호를 체결하였으며, 이것은 MERCOSUR-쿠바간(4+1)

92)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28조.

93)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43조.

협정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 제 3 절 MERCOSUR

#### 1. MERCOSUR의 체결과 발전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Mercado Comum do Sul/the Common Market of South, MERCOSUR)은 1995년 1월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관세동맹으로 출발하였다. 1960년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기구의 설립과 이를 대체한 1980년의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는 MERCOSUR가 탄생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해주었다.

ALADI 체제에서 양산된 많은 양자간 협력의 결과들 중에서, 198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통합과 경제협력계획(Programa de Integración y Cooperación Económica Argentina-Brasil/the Argentina-Brazil Integration and Economics Cooperation Program, PICE) 및 1986년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언(Declaration of Buenos Aires), 그리고 1988년에 체결된 양국의 경제통합협정은 MERCOSUR의 성립을 위한 오랜 기간의 발전 단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 경제통합협정에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참여하면서 MERCOSUR가 출범하였다.<sup>94)</sup>

1996년 MERCOSUR는 칠레·볼리비아와의 협정을 통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단일시장을 확대하였고, 1998년에는 이 두 국가와 이른바 ‘정치적 MERCOSUR’라고 불리는 ‘4+1+1’ 형식의 정치적 회의체를 형성하였다. 2003년은 일련의 결정과 선언 등을 통하여, MERCOSUR가 한층 발전하는 시기가 되었다. MERCOSUR를 주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적 결정들에 합의하였고, 분쟁해결절차법원이 설치되었다.<sup>95)</sup>

94) [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Mercosur.htm#\\_I\\_Background](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Mercosur.htm#_I_Background)

95) [http://ec.europa.eu/comm/external\\_relations/mercosur/intro/index.htm](http://ec.europa.eu/comm/external_relations/mercosur/intro/index.htm)

현재 MERCOSUR는 기존의 4개국에 2006년 7월 4일 베네주엘라가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서 정식회원국으로의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 표 7 > MERCOSUR의 회원국

정회원	브라질 (1991)
	아르헨티나 (1991)
	파라과이 (1991)
	우루과이 (1991)
	베네주엘라 (2006, 준회원 가입은 2004)
준회원	칠 레 (1996)
	볼리비아 (1997, 정회원가입 준비중)
	페 루 (2003)
	콜롬비아 (2004)
옵저버	멕시코 (2004, 준회원 가입 준비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1991년 3월 26일 체결한 아순시온 협약(the Treaty of Asunción)은 MERCOSUR의 기초를 형성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본 협약에 따라 작성된 법적 효력을 갖는 많은 협정들에 의해서 MERCOSUR 역내무역의 약 95%정도가 관세장벽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MERCOSUR 관세영역에서의 공동대외관세가 1995년 1월 1일부터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sup>96)</sup>

현재의 MERCOSUR 체제는, 1994년 12월에 체결된 Ouro Preto 의정서(the Ouro Preto Protocol)를 통해서 그 골격이 구성되었다. 본 의정서

96)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merco\\_intro.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merco_intro.asp)

는 MERCOSUR의 국제법상 법적지위를 인정하면서, 제 3국 및 지역공동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협정체결과 협상권한을 MERCOSUR 자체에 부여하였다. 오늘날 ALADI 및 GATT 등과의 관계에서 명확해진 MERCOSUR의 법적 양립성 및 호환성, 통합의 경제적 성공,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 등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파트너로서 MERCOSUR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

현재 대외문제와 관련된 MERCOSUR의 중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a. MERCOSUR와 다른 ALADI 회원국들 사이의 FTA 협상
- b. 1995년 12월에 체결된 MERCOSUR-EU 경제무역협력 기본협정의 실행과 발전
- c. FTAA의 형성을 위한 협상

## 2. MERCOSUR의 설립과 기능을 위한 협정들

MERCOSUR가 형성되고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 구성과 대상범위에 관한 많은 협정들이 체결되어왔다. 이러한 협정들은 MERCOSUR의 조직에 관련되는 협정에서부터 각종 무역 및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의정서 및 규정 또는 선언에 이르기까지, 그 형식과 대상범위 역시 많은 수만큼 다양하다.

MERCOSUR 관련 협정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인 아순시온 협약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정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반면에 그 규율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MERCOSUR 조직 또는 절차에 관한 협정으로, 아순시온 협약, 조직에 관한 Ouro Preto 의정서, 분쟁해결절차 관련 브라질리아 의정서와 Olivos 의정서, 행정사무국 설치협정 등이 있고, 무역규율 등에 관한 협정으로는 투자진흥을 위한 Colonia 의정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몬테비데오 의정서, 지적재산권 관련 의정서, 공정경쟁협정, 정부조달 의정서, 관세표, 원산지규정, 금융체계에 관한 선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협정들은 모두 MERCOSUR의 조직과 기능을 형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또는 법원(法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협정들의 명칭, 체결 및 발효일자 등에 관한 내용이다.<sup>97)</sup>

< 표 8 > MERCOSUR 설립 및 기능에 관한 협정들

기본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아순시온 협약(Treaty of Asunción)</u> 체결 1991. 3. 26 / 발효 1991. 12. 29</li> <li>- <u>Ouro Preto 의정서(Protocol of Ouro Preto, Additional Protocol to the Treaty of Asunción o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MERCOSUR)</u> 체결 1994. 12. 17 / 발효 1995. 12. 15</li> </ul>
기타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분쟁해결을 위한 브라질리아 의정서(Protocol of Brasilia for the Solution of Controversies)</u> 체결 1991. 12. 17 / 발효 1993. 4. 22</li> <li>- <u>분쟁해결을 위한 Olivos 의정서(Protocol of Olivos for the Solution of Controversies in MERCOSUR)</u> 체결 2002. 2. 18 / 발효 2004. 2. 10</li> <li>- <u>Olivos 의정서에 관한 규칙(Regulation of the Protocol of Olivos for the Solution of Controversies in MERCOSUR)</u> 체결 2003. 12. 15</li> <li>- <u>투자진흥과 보호를 위한 Colonia 의정서(Protocol of Colonia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Within MERCOSUR)</u> 체결 1994. 1. 17</li> <li>- <u>서비스무역에 관한 몬테비데오 의정서(Protocol of Montevideo on Trade in Services in the Southern Common Market)</u> 체결 1997. 12. 15</li> <li>- <u>지적재산권에 관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Harmo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Norms in MERCOSUR with Respect to Trademarks and Indications or Denominations of Origins)</u> 체결 1995. 8. 5 / 발효 2000. 8. 6</li> <li>- <u>공정경쟁을 위한 협정(Agreement on the Regulations of the MERCOSUR Protocol for the Defense of Competition)</u> 체결</li> </ul>

97) [http://www.sice.oas.org/agreemts/Mercin\\_e.asp](http://www.sice.oas.org/agreemts/Mercin_e.asp)

	<p>2002. 12.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공정경쟁을 위한 MERCOSUR 의정서(The MERCOSUR Protocol for the Defense of Competition)</u> 체결 1996. 12. 17 / 발효 2000. 9. 8</li> <li>- <u>MERCOSUR 의정서 부속서(Annex to the MERCOSUR Protocol for the Defense of Competition)</u> 체결 1997. 6. 18</li> <li>- <u>정부조달 의정서(Protocol on Government Procurement of MERCOSUR)</u> 체결 2004. 12. 9</li> <li>- <u>정부조달 의정서 규칙(Regulation of the Protocol on Government Procurement of MERCOSUR)</u> 체결 2004. 12. 16</li> <li>- <u>MERCOSUR 관세표(Customs Code of MERCOSUR)</u> 체결 1994. 12. 16</li> <li>- <u>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of MERCOSUR)</u> 체결 2004. 5. 6</li> <li>- <u>MERCOSUR 행정사무국 설치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MERCOSUR and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Establishing the Location and Functions of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u> 체결 1996. 12</li> <li>- <u>금융체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Concerning Financial Mechanisms for Regional Integration)</u> 체결 1996. 12. 16</li> </ul>
--	---

### 3. 아순시온 협약

아순시온 협약(Tratado de Asunción/Treaty of Asunción)은 1991년 3월 26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체결하였다. 본 협약은 일종의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로서 공동시장을 직접 탄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통합절차 및 체계를 명시하였다.

본 협약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로 번지는 국제무역질서 상황에서, 남미지역 국가들이 보다 나은 방법으로 조화되기 위하여 각국의 시장을 넓히고자 하는 회원국의 결정을 담았다. 본 협정의 주요한 목적은, 우선 관세동맹의 형성으로 거대규모의 경제적 통합지대를 건설하고,

이를 점차 공고히 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본 협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표 9 > 아순시온 협약의 구조

제 1 장 목적, 원칙, 수단 제 1 조 - 제 8 조
제 2 장 조직구성 제 9 조 - 제 18 조
제 3 장 적용기간 제 19 조
제 4 장 가 입 제 20 조
제 5 장 탈 퇴 제 21 조 - 제 22 조
제 6 장 일반규정 제 23 조 - 제 24 조

본 협정 제 1 조는 MERCOSUR라는 공동시장의 출현 시기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 공동시장 형성을 위해 협약의 체결국이 수행해야 하는 각종의 의무사항들을 나열하였다.<sup>98)</sup> 여기서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회원국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제거, 공동대외관세 수립과 공동무역정책 채택 그리고 공동의 무역정책도출, 거시경제 및 분야별 정책에 관한 협력과 조화, 통합을 위한 국내규범들의 조화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sup>99)</sup>

MERCOSUR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순시온 협약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설정하였다.<sup>100)</sup>

98) 아순시온 협약 제 3 조 내지 제 4 조.

99) 아순시온 협약 제 1 조.

100)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treaty.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treaty.asp)



- a. 점진적인 관세 축소 및 비관세장벽 등의 제거와 같은 무역자유화 계획의 시행
- b. 공동대외관세의 수립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 c. 거시경제 및 분야별 정책 등의 조화

또한 아순시온 협약은 회원국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 대한 특별 대우를 약속하는 동시에,<sup>101)</sup> ALADI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였다.<sup>102)</sup>

본 협정의 이행과 관리를 위해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공동시장 위원회(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와 집행기관인 공동시장그룹(the Common Market Group)을 설치하였다.<sup>103)</sup> 집행기관으로서 정부간 기관(inter-governmental organ)인 공동시장그룹은 공동시장의 성립 이전까지 활동하며, 협정의 이행 및 감시, 필요조치 실행, 특정조치의 제안, 작업계획의 작성을 위해 발의권을 가진다.<sup>104)</sup> 이밖에 각국의 의회가 공동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MERCOSUR 공동의회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of MERCOSUR)를 설치하는 동시에, 각국 행정부가 MERCOSUR 관련 사항을 의회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였다.<sup>105)</sup>

본 협정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축소, 원산지규정,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련된 네 개의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다.

#### 4. Ouro Preto 의정서

MERCOSUR는 관세동맹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간 방식의 조직구조를 채택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상에 대한 장을 열고 통합절차에 있

---

101) 아순시온 협약 제 6 조.

102) 아순시온 협약 제 8 조. 아순시온 협약은 ‘경제보완협정 제18호’로 ALADI에 등록되었다[[http://www.wto.org/gatt\\_docs/english/sulpdf/91640073.pdf](http://www.wto.org/gatt_docs/english/sulpdf/91640073.pdf)].

103) 아순시온 협약 제 7 조 및 제13조.

104) 아순시온 협약 제13조.

105) 아순시온 협약 제24조.

어서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1994년 12월에 체결된 Ouro Preto 의정서(Protocolo de Ouro Preto/Protocol of Ouro Preto)에서 명시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MERCOSUR 조직의 형태이고, 다음과 같은 특색을 나타낸다.<sup>106)</sup>

- a. 정부간 형태의 의사결정기관
- b.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제도
- c. 분쟁에 관한 조정제도

또한, Ouro Preto 의정서에서는 MERCOSUR의 국제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었고, 여기에 제 3 국, 국가공동체, 국제기구 등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식적으로 Ouro Preto 의정서는 ‘기관구성에 관한 아순시온 협약의 부가의정서’이다. 즉, 아순시온 협약 제18조에 따라서, 협약에 명시된 MERCOSUR의 기관들과 공동시장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타 기관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통하여, MERCOSUR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기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체결된 것이다. 본 의정서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표 10 > Ouro Preto 의정서의 구조

제 1 장 MERCOSUR의 구조 제 1 조 - 제 2 조 제 1 부 공동시장위원회 제 3 조 - 제 9 조 제 2 부 공동시장그룹 제 10조 - 제 15조 제 3 부 MERCOSUR 무역위원회
--

106)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ouro\\_preto.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ouro_preto.asp)

제16조 - 제21조
제 4 부 공동의회위원회
제22조 - 제27조
제 5 부 경제사회자문포럼
제28조 - 제30조
제 6 부 MERCOSUR 행정사무국
제31조 - 제33조
제 2 장 법인격
제34조 - 제36조
제 3 장 의사결정절차
제37조
제 4 장 MERCOSUR 기관들이 채택한 결정의 내부적용
제38조 - 제40조
제 5 장 MERCOSUR의 법원(法源)
제41조 - 42조
제 6 장 분쟁해결절차
제43조 - 제44조
제 7 장 예 산
제45조
제 8 장 언 어
제46조
제 9 장 검 토
제47조
제10장 발 효
제48조 - 제50조
제11장 이행규정
제51조
제12장 일반규정
제52조 - 제53조
부속서 MERCOSUR 무역위원회 관정에 대한 불복절차

Ouro Preto 의정서가 규정하는 MERCOSUR의 기관은, 공동시장위원회(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CCM), 공동시장그룹(the Common Market Group, CMG), MERCOSUR 무역위원회(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MTC), 공동의회위원회(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JPC), 경제사회자문포럼(the 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 ESCF), MERCOSUR 행정사무국(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MAS) 등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본 의정서의 조건에 합치하도록 기타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sup>107)</sup> 위 기관 중, 공동시장위원회, 공동시장그룹, 공동의회위원회는 아순시온 협약이 그 구성을 직접 명시한 바 있으며,<sup>108)</sup> 공동시장위원회, 공동시장그룹 그리고 MERCOSUR 무역위원회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간 기관이다.<sup>109)</sup> 본 의정서 제 1 장<sup>110)</sup>은 각 기관들의 구성, 기능, 권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Ouro Preto 의정서는 MERCOSUR 구성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국제법상 법인격 부여 규정,<sup>111)</sup> 기관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의 원칙,<sup>112)</sup> MERCOSUR 결정의 회원국 내부적용에 관한 규정,<sup>113)</sup> MERCOSUR의 법원(法源),<sup>114)</sup> 분쟁해결절차<sup>115)</sup>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 의정서에 따르면, MERCOSUR는 그 자체로서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개체이므로, 독자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에 임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MERCOSUR에 적용되는 법규범으로는, 아순시온 협약과 그에 따른 의정서 및 부가적 협정들, 아순시온 협약 및 의정서의 테두리 내에서

107) Ouro Preto 의정서 제 1 조.

108) 아순시온 협약 제 9 조 및 제 24 조.

109) Ouro Preto 의정서 제 12 조.

110) 제 1 조 내지 제 33 조.

111) Ouro Preto 의정서 제 34 조.

112) Ouro Preto 의정서 제 37 조.

113) Ouro Preto 의정서 제 38 조.

114) Ouro Preto 의정서 제 41 조.

115) Ouro Preto 의정서 제 43 조.

체결된 협정들, 그리고 아순시온 협약 발효이후 공동시장 위원회, 공동시장 그룹, MERCOSUR 무역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이나 지침 등이다.<sup>116)</sup> 또한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규를 개정해야 한다.<sup>117)</sup>

이와 같은 규정들은 MERCOSUR라는 조직의 법적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조직의 활동범위와 그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MERCOSUR 활동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제공하는 소중한 단서가 될 것이다.

## 5. MERCOSUR의 주요 구성조직

아순시온 협약과 Ouro Preto 의정서를 통해 그 내부구성 및 조직에 대한 법적 기반이 잘 정비된 MERCOSUR는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활동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의 규율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아래에서 Ouro Preto 의정서에 명시된 각 기관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기능 등을 살펴본다.

### (1) 공동시장위원회

공동시장위원회는, MERCOSUR가 아순시온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동시장을 최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통합을 추진하는 최고의 정치적 책임기관이다.<sup>118)</sup> 본 위원회는 각국의 외무장관과 경제관련 장관들로 구성되며, 6개월을 임기로 순환하며 의장직을 수행한다.<sup>119)</sup> 공동시장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sup>120)</sup>

---

116) Ouro Preto 의정서 제41조.

117) Ouro Preto 의정서 제42조.

118) Ouro Preto 의정서 제 3 조.

119) Ouro Preto 의정서 제 4 조 및 제 5 조.

120) Ouro Preto 의정서 제 8 조.

## &lt; 표 11 &gt; Ouro Preto 의정서에 규정된 공동시장위원회의 기능

- 아순시온 협약과 관련 의정서 및 그 체계에 따라 체결된 협정의 이행에 관한 검토
- 공동시장 설립에 필요한 정책과 조치의 수립
- MERCOSUR 법인격의 구체적인 행위
- MERCOSUR의 행위로서, 제3국, 국가공동체,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체결 및 협상진행<sup>121)</sup>
- 공동시장그룹이 제출한 제안의 관리 및 결정
- 장관들의 회의와 당해 회의가 논의하고자 하는 협정에 관한 조정 및 규제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설치, 개선 및 폐쇄
- 필요한 경우, 결정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명시
- MERCOSUR 행정사무국의 감독
- 재정 및 예산 결정
- 공동시장그룹의 절차규정에 대한 승인

공동시장위원회의 활동은 ‘결정’(Decision)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회원국들에 적용된다.<sup>122)</sup> 본 위원회는 적절한 기회에, 최소 6개월에 1회 씩 회원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며,<sup>123)</sup> 회의는 외무장관들 및 회의에 참석한 관련 장관들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sup>124)</sup>

## (2) 공동시장그룹

공동시장그룹은 MERCOSUR의 실질적 집행부이다.<sup>125)</sup> 본 그룹은 4인의 위원과, 각국의 외무장관, 경제관련 장관, 중앙은행을 대표하는 자

121) 이러한 기능의 자세한 부분은 Ouro Preto 의정서 제14조에 근거한 위임에 의하여 공동시장그룹(CMG)이 수행할 수 있다.

122) Ouro Preto 의정서 제 9 조.

123) Ouro Preto 의정서 제 6 조.

124) Ouro Preto 의정서 제 7 조.

125) Ouro Preto 의정서 제10조.

를 포함하여 정부가 임명하는 4인의 대리인들로 구성되고, 외무장관들과 협조한다.<sup>126)</sup> 공동시장그룹은, 통신, 채광, 기술표준, 재정문제, 운송 및 사회간접시설, 환경, 산업, 농업, 에너지, 노동과 고용 및 사회안전 등 10개 분야의 하위 작업반의 지원을 받는다. 공동시장그룹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sup>127)</sup>

< 표 12 > Ouro Preto 의정서에 규정된 공동시장그룹의 기능

- 권한 내에서, 아순시온 협약, 관련 의정서 및 그 체계 내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한 합치여부의 감독
- 공동시장위원회를 위한 결정한 작성
- 공동시장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 수립
- 공동시장의 설립을 위한 작업계획의 작성
-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한 작업반 및 특별회의와 같은 조직의 설치, 개편 및 폐쇄
- MERCOSUR의 타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한 제안 또는 권고에 대한 의견 개진
- 공동시장위원회가 그 권한 내에서 위임한 경우, 회원국 대표의 참여로, MERCOSUR의 행위로서 제 3국, 국가공동체,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 체결 및 협상 진행<sup>128)</sup>
- MERCOSUR 행정사무국에 제출한 예산 및 회계보고서의 승인
- 위원회가 부여한 지침에 근거한 재정 및 예산 결의안의 채택
- 공동시장위원회의 절차규정 제출
- 공동시장위원회의 개최 조정 및 관련 보고서 및 연구 준비
- MERCOSUR 행정사무국의 국장 선출
- MERCOSUR 행정사무국 활동의 감독
- MERCOSUR 무역위원회 및 경제사회자문포럼의 절차규정 승인

126) Ouro Preto 의정서 제11조.

127) Ouro Preto 의정서 제14조.

128) 위임받은 경우에는 공동시장 그룹이 직접 서명한다. 공동시장위원회의 승인에

공동시장그룹의 결정은 ‘결의’(Resolution)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원국에 적용된다.<sup>129)</sup> 공동시장그룹의 모임은 절차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개최되며,<sup>130)</sup>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조치를 수립하거나 제안할 때 각 정부 또는 MERCOSUR 기관의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

### (3) MERCOSUR 무역위원회

MERCOSUR 무역위원회는 공동시장그룹의 조력기관으로서, 관세동맹의 실행과 관련된 회원국의 공동무역정책 및 그 적용을 감독하고, 공동무역정책, MERCOSUR 역내무역 및 제 3국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한다.<sup>131)</sup> 본 위원회는 4인의 위원과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4인의 대리인으로 구성되며, 외무장관들과 협조한다.<sup>132)</sup> MERCOSUR 무역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sup>133)</sup>

< 표 13 > Ouro Preto 의정서에 명시된 MERCOSUR 무역위원회 기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RCOSUR 역내, 제 3 국, 국제기구에 대한 공동무역정책 및 협정의 적용 감독</li> <li>- 공동시장그룹에 대하여 새로운 무역 및 관세규제와 기존 규제의 변경 제안</li> <li>- 회원국들의 공동무역정책수단의 적용 감독</li> <li>- 공동시장그룹에 대하여 관세동맹 실행과 관련된 공동무역정책의 개발과 제안서 제출</li> <li>- 회원국들이 합의한 공동대외관세 및 공동무역정책의 적용 및 관리</li> </ul> |
|--|

따라, 공동시장그룹은 그 권한을 MERCOSUR 무역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29) Ouro Preto 의정서 제11조.

130) Ouro Preto 의정서 제13조.

131) Ouro Preto 의정서 제16조.

132) Ouro Preto 의정서 제17조.

133) Ouro Preto 의정서 제19조.



와 관련된 결정

- 공동시장그룹에 대하여, 공동무역정책수단의 적용과 개발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 공동시장그룹에 대하여, 새로운 MERCOSUR 무역 및 관세규제 또는 규제의 변경제안
- 공동대외관세의 특정품목, 특히 MERCOSUR 내의 신규 생산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세율의 재검토 제안
- 위 사항을 위해 필요한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그 활동에 대한 감독
- 공동시장그룹이 요청한 공동무역정책 관련 업무의 수행
- 공동시장그룹에 제출될 절차규정의 채택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MERCOSUR 무역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한 브라질리아 의정서 제 1 조 또는 제25조가 규정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본 무역위원회의 국가별 지부가 회부한 불복사건을 처리한다.<sup>134)</sup>

MERCOSUR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지침’(Directive) 또는 ‘제안’(Proposal)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회원국에 적용된다.<sup>135)</sup> 본 무역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또는 회원국이나 공동시장그룹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갖는다.<sup>136)</sup>

(4) 공동의회위원회

공동의회위원회는 MERCOSUR 회원국의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sup>137)</sup> 회원국마다 동일한 수로 구성된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Ouro Preto 의정서 제 2 조에서 규정된 MERCOSUR 기관들의 결정을 즉시 발효하기

134) Ouro Preto 의정서 제21조. 본조에 따른 불복은 본 의정서의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MERCOSUR 무역위원회의 사건 처리는 분쟁해결을 위한 브라질리아 의정서에 따른 회원국의 조치에 대한 불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5) Ouro Preto 의정서 제20조.

136) Ouro Preto 의정서 제18조.

137) Ouro Preto 의정서 제22조.

위해 회원국의 국내절차를 빠르고 간소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의회위원회는 경제통합절차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조화를 돕고, 필요한 경우 공동시장위원회가 중요문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수행한다.<sup>138)</sup>

공동의회위원회는 절차규정을 채택하며,<sup>139)</sup> 공동시장그룹을 통해서 공동시장위원회에 권고서를 제출한다.<sup>140)</sup>

(5) 경제사회자문포럼

경제사회자문포럼은,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각 회원국을 대표하고, 공동시장그룹에 ‘권고’(Recommendation)의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관이다.

(6) MERCOSUR 행정사무국

MERCOSUR 행정사무국은 MERCOSUR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몬테비데오에 그 본부를 둔다. 본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sup>141)</sup>

< 표 14 > Ouro Preto 의정서에 규정된 MERCOSUR 행정사무국 기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RCOSUR 공문서의 취급과 보관</li> <li>- MERCOSUR 체제에서 채택된 결정문의 출판 및 배포.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Ouro Preto 의정서 제39조에 따라, MERCOSUR 기관이 채택한 결정문의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의 공식번역</li> </ol> </li> </ul> |
|---|

---

138) Ouro Preto 의정서 제25조.  
 139) Ouro Preto 의정서 제27조.  
 140) Ouro Preto 의정서 제26조.  
 141) Ouro Preto 의정서 제32조.

## 2. MERCOSUR의 공식 간행물의 발간

- 공동시장위원회, 공동시장그룹, MERCOSUR 무역위원회 기타 기관들의 회의가 본부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일정 및 장소 등의 조정. 이러한 회의가 본부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 사무국은 개최국을 지원한다.
- Ouro Preto 의정서 제 2 조에 의해 MERCOSUR 기관들이 채택한 결정을 각 회원국의 국내법 체계로 적용하기 위해 각국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국가별 중재인 및 전문가 목록의 작성과 1991년 12월 17일의 브라질리아 의정서에서 명시된 기타 업무의 수행
- 공동시장위원회, 공동시장그룹, MERCOSUR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업무의 수행
- 예산안의 작성과 공동시장그룹이 승인한 사항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의 수행
- 공동시장그룹에 대한 활동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제출

MERCOSUR 행정사무국의 국장은,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공동시장그룹의 선출로 공동시장위원회가 임명한다. 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될 수 없다.<sup>142)</sup>

## 6. 분쟁해결절차

MERCOSUR의 분쟁해결절차는 아순시온 협약, Ouro Preto 의정서, 브라질리아 의정서 및 Olivos 의정서 등에서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uro Preto 의정서 제 6 장은 아순시온 협약 규정의 해석, 적용, 불이행과 관련된 회원국 사이의 분쟁, 본 협약의 체제 내에서 체결된 협정들에 관한 회원국 사이의 분쟁, 공동시장위원회의 결정, 공동시장그룹의 결의, MERCOSUR 무역위원회의 지침에 관한 회원국 사이의 분쟁 등이 1991년 12월 17일 체결된 분쟁해결을 위한 브라질리아 의

<sup>142)</sup> Ouro Preto 의정서 제33조.

정서에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MERCOSUR 무역위원회의 지침 역시 브라질리아 의정서 제19조 및 제25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sup>143)</sup>

브라질리아 의정서가 규정한 MERCOSUR의 분쟁해결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a. 분쟁당사국 사이의 직접 협상
- b. 무역위원회에 대한 청구
- c. 공동시장그룹에 의한 조정
- d. 중재결정

Olivos 의정서는 MERCOSUR의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본 의정서는 개인 또는 국가가 합의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절차 또는 분쟁당사국이 모두 가입한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44)</sup> 특히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상설기관인 항소심판소(Appellate Tribunal)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소심판소는 분쟁사항과 관련된 아순시온 협약의 내용, 공동시장위원회의 결정, 공동시장그룹의 결의, 국제법 원칙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sup>145)</sup>

## 7. MERCOSUR 의회 설립 의정서

MERCOSUR는 그동안 Ouro Preto 의정서를 근거로 설치된 공동의회 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를 통하여, MERCOSUR가 체결한 협정들의 회원국에 대한 ‘국내법체계화’를 실현하여왔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의회구성원이 다시 모여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

143) Ouro Preto 의정서 제43조.

144) Olivos 의정서 제1조 및 제2조.

145) 브라질리아 의정서 제19조 및 제20조, Olivos 의정서 제16조 및 제34조.

은, 체결된 협정의 신속한 국내법체계화와 더불어 각 회원국의 국내 법조화와 공동대외무역규범의 창출이라는 MERCOSUR의 숙제에 큰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MERCOSUR는 더욱 공고한 역내통합을 입법차원에서 실천하면서, 회원국 전체의 균등한 발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MERCOSUR 의회’를 구성하려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MERCOSUR 의회의 설치, MERCOSUR가 협정을 체결하고 회원국의 의회가 공동의회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제도화 한다는 복잡한 기존의 입법방식에서 벗어나, ‘MERCOSUR의 협정 체결과 MERCOSUR 의회의 입법’이라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절차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MERCOSUR 의회 구성에 관한 합의는 EU 의회의 구성과 그 성공적 수행에 자극받은 바 크다.

MERCOSUR 의회 구성을 위한 의정서(Constitutive Protocol of the Parliament of the MERCOSUR)는, 2005년 12월 9일 몬테비데오에서 체결되었으며, MERCOSUR 의회구성을 위한 기본 법규로 작용하게 된다. 본 의정서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5 > MERCOSUR 의회 성립을 위한 의정서의 구조

제 1 조 구 성
제 2 조 목 적
제 3 조 원 칙
제 4 조 대 회
제 5 조 통 합
제 6 조 선 거
제 7 조 준회원의 참여
제 8 조 신규 회원의 결합
제 9 조 독 립

제10조 임 기
제11조 요건과 부적격
제12조 특권과 면제
제13조 발 의
제14조 내부절차의 승인
제15조 결정채택의 절차
제16조 조 직
제17조 회 기
제18조 심 의
제19조 의회의 활동
제20조 예 산
제21조 소재지
제22조 찬성과 반대
제23조 이용과 기탁
제24조 취소규정
< 이행규정 >
I. 단 계
II. 통 합
III. 선 거
IV. MERCOSUR 시민의 날
V. 위임과 부조화
VI. 결정 및 채택절차
VII. 예 산

MERCOSUR 의회는 단원제(unicameral)로 구성되며, 기존의 공동위원회를 대체한다.<sup>146)</sup> 본 의회는 기존의 ‘회원국민+회원국민=MERCOSUR’라는 개념 대신에 ‘MERCOSUR 시민’(citizen) 개념을 도입하여, 입법적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sup>147)</sup> 이러한 MERCOSUR 의회의 활동은 두 단계의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그 첫 단계는

146) MERCOSUR 의회구성 의정서 제 1 조.

147) MERCOSUR 의회구성 의정서 제 5 조 및 이행규정 IV.

2006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단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sup>148)</sup>

이와 같은 단계에 따라 2006년 12월 14일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의 각국별 18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MERCOSUR 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0년부터는 베네주엘라까지 포함한 5개국에서 18명씩 선출된 의원으로 EU의 회 형태의 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다.<sup>149)</sup>

MERCOSUR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다.<sup>150)</sup> 또한 이들은 의원으로서 각종 특권과 면제혜택을 누리며,<sup>151)</sup> 1개월의 정기회기와 각종 필요에 따른 비정기회기에 참석해야 한다.<sup>152)</sup> MERCOSUR 의회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소재한다.<sup>153)</sup>

본 의정서는 많은 이행규정과 회원국들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데, 의회의 단계별 발전 정도에 따라 차츰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제 4 절 MERCOSUR의 제 3 자간의 지역무역 협정 체결 및 진행

### 1. 제 3 자와의 지역무역협정 개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ERCOSUR는 회원국 사이의 다양한 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역내 시장의 규범적 틀을 공고히 하고, 목표했던 것처럼 ‘관세동맹’수준으로부터 ‘공동시장’의 단계로 거듭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협정체결 이외에도, MERCOSUR는 그 스스로 제 3

148) MERCOSUR 의회구성 의정서 이행규정 I.

149) KOTRA, 『메르코수르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중남미지역본부 기획조사)』, 2006. 12, 3면.

150) MERCOSUR 의회구성 의정서 제10조.

151) MERCOSUR 의회구성 의정서 제12조.

152) MERCOSUR 의회구성 의정서 제17조.

153) MERCOSUR 의회구성 의정서 제21조.

국, 다른 지역공동체 또는 국제기구와 활발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장 및 무역의 확대와 투자유치 등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MERCOSUR가 제 3 자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대상 및 형태 역시 다양하다. 다음은 MERCOSUR가 제 3 자와 체결한 주요 지역무역협정이다.<sup>154)</sup>

< 표 16 > MERCOSUR와 제 3 자간 지역무역협정

- MERCOSUR - Andean Community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the Andean Community and MERCOSUR) 체결 1998. 4. 16
- Brazil - Colombia, Ecuador, Peru and Venezuela (as Members of the Andean Community) 경제보완협정 제39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39) 체결 1999. 8. 12 / 발효 1999. 8. 16
- Argentina - Colombia, Ecuador, Peru and Venezuela (as Members of the Andean Community) 경제보완협정 제48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48) 체결 2000. 6. 29 / 발효 2000. 8. 1
- MERCOSUR - Andean Community 경제보완협정 제56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6) 체결 2002. 12. 6
- MERCOSUR - Peru 경제보완협정 제58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8) 체결 2003. 8. 25
- MERCOSUR - Colombia, Ecuador and Venezuela 경제보완협정 제59조(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9) 체결 2003. 12. 16 / 발효 Argentina: 2005. 1. 13; Colombia: 2005. 1. 26; Uruguay: 1985. 11. 27; Venezuela: 2004. 12. 20; Ecuador: 2005. 3. 18
- MERCOSUR - Bolivia 경제보완협정 제36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36) 체결 1996. 12. 17 / 발효 1997. 3. 2

154) [http://www.sice.oas.org/agreements/Mercin\\_e.asp](http://www.sice.oas.org/agreements/Mercin_e.asp)



- MERCOSUR - Chile 경제보완협정 제35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35) 체결 1996. 6. 25 / 발효 1996. 8. 1
- MERCOSUR - Egypt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 2004. 7. 7
- MERCOSUR - European Community 지역간 기본협력협정(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1995. 12. 15 / 발효 1999. 7. 1
- MERCOSUR - Indi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 2003. 6. 17
- MERCOSUR - India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체결 2004. 1. 25
- MERCOSUR - Mexico 경제보완협정 제54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4) 체결 2002. 7. 5
- MERCOSUR - Mexico 경제보완협정 제55호(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No. 55) 체결 2002. 9. 27
- MERCOSUR -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체결 2004. 12. 16

우선, MERCOSUR가 제 3 자를 상대로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많은 수는 중남미지역의 국가 또는 공동체와의 협력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MERCOSUR 출현 이전 ALADI 소속의 국가들, 혹은 Andean Community의 국가들이나 Andean 자체와의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기본협정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협정은 주로 ‘경제보완협정’이라는 틀로 나타난다.

또 다른 현상은, 1999년 체결될 EC와의 기본협력협정을 시작으로 주로 2000년대 이후부터 중남미지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공동체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집트와 인도를 상대로 한 기본협정 또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의 체결, 남부 아프리카 관세동맹(SACU)과의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밖에, MERCOSUR는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보다 높은 차원의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04년 베네주엘라의 MERCOSUR 준회원 가입과 2006년 정회원 가입을 통해서, MERCOSUR의 확대와 중남미지역의 협력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중남미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규범의 틀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EU와의 협력 및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북미지역 NAFTA를 포함하는 FTAA의 진행은, MERCOSUR가 성장 동력과 규범적 틀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발전요소를 추구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 2. MERCOSUR-SACU PTA

SACU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나미비아로 구성된 남부 아프리카지역의 관세동맹이다. MERCOSUR와 SACU 지역의 연계는, MERCOSUR-남아프리카공화국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의 체결로 시작되었다. 이후 SACU가 2002년 제 3자와의 무역협정체결 권한을 획득하면서, MERCOSUR의 경제협력 노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SACU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MERCOSUR-SACU 특혜무역협정은, 양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최종목적으로 하여 양자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축소하고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2월 16일 브라질에서 체결되었다. 본 협정은 MERCOSUR와 SACU의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또한 본 협정은 제 3세계간의 남-남 무역(South-South Trade)과 경제통합이 다자주의 무역체제와 양립할 수 있고, 세계무역의 확대와 국제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MERCOSUR-SACU 특혜무역협정의 협정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sup>155)</sup>

< 표 17 > MERCOSUR-SACU 특혜무역협정의 구조

제 1 장 협정의 목적
제 1 조
제 2 장 무역자유화
제 2 조 - 제 9 조
제 3 장 원산지규정
제10조
제 4 장 내국민대우
제11조
제 5 장 관세평가
제12조
제 6 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3조
제 7 장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14조 - 제15조
제 8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16조 대상과 범위
제17조 정 의
제18조 일반규정
제19조 무역촉진
제20조 협 력
제 9 장 위생 및 검역조치
제21조 - 제23조
제10장 협정의 관리
제24조 - 제27조
제11장 분쟁의 해결
제28조
제12장 개정과 보완

155)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sacu/index.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sacu/index.asp)

제29조 - 제30조
제13장 신규회원의 가입
제31조 - 제32조
제14장 발효, 통보, 소멸
제33조 - 제34조
제15장 탈 퇴
제35조 - 제36조
제16장 기 탁
제37조 - 제38조

본 협정에는 다섯 개의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MERCOSUR의 SACU에 대한 관세양허목록, SACU의 MERCOSUR에 대한 관세양허목록, 원산지물품에 관한 정의와 관리 협력의 방법, 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이다. 협정의 체결과 함께 양해규정도 서명되었다.<sup>156)</sup>

### 3. MERCOSUR-인도 PTA

MERCOSUR는 최근 들어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sup>157)</sup> 지역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인도와 체결한 특혜무역협정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은 2003년 6월 17일에 체결되었으며, 2004년 1월 25일에 특혜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본 협정은 서문에서,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자유화 및 지역적 통합이 세계무역의 확대를 가져오고 다자주의적 체계에 도움을 주며,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양자간의 기본협정이 관세축소와 자유무역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156) [http://www.sice.oas.org/Trade/MRSRSACU/Index\\_e.asp](http://www.sice.oas.org/Trade/MRSRSACU/Index_e.asp)

157)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시리즈 [인도의 FTA 제 4 장]을 참고할 것.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MERCOSUR-인도 특혜무역협정은 본문과 총 5개의 부속서를 포함한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158)</sup>

< 표 18 > 인도-MERCOSUR P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서 문
제 1 장 협정의 목적
제 1 조 - 제 2 조
제 2 장 무역자유화
제 3 조 - 제 8 조
제 3 장 일반적 예외
제 9 조
제 4 장 국영무역기업
제 10 조 - 제 11 조
제 5 장 원산지규정
제 12 조
제 6 장 국가별 조치
제 13 조
제 7 장 관세평가
제 14 조
제 8 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15 조 - 제 16 조
제 9 장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 17 조
제 10 장 기술장벽
제 18 조 - 제 20 조
제 11 장 위생 및 검역조치
제 21 조 - 제 22 조
제 12 장 협정의 관리
제 23 조 - 제 26 조
제 13 장 개정과 변경

158)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india/index.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india/index.asp)

제27조 - 제28조  
제14장 분쟁의 해결  
제29조  
제15장 발 효  
제30조 - 제31조  
제16장 탈 퇴  
제32조  
제17장 기 탁  
제33조 - 제34조  
제18장 이행규정  
제35조

부속서들은 협정의 이행을 돕기 위해서 6회의 협상 끝에 2005년 3월 19일에 서명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속서 I - 인도 생산품에 대한 MERCOSUR의 관세양허목록표. 총 452개의 품목
- 부속서 II - MERCOSUR 생산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양허목록표. 총 450개의 품목
- 부속서 III - 원산지규정
- 부속서 IV - 긴급수입제한조치
- 부속서 V - 분쟁해결절차

#### 4. MERCOSUR-EU 기본협정

MERCOSUR와 EU 사이의 관계는 MERCOSUR-EC 지역간 기본협력협정(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을 법적 근거로 한다. 본 협정은 1995년 12월 15일 체결되었으며, 1999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발효되었다.<sup>159)</sup> 본 협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sup>160)</sup>

159) 본 협정은 1996년부터 조건부로 적용된 바 있다.

160) [http://ec.europa.eu/comm/external\\_relations/mercosur/background\\_doc/fca96.htm](http://ec.europa.eu/comm/external_relations/mercosur/background_doc/fca96.htm)

< 표 19 > MERCOSUR-EU 지역간 기본협력협정의 구조

제 1 장 목적, 원칙, 범위
제 1 조 협력의 기반
제 2 조 목적과 범위
제 3 조 정치적 교섭
제 2 장 무역
제 4 조 목    적
제 5 조 무역과 경제문제의 교섭
제 6 조 농산물과 산업의 기준과 증명에 관한 협력
제 7 조 관세문제에 관한 협력
제 8 조 통계문제에 관한 협력
제 9 조 지적재산권 관련 협력
제 3 장 경제협력
제 10 조 목적과 원칙
제 11 조 상업협력
제 12 조 투자진흥
제 13 조 에너지 관련 협력
제 14 조 운송관련 협력
제 15 조 과학과 기술에서의 협력
제 16 조 통신과 정보기술 분야의 협력
제 17 조 환경보호에서의 협력
제 4 장 통합의 증진
제 18 조 목적과 범위
제 5 장 기구간 협력
제 19 조 목적과 범위
제 6 장 협력의 기타분야
제 20 조 훈련 및 교육 관련 협력
제 21 조 정보, 통신, 문화 관련 협력
제 22 조 마약밀매 방지 협력
제 23 조 미래개발
제 7 장 협력의 방법
제 24 조
제 8 장 제도적 구조
제 25 조 - 제 29 조

제30조 협 의

제 9 장 최종조항

제31조 기타 협정

제32조 체약국의 정의

제33조 적용 범위

제34조 기간과 발효

제35조 의무이행

제36조 공식 협정문

제37조 서 명

MERCOSUR-EU 기본협정의 주된 목적은, 양 지역협력체 사이의 무역 자유화 등을 위한 협정체결을 준비하는 것이다. 본 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랜 연구와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6월 28일 소속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간 중 정상들은 양자간의 무역자유화 관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고, 1999년 11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본 협상의 주된 기구는 MERCOSUR-EU 양 지역간 협상위원회(Bi-regional Negotiations Committee, BNC)이다.

## 5. FTAA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이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1994년 10월 9일 34개국 정상들이 그 첫 번째 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설립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이를 위한 ‘선언’(Declaration)과 ‘행동계획’(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sup>161)</sup>

이후, FTAA를 위한 수차례의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었고, 회담이 진행될수록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며,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sup>162)</sup> 즉 협정문 작성과 시장접근에 관

161)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ftaa.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ftaa.asp)

162) [http://www.sice.oas.org/ftaa\\_e.asp](http://www.sice.oas.org/ftaa_e.asp)



한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과 동시에 많은 분야별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FTAA 협정문 초안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계속 구체화되었다. 가장 최근의 FTAA 초안은 2003년 11월 21일 작성되었으며, 그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163)</sup>

< 표 20 > FTAA 제 3 차 초안의 구조

제 1 장 제도적 쟁점들
제 2 장 일반규정
제 3 장 정 의
제 4 장 투명성
제 5 장 개발수준과 경제규모의 차이에 대한 취급
제 6 장 환경규정
제 7 장 노동규정과 환경 및 노동규정에 관한 비실행 절차들
제 8 장 관세 및 비관세조치
제 9 장 농 업
제10장 원산지제도
제11장 원산지제도와 관련된 관세절차
제12장 관세절차 문제들
제13장 무역에 관한 표준 및 기술장벽
제14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5장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제16장 서비스
제17장 투 자
제18장 정부조달
제19장 경쟁정책
제20장 지적재산권
제21장 기관 구조
제22장 일반적 예외

163) [http://www.ftaa-alca.org/FTAADraft03/Index\\_e.asp](http://www.ftaa-alca.org/FTAADraft03/Index_e.asp)

제23장 분쟁해결

제24장 최종규정

각 장은 수개의 조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작성된 분량만으로도 상당히 방대한 수준이다. 그러나 FTAA 협정문은 2003년의 초안 이후로는 현재까지 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상 과정에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아메리카지역 국가들의 반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 제 5 장 개발도상국으로서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특별규정 적용검토

### 제 1 절 개발도상국에 관한 WTO의 특별취급

#### 1. WTO와 개발도상국

150여 WTO 회원국들 중에서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은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들은 WTO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스스로도 무역을 생존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WTO는 공식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별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회원국들 스스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고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에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WTO가 UN이 설정한 개발도상국개념을 주로 따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sup>164)</sup>

- a. 장기간의 이행기간,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가들에 관한 WTO 협정의 특별규정
- b. WTO 조직 내 ‘무역 및 개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c. WTO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

---

164)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1\\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1_e.htm)

### (1) 개발도상국가에 관한 WTO 협정의 특별규정

WTO 협정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특혜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약속하는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GATT는 무역과 개발에 관한 제4장에서, 선진국들에 양허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양허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협상에 있어서 호혜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비스에 관한 협정인 GATS 역시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취급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WTO 협정들이 개발도상국에 관련하여 포함하는 규정들의 내용은, 의무이행에 있어서 장기간의 이행기간 허용, 일부 품목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유리한 시장접근 기회제공,<sup>165)</sup> 국내 또는 국제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요건<sup>166)</sup> 등이다.

### (2) 무역 및 개발 위원회

WTO의 무역 및 개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것은, 개발도상국 관련 WTO 협정의 규정 이행 감시, 기술지원에 관한 지침 제시, 개발도상국의 무역질서 참여유도 등이다. WTO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특별계획을 본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역시 본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이를 검토한다. 이밖에, 본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을 우대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에 관련된 계획을 검토한다.

165) 섬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166)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은 다시 일반적인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과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나누어진다. WTO 무역 및 개발 위원회에는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의 문제를 전담하는 하부위원회(Sub-committee)가 설치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이 다자주의 규범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WTO 협정들에 포함된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 관련 특별 규정들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 (3) WTO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

WTO 사무국(WTO Secretariat)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에서 도움을 주고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WTO의 교육 및 기술협력원(Train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Institute)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32개의 WTO 회원국이 함께 WTO 법률자문센터를 설치하였다. 모든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은 자동적으로 이곳의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기타 개발도상국들은 일정요금을 지급하고 자문을 얻을 수 있다.<sup>167)</sup>

## 2. WTO 출범 후의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에 대한 대우

WTO는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은 50개국이며, 이중 32개국이 WTO 회원국이다. 또한 8개국이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개국이 읍저버의 지위를 획득하였다.<sup>168)</sup>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에 대해서는 WTO가 더 높은 수준의 대우와 지원을 약속하는데, 모든 WTO 협정들에는 최빈

167)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2\\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2_e.htm)

168)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7\\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7_e.htm)

개도국의 수출에 대해 최대한의 융통성과 최저의 무역장벽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금까지 최빈개도국에 대해 호의적인 수차례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모임에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이 합의되었다. 그 내용은 다자주의 무역체제 참여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최빈개도국 상품의 시장접근 증진을 위한 선진국들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연합 무역과 개발 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은행(World Bank), WTO 등 여섯 개의 국제기구들이 최빈개도국을 위한 공동기술지원계획인 ‘통합 구상’(Intergrated Framework)을 발족하였다.

2002년에는 WTO가 최빈개도국에 대한 작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시장접근 증진, 기술지원, 최빈개도국 경제의 다양화를 위한 단체의 지원, WTO 업무참여를 위한 도움,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협상 신속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동시에, 더욱 많은 국가들이 최빈개도국 수출에 대하여 관세 또는 기타 제한을 축소하고 있다.

### 3.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허용조항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은 1979년 11월 28일의 GATT 결정(L4903)으로, 공식명칭은 ‘개발도상국의 우호적인 대우, 상호주의, 전면적 참여에 관한 결정’(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st-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이다. 허용조항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이들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일원으로서 보다 완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록 도쿄라운드에서 합의하여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다.<sup>169)</sup> 이 조항은 1971년에 채택된 일반특혜관세 제도에서 인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허용조항에 근거하여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sup>170)</sup>

< 표 21 > 허용조항을 근거로 GATT 및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협 정	발효일	통보일	성 격
인도-스리랑카	2001. 12. 15	2002. 6. 27	FTA
아세안-칠레	2003. 7. 1	2004. 12. 21	PTA
EAC	2000. 7. 7	2000. 10. 11	PTA
CEMAC	1999. 6. 24	2000. 9. 29	PTA
WAEMU/UEMOA	2000. 1. 1	2000. 2. 3	PTA
MSG	1993. 7. 22	1999. 10. 7	PTA
COMESA	1994. 12. 8	1995. 6. 29	PTA
SAPTA	1995. 12. 7	1997. 4. 25	PTA
AFTA	1992. 1. 28	1992. 10. 30	PTA
CAN	1988. 5. 25	1990. 10. 12	PTA
ECO	-	1992. 7. 22	PTA
라오스-태국	1991. 6. 20	1991. 11. 29	PTA
GCC	-	1984. 10. 11	PTA

169) 허용조항은 수권조항 또는 권능부여조항이라고도 한다.

170)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

ALADI(LAIA)	1981. 3. 18	1982. 7. 1	PTA
SPARTECA	1981. 1. 1	1981. 2. 20	PTA
방콕협정	1976. 6. 17	1976. 11. 2	PTA
중국 가입의 방콕협정	2002. 1. 1	2004. 7. 29	PTA에 가입
GSTP	1989. 4. 19	1989. 9. 25	PTA
PTN	1973. 2. 11	1971. 11. 9	PTA
TRIPARTITE	1968. 4. 1	1968. 2. 23	PTA
ECOWAS	1995. 6. 15	2005. 9. 26	관세동맹
MERCOSUR	1991. 11. 29	1992. 3. 5	관세동맹

본 허용조항 제 2 항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의 인하와 철폐를 통한 특혜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허용한다.<sup>171)</sup> 허용조항 제 3 항은 GATT 제24조 제 4 항과 유사한 조건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고 하였다. 본 항에서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해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는데, 첫째 이러한 협정은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facilitate and promote) 위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장벽이나 부당한 어려움(undue difficulties)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조항은 GATT 제24조와 달리 이러한 지역무역협정들이 최혜국 대우 감소조치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를 방해하지 않아야

171) Kim, Dong-Hoon / 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p. 344.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4 항에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의 도입과 수정 또는 철폐의 경우에는 통보되어야 하며, 제 3 국이 협의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통보는 WTO 무역 및 개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에 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통보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것과 같이 심층적인 검토절차를 자동으로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품무역 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CTG)에 대한 통보와 지역무역협정 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RTA)의 구체적 검토를 요하는 GATT 제24조에 근거한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절차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GATT 제24조나 GATS 제5조와 달리 허용조항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 제 2 절 브라질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허용조항의 적용

### 1. 허용조항의 적용요건 검토

브라질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WTO가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요건들을 살펴보고,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 (1) WTO 회원국

어느 국가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 허용조항을 적용받거나 WTO가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가 WTO의 회원국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브라질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범

체제 내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협정의 체결 당사국인 브라질 스스로가 WTO 회원국이어야 하는 것이다.

WTO는 2007년 1월 현재 총 15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라질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sup>172)</sup>

### (2)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

허용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모두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어야 한다. 즉,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 모두 WTO가 인정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

브라질은 WTO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개발도상국이고,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등 기타 MERCOSUR 회원국 역시 WTO의 회원국이므로, MERCOSUR 자체 또는 MERCOSUR가 체결하는 다른 개발도상국가와의 FTA 등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허용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 (3) 내용상의 검토

WTO에 통보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이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를 인정할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한다. 즉, 해당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은 WTO 규범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WTO 회원국들의 용인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당사국의 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통보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이 WTO의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가

172)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 [http://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brazil\\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brazil_e.htm)

능성이 있다면, 위원회의 내용 검토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또한 그러한 협정이 WTO 질서에 배치된다면, 통보절차 이후 그 협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가 제 3 국의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허용조항 제 6 항에서는 최빈개도국(최저개발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보다 특혜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무역협정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 2. ALADI 및 MERCOSUR의 적용 사례

ALADI는 1982년 7월 1일 GATT에 통보되었고, 이후부터 무역 및 개발 위원회(CTD)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sup>173)</sup> MERCOSUR는 1992년 3월 5일 허용조항을 근거로 하여 GATT에 그 협정의 체결과 내용 등을 통보하였다. MERCOSUR가 통보한 것은, 협정의 대략적인 내용과 그 근거규정이었던 허용조항의 합치에 관한 것들이었다.

GATT 작업반은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결론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MERCOSUR에 대한 GATT 규범 합치여부의 검토는 GATT 제24조의 규정에서 명시한 일반적인 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러한 검토절차에 있어서, GATT 제24조와 함께 허용조항의 내용도 합치여부의 검토기준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하였다. 보고서의 작성절차도 약간 복잡해졌는데,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가 무역 및 개발 위원회(CTD)에 제출되었고, 동시에 상품무역 위원회(CTG)에도 보고되었다.<sup>174)</sup>

---

173) ALADI가 WTO에 제출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BIENNIAL REPORT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by LAIA Member Countries under the 1980 Treaty of Montevideo (for the Period 1/1/2004-31/12/2005)” WT/COMTD/592, 2007. 1. 5]이다.

174)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eol/e/wto08/wto8\\_60.htm#note3](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eol/e/wto08/wto8_60.htm#note3)

## 제 6 장 FTA 관련 국내법규에 대한 개편 방향

## 제 1 절 FTA 관련 국내법규

다음은 우리나라의 FTA 관련 주요 국내 법규 또는 FTA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규범들이다.

< 표 22 > FTA 관련 주요 국내법규

무역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li> <li>-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li> <li>-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li> <li>- 대외무역법</li> <li>-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li> </ul>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li> <li>-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li> <li>-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li> </ul>
정책 추진 절차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 관련 법규들</li> <li>-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규정 (대통령령)</li> <li>-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대통령령)</li> </ul>

아래에서는 이러한 국내 법규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 1. 무역관련 법규

### (1) 관세법·대외무역법·산업피해구제법의 FTA 규정

FTA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협정 체결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FTA의 주요내용은 우선 무역장벽의 완화에 있으므로, 일차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법규 역시 무역분야라고 할 수 있다.<sup>175)</sup>

FTA의 체결에 따라 가장 먼저 변화하는 국내법규는 바로 ‘관세법’이다. FTA의 체결로 특정국과의 무역에서 관세장벽이 많은 부분 사라지고, 일부 분야에서는 특수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세법 제 67조의 2는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한 특정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정국물품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FTA에 따른 특별한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sup>176)</sup>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 제28조 역시 유사한 취지의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sup>177)</sup>은 FTA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근거규정이다. 본조에서는 이와 같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자유무역협

---

175) FTA와 무역규범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비관세장벽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제도’이다. GATT 체제에서 이미 여덟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일반관세가 상당부분 낮아졌기 때문이다. 무역구제제도는 각국이 WTO 체제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므로, 각국의 입장 차이로 분쟁이 빈번한 부분이다. 무역구제제도와 FTA의 문제에 관해서는, [Bong Chul Kim,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Remedy Review Vol. 22, Korea Trade Commission of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April, 2006]과 [Kaye Scholer LLP, “Safeguards and AD/CVD Regulat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 FTA Negotiation Workbook”, Korea Trade Commission of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2002]를 참고할 것.

176) 다만 본 규정은 후술하는 한-칠레 FTA 관세특별법 또는 FTA 관세특별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77) 본조 신설, 2004. 1. 20.

정세이프가드조치'라고 하여, 무역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에서 규율한다.<sup>178)</sup>

## (2) 한-칠레 FTA 관세특별법

그러나 위의 규정들만으로는 FTA 체결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모두 국내법으로 수용하는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칠레와의 FTA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칠레 FTA 관세특별법’(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한-칠레 FTA 관세특별법의 목적은, 한-칠레 FTA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내용을 국내법체계로 수용하고 칠레산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및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한국과 칠레 사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특별법의 중심내용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한-칠레 FTA에서 합의된 관세인하와 관세철폐 계획에 맞추어 실제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법 제4조와 제5조는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이 교란되는 경우에, 관세의 연차적인 인하를 중단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수입관세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7조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개조 후 재수입 또는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근거도 규정하였다.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본법 제8조는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FTA 관세의 적용대상 여부 및 우회수입의 방지에 필요한 원산지 확인기준

178)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 2.

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조사절차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제15조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sup>179)</sup>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한-칠레 FTA 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확인 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한-칠레 FTA 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에 따라 한-칠레 FTA의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하여 통관절차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제17조는 수출입업자가 세관장의 자료요구 및 원산지확인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칠레 FTA에 따른 관세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한 자,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제19조에서 규정하였다.

### (3) FTA 관세특별법

한-칠레 FTA 관세특별법이 칠레와의 무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이후 체결되는 FTA에 따른 무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이 필요하였다. 이에 한-싱가포르 FTA를 포함한 모든 FTA에 널리 적용될 ‘FTA 관세특별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179)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수입통관 후 원산지 사후확인에 따르는 수출입업자들의 불안감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법 제15조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시키도록 하였다.

FTA 관세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FTA에 규정된 체약 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FTA의 원활한 이행과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80)</sup>

FTA 관세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체결된 FTA에 따라 적용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에 관한 것이다.<sup>181)</sup> 즉, 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각 품목별로 실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FTA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연도별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와 잠정긴급관세조치를 마련하였다. 즉, 체약상대국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FTA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FTA 관세특별법은 원산지에 관한 결정 기준 및 협정관세의 적용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수출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도록 하고,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원산지에 관한 조사 및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180) FTA 관세특별법 제 1 조.

181) FTA 관세특별법 제 4 조.



여,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제16조는 FTA 관세의 적용제한규정을 두어,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관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섯째,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FTA 상대국과의 상호협력 및 관세상호협약에 관하여 규정하였다.<sup>182)</sup> 즉, 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원산지조사협력 및 관세협의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대국으로부터 부적절한 과세처분을 받은 수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4) 무역관련 법규의 평가와 문제점

위와 같이 무역관련 법규들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FTA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왔다. 특히 FTA 관세특별법의 제정은, 앞으로 계속될 FTA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각 FTA 체결시마다 개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게 될 경우에 발생가능한 입법적·행정적 부담과 협정발효의 지연 및 국내법체계의 혼란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FTA 관세특별법은 제 3 조에서 관세법 등 다른 무역법규와의 적용순서를 제시하여 법규적용상의

182) FTA 관세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혼란을 방지하였고, 제 5 조에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FTA 관세특별법을 비롯한 FTA 관련 국내 무역법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FTA 관세특별법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밖의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와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는 이미 체결된 FTA들에서 WTO 규범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FTA에서는 이에 관한 WTO 규범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국내법 체계에서 FTA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관련 일반규정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FTA 관세특별법은 긴급관세 외에도 관세와 관세부과를 위한 원산지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도 명시하였다. 그러나 FTA는 상품무역과 관련된 관세나 원산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다양한 부분의 무역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정부의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FTA 관세특별법이 우리나라의 FTA의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이행절차법’<sup>183)</sup>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관세 및 이와 관련된 상품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분야에 관해서도 FTA와 관련된 국내법규정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피해구제법에 명시된 무역위원회의 일반적인 역할에 관한 규정은 FTA와 관련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FTA 정책과 어울리는 무역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의 권한 내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대로 여러 국가와 FTA를

18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FTA 관세특별법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05. 12. 5면.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FTA 상대국마다 무역구제 제도의 적용기준 및 절차가 달라져 무역구제기관의 업무는 보다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이다.<sup>184)</sup> 아울러 국내의 이해당사자가 FTA와 관련하여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보다 더욱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185)</sup>

## 2.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관련 법규

### (1)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칠레와의 FTA 체결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 5 조 및 제 6 조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FTA의 이행으로 큰 영향을 받는

---

184) 한-칠레 FTA 이후,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가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2006년 한해에 발효되었다. 게다가 EFTA와의 FTA는 구성국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협정이 포함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FTA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업무량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무역구제법규가 복잡하게 구성될 뿐만 아니라 적용조항 사이에도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역위원회는 FTA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보다 확대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185)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 무역구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 96면.

품목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구매·비축 및 가공과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가능하다. 본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sup>186)</sup>

< 표 23 >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

-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를 위한 지원
- 용수 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 우량 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본 특별법 제10조는 지원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기부금, 마사회로부터의 출연금, 수입이익금 등을 통하여 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sup>187)</sup> 그리고 제16조에서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 농림부(해양수산부)차관,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학계의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농림부장관은 FTA에 따라 양허된 일정수량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징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자유

18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 조.

187)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 1 항).

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 납입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본 특별법 제19조에 포함되어 있다.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는 별도로, WTO 출범에 따른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일부 개정을 통하여 FTA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부채경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본법 제 4 조의 2는 한-칠레 FTA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조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농어업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었다.

## (2) 무역조정지원법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sup>188)</sup> 이 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FTA로 인한 농어업 이외의 산업분야에서 충격을 줄이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본법의 주요한 내용은, 우선 정부가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sup>189)</sup> 여기서 ‘무역조정’이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 전직·재취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sup>190)</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역조정지원법은 특정한 기업의 상품과 같은 종류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해당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해당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

188) 2006. 4. 28. 제정, 법률 제7947호, 2007. 4. 29. 시행.

189) 무역조정지원법 제14조.

190) 무역조정지원법 제16조.

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단기 경영안정자금 용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191)</sup> 또한 무역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기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sup>192)</sup>

이밖에, 무역조정지원법은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다.<sup>193)</sup>

### (3)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관련 법규의 평가와 문제점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은 FTA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경제전반 및 산업구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률들에 따라서 조성되는 지원기금은, 농어업인 지원금 약 1조 2천억 이상, 무역조정대상 기업 지원금 약 2조 6천억원 이상 그리고 근로자 지원금 약 2조 8천억원 이상 등이고, 기금조성을 위하여 마사회법, 지방세법, 풍수해보험법 등 관련법들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졌다. 또한 각 지원법들의 제 3 조에서는, 정부의 조정 또는 지원이 WTO의 지원 및 보조금 관련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FTA 상대국 또는 제 3 국과의 무역분쟁의 대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였다.

191) 무역조정지원법 제 6 조 내지 10조.

192) 무역조정지원법 제11조 내지 제13조.

193) 무역조정지원법 제14조.

그러나 취약산업 또는 그러한 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 법률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첫째, 무역조정 지원법상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의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중 6개월 이상 매출액이나 생산액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혹은 감소할 것이 확실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 해당 기업의 상품과 같은 상품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경기변동이나 이전의 산업구조조정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FTA에 의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sup>194)</sup>

둘째, 지원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크게 구별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것은 중복지원의 가능성이나 본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른 규범과 구별될 수 있는, 즉 ‘FTA와 관련된’ 지원 내용이 필요하다.

셋째, 기금운용에 관한 투명성 또는 합리성이 요구된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장기간 동안 운용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일부분이 누수되거나 잘못 투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금이 경직되게 활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위 규범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서는 ‘FTA이행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물론 동법이 제정될 당시 한-칠레 FTA의 체결에 따른

---

194) 한편 근로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역조정 지원을 받는 기업 또는 이러한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실직 등의 상황에 처해있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근로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농어업’일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농어업에만 임무가 국한된 ‘FTA이행 지원위원회’는, 명칭 또는 그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 3. 정책의 추진·이행 및 절차 관련 법규

#### (1) 정부조직 관련 규범

정부는 FTA 정책을 추진하고 체결된 FTA를 이행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의 근거규범들에서 다수의 FTA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표 24 > FTA 관련 정부조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통관지원국) 제 2 항 (국장의 권한사항)</li> <li>-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국제협력국) 제 2 항 (국장의 권한사항)</li> <li>-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농산물유통국) 제 2 항 (국장의 권한사항)</li> <li>-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 (한미자유무역협정팀 및 정원)</li> <li>-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제품안전정책부 부장의 권한사항)</li> <li>-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통상교섭본부)</li> <li>-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세제실) 제 3 항 (조세정책국장의 권한사항)</li> <li>-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정보통신협력본부) 제 2 항 (본부장의 권한사항)</li> <li>-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 (자유무역협정대책팀 및 정원)</li> </ul>
---



---

위 규정들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 내에서 FTA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과 그 권한 등을 명시한 것이다.

## (2) 자유무역협정 절차규정

정부는 FTA의 체결과 관련된 추진기구의 구성·운영, 체결절차 등을 규정하여 FT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절차규정’을 제정하였다.<sup>195)</sup>

본 절차규정은 제 2 장<sup>196)</sup>에서 외교통상부 주도의 FTA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하면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sup>197)</sup> 본 추진위원회는 FTA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FTA 협상안,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및 보완대책, 정책의 홍보대책 등을 심의한다.<sup>198)</sup> 또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된 FTA 기본전략에 관해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의결을 요청하고,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에 FTA 체결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국 등과의 FTA 체결에 관하여 협상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상대국과 공동연구 등 협상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sup>199)</sup>

이밖에, 본 절차규정 제 4 장과 제 5 장에서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와 협상 후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명시된 협상절차의 내용은 대표단의 구성, 협상안의 심의, 협상진행 및 보고, 가서명 등

---

195) 대통령훈령 제121호.

196) 제 3 조 내지 제12조.

197) FTA 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의 국장급과 관련기관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198) 자유무역협정 절차규정 제 4 조.

199) 자유무역협정 절차규정 제16조 및 제17조.

이다.<sup>200)</sup>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며, 국내법적 발효를 위한 절차 및 시행준비가 진행되어야 한다.<sup>201)</sup>

### (3) 한-미 FTA 지원위원회 규정

한-EFTA FTA 체결과 발효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최근 협상이 마무리 된 ‘한-미 FTA’이다. 세계최대의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는 단순히 한 국가와의 FTA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근거규범인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규정’(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였다.<sup>202)</sup>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의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홍보담당 수석비서관과 그밖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모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sup>203)</sup> 본 위원회는 미국과의 FTA의 체결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항과 정보의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심의한다.<sup>204)</sup> 또한 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미 FTA체결 지원단’(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단)을 설치한다.<sup>205)</sup>

200) 자유무역협정 절차규정 제18조 내지 제22조.

201) 자유무역협정 절차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

202) 2006. 8. 1. 제정, 대통령령 제19638호.

203)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제 3 조.

204)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제 2 조.

205)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제 6 조.

이밖에도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은, 자문위원, 직원의 파견, 추진상황의 보고, 관계기관 등への 협조요청, 여론의 수집, 조사·연구의 의뢰, 수당, 운영세칙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sup>206)</sup>

#### (4) 정책의 추진·이행 및 절차 관련 법규의 평가와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 체결과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규정과 정부조직규범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인 한-미 FTA체결을 위한 지원위원회 규정들이 우리나라의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절차규범으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FTA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규범들은 모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 마련된 것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정부가 FTA 정책을 추진하거나 체결된 FTA를 이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일반적인 근거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 FTA 역시 정부가 체결하는 다른 조약들과 법절차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FTA라는 조약, 특히 최근에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와 같은 FTA가 우리나라의 무역이나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과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FTA 정책의 추진 또는 체결된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일반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제 2 절 FTA 정책의 추진에 따른 통일적인 규범제정의 필요성

### 1. 미국의 NAFTA 이행법

---

206)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제 7 조 내지 제14조.

NAFTA<sup>207)</sup> 체결 당시 미국에서는 NAFTA가 과연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하여 회의적인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가는, NAFTA를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일부산업이 타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내 시장을 확대하고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FTA 정책을 추진하고 체결된 FT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여론이 과거 NAFTA가 체결되었던 당시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따라서 미국이 NAFTA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NAFTA 이행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수행하면서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992년 NA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1993년부터 NAFTA의 국내 수용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1994년 NAFTA의 발효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NAFTA를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NAFTA 이행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이 제정되었다.

NAFTA 이행법은 주로 NAFTA의 내용을 미국 국내법으로 명시하여 NAFTA를 조약에서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법 제512조가 NAFTA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의무화하여 협정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NA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제108조에서 향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원칙들을 열거하는 등 NAFTA 이외의 FTA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

---

207)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북미지역 3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체결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NAFTA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북미지역의 통합이라는 점과 가장 발전된 형태의 FTA중 하나라는 점 때문에 국제경제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고 있다. 제108조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협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sup>208)</sup>

< 표 25 > NAFTA 이행법 제108조의 협상 원칙

- 미국의 물품에 대한 특혜대우
- 미국의 서비스와 미국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동등한 경쟁기회
- 미국인에 의한 물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표준, 검사, 라벨표시 및 인증요건 등 장벽의 제거
- 미국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정부조달 정책 및 관행
- 미국의 물품과 서비스의 시장접근에 대한 기타 장벽의 제거, 미국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장벽의 제거
- 민간 기업에 의한 또는 민간기업 사이의 반경쟁적 영업 관행을 정부가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업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토대에서 미국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들 기업의 구매를 규제하게 되는 것을 포함, 공정하고 공평한 영업기회를 거부하는 법·정책·관행의 제거
- 미국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미국인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
- 미국의 물품과 서비스 무역을 왜곡하거나 미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의 수출보조금 및 국내보조금의 제거
- 모든 수출세의 제거
- 수출육성정책을 구성하는 법·정책·관행의 제거
- 위 기술된 문제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감시 및 효과적인 분쟁 해결장치

미국 행정부는 NAFTA 이행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외국과의 FTA 협상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의회내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들 보고서를 바탕으로 FTA 체결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208) 한국무역협회, □□UR 이후의 미국통상관련법□□, 1996, 608~609면/661~662면.

이러한 규정들은 NAFTA 자체의 효과적인 이행과 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 FTAA와 같은 다른 FTA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NAFTA 이행법이 NAFTA에 대한 사후평가를 규정하고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있어서 대상국의 선정이나 일반적인 협상목표의 원칙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FTA 정책을 추진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이행목적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WTO 이행법의 제정과 내용

GATT 체제의 마지막 협상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는 WTO의 설립을 낳았다. 당시 국내에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WTO의 설립을 위해서 체결된 WTO 협정 조차도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WTO 협정은 많은 진통 끝에 1994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국회는 WTO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와 함께 국내적 이행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WTO 이행법’(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sup>209)</sup>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않는데, 국제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것으로 당시에 WTO 협정의 국내적 수용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sup>210)</sup>

WTO 이행법은 WTO 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는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과 그 성격이 같지만, WTO 협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과는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WTO 이행법은 WTO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

209) 1995. 1. 3. 제정, 법률 제4858호.

210) 서헌재,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84면.

지 않으며, WTO 협정의 국내적 이행에 필요한 몇 가지 특별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WTO 이행법은 WTO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 14개 조항으로 된 비교적 간단한 법률이다. WTO 이행법 제 2 조는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경제주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본법 제 3 조와 제 4 조에서는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정상외의 권익보호와 보조금에 대한 조치 규정, 그리고 국내지원정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 8 조와 제 9 조는 국민건강이나 환경보호를 이유로 협정과 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WTO 이행법의 주된 제정 목적은 WTO 협정의 국내적 효력 발생으로 인하여 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농어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 6 조와 제 7 조에서는 농림수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는 때에는 특별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은 농어민 소득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11조 제 2 항과 제12조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제도와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 제10조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입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는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 실시를 규정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제5조에서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로서 WTO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국가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sup>211)</sup>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선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미국이 1991년 남북한이 쌀과 시멘트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국제거래라는 것을 근거로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sup>212)</sup>

### 3. FTA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률의 제정

#### (1) 법률의 제정을 통한 FTA 정책의 추진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서 일관성 있게 FTA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TA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와 대상국을 선정하는 기준,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과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 등을 명확하게 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FTA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여, FTA 정책의 지침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협정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FTA 추진·이행법은 FTA 정책의 일관적인 ‘추진’만을 추구하거나 효과적인 ‘이행’만을 규정한 법이 아니라, ‘추진’과 ‘이행’을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이미 체결된 특정한 FTA의 이행만을 위한 특별법 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213)</sup>

---

211) 또한 정부는 1995년 4월 남북무역에 참여하였던 국내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무역품목 통관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

212) 서헌제, □□대의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30면.

213) 미국의 NAFTA 이행법이나 우리나라의 WTO 이행법은 향후 FTA의 확대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미 체결된 특정한 협정을 이행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FTA 정책을 위한 추진·이행법



NAFTA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마련한 NAFTA 이행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WTO 협정을 수용하면서 제정한 WTO 이행법을 분석하면, FTA 추진·이행법의 제정필요성과 본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에 더하여 FTA와 관련된 기본정책이나 개성공단제품 등의 원산지 문제와 같은 무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등을 더욱 연구하여 본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2) FTA 추진·이행법의 내용

우선 FTA 추진·이행법은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선언하여야 한다. FTA의 국내적 목적은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경제규범의 발전에 기여하고 무역을 통하여 재화의 분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FTA를 체결한다는 국제적 목적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는 WTO 규범과 조화되어야 하고, 다자주의 협상의 결과도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FTA 추진·이행법에는 정부가 올바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체결된 FT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정책과 관련법규의 개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FTA와 관련된 관세 및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FTA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각각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

---

의 성격과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되어 FTA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나 협정의 이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관련 부처에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FTA의 영향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나 위원회 등을 구성하거나 지원하는 원칙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sup>214)</sup>

다양한 FTA의 체결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국내 산업의 피해와 보상이라는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FTA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FTA 추진·이행법에서 구체적으로 모두 명시할 수는 없으나, FTA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와 원칙 그리고 결정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sup>215)</sup>

보상에 대한 일반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중립성과 객관성의 확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상의 범위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보상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한 기대와 약속은 취약산업의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sup>216)</sup> 또한 이러한 보상과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 등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여 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sup>217)</sup>

FTA 추진·이행법에는 FTA가 남북한 교류의 확대와 한반도의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제규정

214)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193~194면.

215) 보상과 지원의 법적 근거는 각각의 FTA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규를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FTA 추진·이행법에서 일반적인 보상의 원칙과 내용의 결정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산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각각의 상황에서 별도의 보상입법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고,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6) 정문수, 『FTA 추진의 선결과제』, □□무역구제□□ 7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 7, 5~6면.

217) 이러한 내용은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 무역조정지원법 등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과 함께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sup>218)</sup>을 명시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되는 국가들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sup>219)</sup> 이것은 동북아시아 FTA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FTA에 대한 기본 입장인 동시에, 제 3 국가와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 (3) FTA 추진 · 이행법과 국내법규와의 관계

FTA 추진 · 이행법은 FT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이나 협정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국내법규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즉, FTA 추진 · 이행법을 통해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행에 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된 분야의 법규를 보완하여 FTA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sup>220)</sup>

FTA와 관련되는 국내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수도 많겠지만, 주로

---

218)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순수한 내국간 거래와는 당연히 다르며, 내국간 거래와 외국과의 거래의 중간영역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 1 항이 “무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4 항이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문준조, 앞의 논문, 76면].

219)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교류를 민족내부의 특수거래로 간주하여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GATT 제 1 조에 명시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WTO 회원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 의무면제를 받거나(WTO 설립협정 제 9 조 제 3 항), 남북한 사이에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한 사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이 WTO의 규범 내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WTO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Choi. Won-Mok, 『East Asian FTA - Prospect and Conditions』,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18~20면].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북간의 특별관계에 관하여 FTA 추진 · 이행법에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220) 김봉철,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한미FTA 논문공모□□, 외교통상부, 2006. 12, 37면 [http://fta.korea.kr/aboutFTA/USAPds].

이미 개정이 이루어진 관세법과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등 무역 분야의 법규와 산업지원 또는 구조조정법규들 이외에도, 투자 관련법규나 물류와 관련된 법규 등도 포함될 것이다.

이밖에,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고 분쟁해결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규나 기업의 국제거래와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규의 정비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FTA의 대상범위가 더욱 확대되어가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볼 때, 노동법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환경법규, 공정거래법규 등의 분야에서도 FTA에 따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 제 7 장 결론 및 요약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대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상황은 허용조항을 비롯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관련된 분쟁가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BRICs의 구성국으로서,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연자원과 남미 최대의 시장을 보유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무역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과거의 경제위기를 상당부분 극복한 브라질은, 남미 주변국들과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와 준비기간을 거쳐 MERCOSUR를 형성하여 활발한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ERCOSUR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남미지역의 협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단계적 발전을 통하여 단순한 관세동맹에서 나아가 공동시장과 그 이상의 경제통합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의 구성국들은 MERCOSUR에 지역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권한 등을 위임하여 MERCOSUR 전체의 이름으로 지역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ERCOSUR는 주로 남미지역 국가들이나 인도 및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과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서 벗어나 북미지역과 유럽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

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MERCOSUR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왔다.

우리나라는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이전의 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한-미 FTA 협상이 많은 논란 속에서 타결되었다.

우리나라는 FTA 정책의 추진과 함께 기존 무역 관련 규범에 대한 몇 가지 개정을 실시하였고, 구조조정 및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FTA 관련 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FTA의 광범위한 영향과 규범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국내법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 참 고 문 헌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  
듀케이션, 2004
-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박변순·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
-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1998
-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 서헌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 이상윤,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5
- 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한국  
조세연구원, 2001
- 조석홍, □□국제통상론□□, 두남, 2001
- 주동주, □□신흥 경제대국 BRICs와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2005. 12,
-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 한국무역협회, □□UR 이후의 미국통상관련법□□, 1996
- 강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경이슈』, □□FTA 경제연구회 발표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  
보□□, 한국정치학회, 2001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FTA 관세특별법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05. 12

참고문헌

-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 무역구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 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
- 김봉철,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한미FTA 논문공모, 외교통상부, 2006. 12
- 김중렬·권원순, 『지역주의의 새로운 추세』,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 남광규, 『중화경제 : 지역화(Regionalization)를 통한 중국경제의 확대 - 화남경제권과 동남아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자유무역협정협정과 무역·환경 연계정책의 새로운 전개』, □□KIEP동향분석속보□□, 2001
- 정문수, 『FTA 추진의 선결과제』, □□무역구제□□ 제 7 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 7
- 정재호, 『WTO DDA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조양현, 『OECD 회원국 및 신흥경제권의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입 동향분석』,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6. 8
- 조 현, 『지역주의에 대한 한국외교의 대응』, □□외교□□, 한국외교협회, 2002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 2003. 5. 22
- 원용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통상법률□□, 13호, 법무부, 1997
- 원용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0년의 평가』, □□통상법률□□ 70호, 법무부, 2006, 8
- 이동휘, 『BRICs의 국제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우리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11. 10



- KOTRA, 『메르코수르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중남미지역본부 기획조사)』, 2006. 12
- KOTRA 통상전략팀, 『한-MERCOSUR FTA 체결의 효과 분석』, 2005. 6
- Choi. Won-Mok, 『East Asian FTA - Prospect and Conditions』,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 Asif H. Qureshi,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implementing international trade norm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61
- Ernst-Ulrich Petersman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London, 1997
-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rgration* (Jaime de Melo & Arvind Panagariy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ong Chul Kim,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Remedy Review Vol. 22, Korea Trade Commission of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April, 2006
-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by LAIA Member Countries under the 1980 Treaty of Montevideo (for the Period 1/1/2004 ~ 31/12/2005)”, WT/COMTD/59, Biennial Report to the WTO, 2007. 1. 25
- David A. Gantz,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American-Canadian Studies*, Vol. 9, 2000

참 고 문 헌

Jo-Ann Crawford and Roberto V. 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WTO, 2005

John AE Vervaele, “Mercosur and Regional Integration in South Americ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pril, 2005

Kaye Scholer LLP, “Safeguards and AD/CVD Regulat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 FTA Negotiation Workbook”, Korea Trade Commission of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2002

Kim, Dong-Hoon / 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http://www.assembly.go.kr>

<http://www.aladi.org/nsfaladi/juridica.nsf/inicio2004i>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9](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9)

<http://www.worldtradelaw.net>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1\\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1_e.htm)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2\\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2_e.htm)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7\\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dev7_e.htm)

[http://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brazil\\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brazil_e.htm)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provision_e.xls)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http://www.wto.org/gatt\\_docs/english/sulpdf/91640073.pdf](http://www.wto.org/gatt_docs/english/sulpdf/91640073.pdf)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eol/e/wto08/wto8\\_60.htm#note3](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eol/e/wto08/wto8_60.htm#note3)

<http://www.moj.go.kr>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sacu/index.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sacu/index.asp)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india/index.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india/index.asp)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merco\\_intro.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merco_intro.asp)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treaty.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treaty.asp)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ouro\\_preto.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ouro_preto.asp)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mercosul\\_ccg.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mercosul_ccg.asp)  
[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ftaa.asp](http://www.mre.gov.br/ingles/politica_externa/mercosul/ftaa.asp)  
<http://fta.korea.kr/aboutFTA/USAPds>  
<http://www.seri.org>  
[http://ec.europa.eu/comm/external\\_relations/mercosur/intro/index.htm](http://ec.europa.eu/comm/external_relations/mercosur/intro/index.htm)  
[http://ec.europa.eu/comm/external\\_relations/mercosur/bacground\\_doc/fca96.htm](http://ec.europa.eu/comm/external_relations/mercosur/bacground_doc/fca96.htm)  
[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Mercosur.htm#\\_I.\\_Background](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Mercosur.htm#_I._Background)  
<http://www.bilaterals.org>  
[http://www.ftaa-alca.org/FTAADraft03/Index\\_e.asp](http://www.ftaa-alca.org/FTAADraft03/Index_e.asp)  
<http://www.klri.re.kr>  
[http://www.sice.oas.org/Trade/bra\\_e.ASP](http://www.sice.oas.org/Trade/bra_e.ASP)  
[http://www.sice.oas.org/ftaa\\_e.asp](http://www.sice.oas.org/ftaa_e.asp)  
[http://www.sice.oas.org/Trade/MRSRSACU/Index\\_e.asp](http://www.sice.oas.org/Trade/MRSRSACU/Index_e.asp)  
[http://www.sice.oas.org/agreemts/Mercin\\_e.asp](http://www.sice.oas.org/agreemts/Mercin_e.asp)

# 부 록

[부록1]

## **TREATY OF ASUNCIÓN**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and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es Parties”,

CONSIDERING that the expansion of their domestic markets, through integration, is a vital prerequisite for accelerating their processes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social justice,

BELIEVING that this objective must be achieved by making optimum use of available resources, preserving the environment, improving physical links, coordinating macroeconomic policies and ensuring complementarity between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economy, based on the principles of gradualism, flexibility and balance,

BEARING IN MIND international trends, particularly the integration of large economic areas. and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ir countries a proper plac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BELIEVING that this integration process is an appropriate response to such trends,

AWARE that this Treaty must be viewed as a further step in efforts gradually to bring about Latin American integration, in keeping with the objectives of the Montevideo Treaty in 1980,

CONVINCED of the need to promote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부록1]

development of the States Parties and to modernize their economies in order to expand the supply and improve the quality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living conditions of their populations,

REAFFIRMING their political will to lay the bases for increasingly close ties between their people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abovementioned objectives,

HEREBY AGREE AS FOLLOWS:

## **CHAPTER I - Purposes, Principles and Instruments**

### Article I

The States Parties hereby decide to establish a common market, which shall be in place by 31 December 1994 and shall be called the “common market of the southern cone” (MERCOSUR).

This common market shall involve:

The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and factors of production between countries through, inter alia,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nd non-tariff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goods, and any other equivalent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external tariff and the adoption of a common trade policy in relation to third States or groups of States, and the co-ordination of positions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and commercial forums;

The co-ordination of macroeconomic and sectoral policies between the

States Parties in the areas of foreign trade, agriculture, industry, fiscal and monetary matters,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services, customs,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nd any other areas that may be agreed upon, in order to ensure proper competition between the States Parties;

The commitment by States Parties to harmonize their legislation in the relevant area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gration process.

#### Article 2

The common market shall be based on reciprocity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States Parties .

#### Article 3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hich shall last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until 31 December 1994, and in order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the common market, the States Parties shall adopt general rules of origin, a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safeguard clauses, as contained in Annexes 11. III and IV respectively to this Treaty.

#### Article 4

The States Parties shall ensure equitable trade terms in their 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To that end, they shall apply their domestic legislation to restrict imports whose prices are influenced by subsidies, dumping or any other unfair practice. At the same time, States Parties shall co-ordinate their respective domestic policies with a view to drafting common rules for trade competition.

[부록1]

#### Article 5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main instruments for putting in place the common market shall be:

- (a) A trade liberalization programme, which shall consist of progressive, linear and automatic tariff reductions accompanied by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restrictions or equivalent measures, as well as any other restrictions on trade between the States Parties, with a view to arriving at a zero tariff and no non-tariff restrictions for the entire tariff area by 31 December 1994 (Annex I);
- (b) The co-ordination of macroeconomic policies, which shall be carried out gradually and in parallel with the programmes for the reduction of tariffs and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restriction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c) A common external tariff which encourages the foreign competitiveness of the States Parties;
- (d) The adoption of sectoral agreements in order to optimize the use and mobility of factors of production and to achieve efficient scales of operation.

#### Article 6

The States parties recognize certain differentials in the rate at which the Republic of Paraguay and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will make the transition. These differentials are indicated in the trade liberalization programme (Annex 1).



Article 7

In the area of taxes, charges and other internal duties, product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one State Party shall enjoy, in the other States Parties, the same treatment as domestically produced products .

Article 8

The States Parties undertake to abide by commitments made prior to the date of signing of this Treaty, including agreements signed in the framework of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ALADI), and to co-ordinate their positions in any external trade negotiations they may undertak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o that end:

- (a) They shall avoid affecting the interests of the States Parties in any trade negotiations they may conduct among themselves up to 31 December 1994;
- (b) They shall avoid affecting the interests of the other States Parties or the aims of the common market in any agreements they may conclude with other countries members of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 (c) They shall consult among themselves whenever negotiating comprehensive tariff reduction schemes for the formation of free trade areas with other countries members of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 (d) They shall extend automatically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ny advantage, favour, exemption, immunity or privilege granted to a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ird countries which are not members of

[부록1]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 **CHAPTER II - Organizational Structure**

### Article 9

The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and of any specific agreements or decisions adopt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ithin the legal framework established thereby, shall be entrusted to the following organs:

- (a)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 (b) The Common Market Group

### Article 10

The Council shall be the highest organ of the common market, with responsibility for its political leadership and for decision-making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objectives and time-limits set for the final establishment of the common market.

### Article 11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the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ers of the Economy of the States Parties.

It shall meet whenever its members deem appropriate, and at least once a year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residents of the States Parties.

### Article 12

The presidency of the Council shall rotate among the States Parties, in alphabetical order, for periods of six months.

Meetings of the Council shall be co-ordinated by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other ministers or ministerial authorities may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m.

#### Article 13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be the executive organ of the common market and shall be co-ordinated by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have powers of initiative. Its duties shall be the following:

- to monitor compliance with the Treaty;
-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force decisions adopted by the Council;
- to propose specific measures for applying the trade liberalization programme, co-ordinating macroeconomic policies and negotiating agreements with third parties;
- to draw up programmes of work to ensure progress towards the formation of the common market.

The Common Market Group may set up whatever working groups are needed for it to perform its duties. To start with, it shall have the working groups mentioned in Annex V.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draw up its own rules of procedure within 60 days of its establishment .

#### Article 14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consist of four members and four alternates for each country, representing the following public bodies:

[부록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Economy or its equivalent (areas of industry, foreign trade and/or economic co-ordination);
- Central Bank.

In drafting and proposing specific measures as part of its work up to 31 December 1994, the Common Market Group may, whenever it deems appropriate, call on representatives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or the private sector.

#### Article 15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have an administrative secretariat whose main functions shall be to keep the Group's documents and report on its activities. It shall be headquartered in the city of Montevideo.

#### Article 16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decisions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and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be taken by consensus, with all States Parties present.

#### Article 17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mmon market shall be Spanish and Portuguese, and the official version of its working documents shall be that drafted in the language of the country in which each meeting takes place.

#### Article 18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 market on 31 December 1994, the States Parties shall convene a special meeting to determine the

final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of the common market, as well as the specific powers of each organ and its decision-making procedures.

### **CHAPTER III - Period of Application**

#### Article 19

This Treaty shall be of unlimited dur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which shall notify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States Parties of the date of deposi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notify the Governments of each of the other States Partie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 **CHAPTER IV - Accession**

#### Article 20

This Treaty shall be open to accession, through negotiation, by other countries members of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their applications may be considered by the States Parties once this Treaty has been in force for five years.

Notwithstanding the above, applications made by countries members of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who do not belong to subregional integration schemes or an extraregional association may be considered before the date specified.

[부록1]

Approval of applications shall require the unanimous decision of the States Parties.

## **CHAPTER V - Denunciation**

### Article 21

Any State Party wishing to withdraw from this Treaty shall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of its intention expressly and formally and shall submit the document of denunciation within 60 day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Paraguay, which shall distribute it to the other States Parties.

### Article 22

Once the denunciation has been formalized,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denouncing State deriving from its status as a State Party shall cease, while those relating to the liberalization programme under this Treaty and any other aspect to which the States Parties, together with the denouncing State, may agree within the 60 days following the formalization of the denunciation shall continue. The latter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denouncing Party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above-mentioned formalization.

## **CHAPTER VI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23

This Treaty shall be called the “Treaty of Asuncion”.

Article 24

In order to facilitate progress towards the formation of the common market, a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of MERCOSUR shall be established. The executive branches of the States Parties shall keep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branches informed of the progress of the common market established by this Treaty.

DONE at the city of Asuncion, on 26 March 1991, in one original in the Spanish and Portuguese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Treaty and shall send a duly authenticated copy thereof to the Governments of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Parties.

[부록2]

## **PROTOCOL OF OURO PRETO**

### **Additional Protocol to Asunción's Treaty o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Mercosur**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and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es Parties”,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e Treaty of Asuncion of 26 March 1991.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progress made a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customs union as a stage in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market;

Reaffirming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Treaty of Asuncion and mindful of the need to give special consideration to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regions of Mercosur.

Mindful of the forces for change inherent in any integration process and the consequent need to adapt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Mercosur to the transformations that have taken place.

Recognising th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 existing bodi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Hereby agree as follows:



## **Chapter I - Structure of Mercosur**

### Article 1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Mercosur shall comprise the following organs:

- I.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CCM);
- II. The Common Market Group (CMG);
- III.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MTC);
- IV. 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JPC);
- V. The 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 (ESCF);
- VI.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MAS).

*Sole paragraph* - Auxiliary organs necessary to attain the objectives of the integration process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terms of this Protocol.

### Article 2

The following are inter-governmental organs with decision-making powers: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the Common Market Group and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 Section II -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 Article 3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is the highest organ of Mercosur, with responsibility for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integration process and for making the decisions necessary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defined by the Treaty of Asuncion and the final establishment of the common market.

Article 4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shall consist of the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ers of the Economy of the States Parties, or their equivalents.

Article 5

The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shall be rotated among the States Parties, in alphabetical order, for periods of six months.

Article 6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shall meet whenever it deems appropriate, and at least once every six months,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residents of the States Parties.

Article 7

The meetings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shall be co-ordinated by the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and other ministers or ministerial authorities may be invited to participate.

Article 8

The following are duties and functions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 I.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of Asuncion, its protocols, and agreements signed within its context;

[부록2]

- II. To formulate policies and promote the measures necessary to build the common market;
- III. To assume the legal personality of Mercosur;
- IV. To negotiate and sign agreements, on behalf of Mercosur, with third countries, groups of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se functions may be delegated, by express mandate, to the Common Market Group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paragraph VII of Article 14;
- V. To rule on proposals submitted to it by the Common Market Group;
- VI. To arrange meetings of ministers and rule on agreements which those meetings refer to it;
- VII. To establish the organs it considers appropriate, and to modify or abolish them;
- VIII. To clarify, when it considers necessary, the substance and scope of its decisions;
- IX. To appoint the Director of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 X. To adopt financial and budgetary decisions;
- XI. To approve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on Market Group.

#### Article 9

The rulings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shall take the form of Decisions which shall be binding upon the States Parties.

### Section III - The Common Market Group

#### Article 10

The Common Market Group is the executive organ of Mercosur.

Article 11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consist of four members and four alternates for each country, appoint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who must include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ies of the Economy (or their equivalents) and the Central Banks.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be co-ordinated by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Article 12

When drafting and proposing specific measures in the course of doing its work, the Common Market Group may, whenever it deems appropriate, call on representatives of other organs of government or of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Mercosur.

Article 13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hold ordinary or extraordinary meetings, as often a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its rules of procedure.

Article 14

The following are duties and functions of the Common Market Group:

- I. To monitor, within the limits of its competence, compliance with the Treaty of Asuncion, its Protocols, and agreements signed within its framework;
- II. To propose draft Decisions to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 III.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force the Decisions adopted

[부록2]

by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IV. To draw up programmes of work to ensure progres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 market;

V. To establish, modify or abolish organs such as working groups and speci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its objectives;

VI. To express its views on any proposals or recommendations submitted to it by other Mercosur organs within their sphere of competence;

VII. To negotiate, with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all the States Parties, when expressly so delegated by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and within the limits laid down in special mandates granted for that purpose, agreements on behalf of Mercosur with third countries, groups of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When so mandated,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sign the aforementioned agreements. When so authorised by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the Common Market Group may delegate these powers to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VIII. To approve the budget and the annual statement of accounts presented by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IX. To adopt financial and budgetary Resolutions based on the guidelines laid down by the Council;

X. To submit its rules of procedure to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XI. To organise the meetings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and to prepare the reports and studies requested by the latter;

XII. To choose the Director of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XIII. To supervise the activities of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XIV. To approve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Trade Commission and the 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

#### Article 15

The decisions of the Common Market Group shall take the form of Resolutions which shall be binding upon the States Parties.

### Section IV -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 Article 16

It shall be the task of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a body responsible for assisting the Common Market Group, to monitor the application of the common trade policy instruments agreed by the States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customs union, as well as to follow up and review questions and issues relating to common trade policies, intra-Mercosur trade and third countries.

#### Article 17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four members and four alternates for each State Party and shall be co-ordinated by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 Article 18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shall meet at least once a month, or whenever requested to do so by the Common Market Group or any of the States Parties.

## Article 19

The following are duties and functions of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 I. To monitor the application of the common trade policy instruments both within Mercosur and with respect to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trade agreements;
- II. To propose to the Common Market Group new Mercosur trade and customs regulations or changes in the existing regulations;
- III. To follow up the application of the common trade policy instruments in the States Parties;
- IV. To analyse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trade policy instrument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customs union and to submit Proposals in this respect to the Common Market Group;
- V. To take decisions connected with the administ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mmon external tariff and the common trade policy instruments agreed by the States Parties.
- VI. To report to the Common Market Group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common trade policy instruments, on the consideration of requests received and on the decisions taken with respect to such requests;
- VII. To propose to the Common Market Group new Mercosur trade and customs regulations or changes in the existing regulations;
- VIII. To propose the revision of the tariff rates for specific items of the common external tariff, inter alia, in order to deal with cases re-

lating to new production activities within Mercosur;

IX. To set up the technical committees needed for it to perform its duties properly, and to direct and supervise their activities;

X. To perform tasks connected with the common trade policy requested by the Common Market Group;

XI. To adopt rules of procedure to be submitted to the Common Market Group for approval.

#### Article 20

The decisions of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shall take the form of Directives or Proposals. The Directives shall be binding upon the States Parties.

#### Article 21

In addition to the duties and functions described in Articles 16 and 19 of this Protocol,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shall be responsible for considering complaints referred to it by the National Sections of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and originated by States Parties or individuals, whether natural or legal persons, relating to the situ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1 or 25 of the Brasilia Protocol, when they fall within its sphere of competence.

*Paragraph 1* - The examination of the aforesaid complaints within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shall not prevent the complainant State Party taking action under the Brasilia Protocol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Paragraph 2* - Complaints arising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this



[부록2]

Articl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he Annex to this Protocol.

## Section V - 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 Article 22

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is the organ representing the parliaments of the States Parties within Mercosur.

### Article 23

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shall consist of equal numbers of members of parliament representing the States Parties.

### Article 24

The members of 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respective national parliam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l procedures.

### Article 25

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shall endeavour to speed up the corresponding internal procedures in the States Parties in order to ensure the prompt entry into force of the decisions taken by the Mercosur organs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is Protocol. Similarly, it shall assist with the harmonisation of legislations, as required to advance the integration process. When necessary, the Council shall request 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to examine priority issues.

### Article 26

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shall submit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through the Common Market Group.

Article 27

The 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Section VI - The 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

Article 28

The 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 is the organ representing the economic and social sectors and shall consist of equal numbers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State Party.

Article 29

The 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 shall have a consultative function and shall express its views in the form of Recommendations to the Common Market Group.

Article 30

The 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 shall submit its rules of procedure to the Common Market Group, for approval.

Section VII -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Article 31

Mercosur shall have an Administrative Secretariat to provide operational support.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sha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services to the other Mercosur organs and shall be headquartered in the city of Montevideo.

Article 32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activities:

- I. Serve as the official archive for Mercosur documentation;
- II. Publish and circulate the decisions adopted within the framework of Mercosur. In this context, it shall:
  1. Make, in co-ordination with the States Parties, authentic translations in Spanish and Portuguese of all the decisions adopted by the organs of the Mercosur institutional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2. Publish the Mercosur official journal.
- III. Organise the logistical aspects of the meetings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the Common Market Group and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and, as far as possible, the other Mercosur organs, when those meetings are held at its headquarters. In the case of meetings held outside its headquarters,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shall provide support for the State in which the meeting is held;
- IV. Regularly inform the States Parties about the measures taken by each country to incorporate in its legal system the decisions adopted by the Mercosur organs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is Protocol;
- V. Compile national lists of arbitrators and experts, and perform other tasks defined in the Brasilia Protocol of 17 December 1991;
- VI. Perform tasks requested by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the Common Market Group and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VII. Draw up its draft budget and, once this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on Market Group, do everything necessary to ensure its proper implementation;

VIII. Submit its statement of accounts annually to the Common Market Group, together with a report on its activities.

#### Article 33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shall be headed by a Director who shall be a national of one of the States Parties. He shall be chosen by the Common Market Group, on a rotating basi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tates Parties and shall be appointed by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His term of office shall be two years and he may not be re-elected.

### **Chapter VIII - Legal Personality**

#### Article 34

Mercosur shall possess 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law.

#### Article 35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Mercosur may take whatever action may be necessary to achieve its objectives, in particular sign contracts, buy and sell personal and real property, appear in court, hold funds and make transfers.

#### Article 36

Mercosur shall make headquarters agreements.

[부록2]

## **Chapter IX - Decision-Making System**

### **Article 37**

The decisions of the Mercosur organs shall be taken by consensus and in the presence of all the States Parties.

## **Chapter IV - Internal Applications of the Decisions Adopted by Mercosur Organs**

### **Article 38**

The States Parties undertake to take all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compliance with the decisions adopted by the Mercosur organs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is Protocol.

*Sole paragraph* - The States Parties shall inform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of the measures taken to this end.

### **Article 39**

The content of the Decisions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the Resolutions of the Common Market Group, the Directives of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and the Dispute Settlement Arbitration Rulings shall be published in full, in Spanish and Portuguese, in the Mercosur official journal, together with any instrument which, in the view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or the Common Market Group requires official publicity.

Article 40

In order to ensure the simultaneous entry into force in the States Parties of the decisions adopted by the Mercosur organs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is Protocol, the following procedure must be followed:

- i. Once the decision has been adopted, the States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incorporate it in their domestic legal system and inform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 ii. When all the States Parties have reported incorporation in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systems,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shall inform each State Party accordingly;
- iii. The decisions shall enter into force simultaneously in the States Parties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communication made by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under the terms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 To this end, the States Parties shall, within the time-limit mentioned, publis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decisions in question in their respective official journals.

**Chapter X - Legal Sources of Mercosur**

Article 41

The legal sources of Mercosur are:

- I. The Treaty of Asuncion, its protocols and the additional or supplementary instruments;
- II. The agreements conclud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reaty of

[부록2]

Asuncion and its protocols;

III. The Decisions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the Resolutions of the Common Market Group and the Directives of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adopted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of Asuncion.

#### Article 42

The decisions adopted by the Mercosur organs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is Protocol shall be binding and, when necessary, must be incorporated in the domestic leg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each country's legislation.

### **Chapter XI - Dispute Settlement System**

#### Article 43

Disputes which arise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non-fulfil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f Asuncion and the agreements concluded within its framework or of Decisions of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Resolutions of the Common Market Group and Directives of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shall be subject to the settlement procedures laid down in the Brasilia Protocol of 17 December 1991.

*Sole paragraph* - The Directives of the Mercosur Trade Commission are also incorporated in Articles 19 and 25 of the Brasilia Protocol.

#### Article 44

Before the Common External Tariff convergence process is complete, the

States Parties shall review the present Mercosur dispute settlement system with a view to adopting the permanent system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nnex III to the Treaty of Asuncion and Article 34 of the Brasilia Protocol.

## **Chapter XII - Budget**

### Article 45

The Mercosur Administrative Secretariat shall have a budget to cover its operating expenses and the expenses authorised by the Common Market Group. This budget shall be funded by equal contributions from the State Parties.

## **Chapter XIII - Languages**

### Article 46

The official languages of Mercosur are Spanish and Portuguese. The official version of the working documents shall be that in the language of the country hosting the meeting.

## **Chapter XIV - Review**

### Article 47

When they consider it opportune, the States Parties shall convene a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Mercosur established by the present Protocol and the specific functions of each of its organs.



## **Chapter XV - Entry Into Force**

### Article 48

This Protocol, which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Treaty of Asuncion, shall be of unlimited dur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The Protocol and it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 Article 4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notify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States Parties of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 Article 50

With regard to accession and denunciation, the rules established by the Treaty of Asuncion shall apply to this Protocol in their entirety. Accession to or denunciation of the Treaty of Asuncion or this Protocol shall imply, ipso jure, accession to or denunciation of this Protocol and the Treaty of Asuncion.

## **Chapter XVI - Transitional Provision**

### Article 51

The institutional structure provided for in the Treaty of Asuncion of 26 March 1991 and the organs it created shall be maintained until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 **Chapter XVII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52

This Protocol shall be called the “Ouro Preto Protocol”.

### Article 53

All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f Asuncion of 26 March 1991 which conflict with the terms of this Protocol or with the content of the Decisions adopted by 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re hereby repealed.

Done at the city of Ouro Preto,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17 December 1994, in one original in the Portuguese and Span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The Government of Paraguay shall send an authenticated copy of this Protocol to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States Parties.

[부록3]

### **1980 TREATY OF MONTEVIDEO**

The Governments of the Argentine Republic, the Republic of Bolivia,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Chile, the Republic of Colombia, the Republic of Ecuador, the United Mexican States, the Republic of Paraguay, the Republic of Peru,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and the Republic of Venezuela,

INSPIRED by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friendship and solidarity links between their peoples.

PERSUADED that economic regional integration is one of the principal means for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to speed up thei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cess in order to ensure better standards of life for their peoples.

DECIDED to renew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process and establish objectives and mechanisms consistent with the region's real situation.

CERTAIN that the continuation of such process requires taking advantage of the positive experience obtain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video Treaty dated 18 February 1960.

AWARE that it is necessary to ensure a special treatment for countries at a relatively less advanced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WILLING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ties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gration areas of Latin America in order to promote a process converging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ommon market.

[부록3]

CONVINCED of the need to contribute towards obtaining a new scheme of horizontal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ir integration areas, inspired by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development.

BEARING IN MIND the decision adop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hereby regional or general agreements may be drawn up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mutually reduce or eliminate obstacles to their reciprocal trade.

THEY HEREBY AGREE to sign the present Treaty which, concurrent with the provisions herein contained, shall substitute the Treaty instituting the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 **CHAPTER I - OBJECTIVES, DUTIES AND PRINCIPLES**

### Article 1

By the present Treaty the Contracting Parties pursue the integration process leading to promote the harmonious and balanced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to that effect they hereby institute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with headquarters in the city of Montevideo, Eastern Republic of Uruguay.

The long-term objective of such process shall be the gradual and progressive establishment of a Latin American common market.

### Article 2

The rules and mechanisms of the present Treaty, as well as those which may be established within its framework by member countries, shall have

as their purpose the performance of the following basic duties of the Associatio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reciprocal trade, economic co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ctions encouraging market expansion.

### Article 3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Treaty and the evolution towards its final objective, member countries shall bear in mind the following principles:

- a. Pluralism, sustained by the will of member countries to integrate themselves, over and above the diversity which might exist in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in the region;
- b. Convergence, meaning progressive multilateralization of partial scope agreements by means of periodical negotiations between member countries, with a view to establish the Latin American common market;
- c. Flexibility, characterized by the capacity to allow the conclusion of partial scope agreements, ruled in a form consistent with the progressive attainment of their convergence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gration ties;
- d. Differential treatments, as determined in each case, both in regional and partial scope mechanisms, on the basis of three categories of countries, which will be set up taking into account their economic-structural characteristics. Such treatments shall be applied in a determined scale to intermediate developed countries, and in a more favourable manner to countries at a relatively less advanced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 e. Multiple, to make possible various forms of agreements between member countries, following the objectives and duties of the integration process,

[부록3]

using all instruments capable of activating and expanding markets at regional level.

## **CHAPTER II - MECHANISMS**

### Article 4

In order to fulfill the basic duties of the Association set forth in article 2 of the present Treaty, member countries hereby establish an area of economic preferences, comprising a regional tariff preference, regional scope agreements, and partial scope agreements.

#### First section - Regional tariff preference

### Article 5

Member countries shall reciprocally grant a regional tariff preference to be applied with reference to the level in force for third countries and be subject to the corresponding regulation.

#### Second section - Regional scope agreements

### Article 6

Regional scope agreements are those in which all member countries participate. They shall be drawn up within in framework of the objectives and provisions of the present Treaty, and may refer to the same matters and include those instruments foreseen for the partial scope agreements provided for in the third section of the present chapter.

Third section - Partial scope agreements

Article 7

Partial scope agreements are those wherein all member countries do not participate. These agreements shall tend to create the conditions necessary to deepen the regional integration process by means of their progressive multilateralization.

Rights and obligations to be established in partial scope agreements shall exclusively bind the signatory member countries or those adhered thereto.

Article 8

Partial scope agreements may refer to trade, economic complementation, agriculture, trade promotion, or adopt other modalities concurring with article 14 of the present Treaty.

Article 9

Partial scope agreements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general rules:

- a. They shall be open for accession to the other member countries, prior negotiation;
- b. They shall contain clauses promoting convergence in order that their benefits reach all member countries;
- c. They may contain clauses promoting convergence with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in concurrence with the mechanisms established in the present Treaty;

[부록3]

- d. They shall include differential treatments depending on the three categories of countries recognized by the present Treaty. The implementation of such treatments as well as negotiation procedures for their periodical revision at the request of any member country which may consider itself at a disadvantage shall be determined in each agreement;
- e. Tariff reductions may be applied to the same products or tariff sub-items and on the basis of a percentage rebate regarding the tariffs applied to imports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ting countries;
- f. They shall be in force for a minimum term of one year; and
- g. They may include, among others, specific rules regarding origin, safeguard clauses, non-tariff restrictions, withdrawal of concessions, renegotiation of concessions, denouncement,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of policies. Should these specific rules not have been adopted, the general provisions to be established by member countries on the respective matter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 Article 10

Trade agreements are exclusively aimed towards trade promotion among member countries, and shall be subject to the specific rules to be established for that purpose.

#### Article 11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s are aimed, among other objectives, to promote maximum utilization of production factors, stimulate economic complementation, ensure equitable conditions for competition, facilitate entry of products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encourage the balanced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member countries. These agreements shall be subject to the specific rules to be established for that purpose.

#### Article 12

Agricultural agreements are aimed to promote and regulate intraregional trade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They shall contemplate flexibility elements bearing in mind the participating countrie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These agreements may refer to specific products or groups of products, and may be based on temporary, seasonal, per quota or mixed concessions, or on contracts between State or para-State organizations. They shall be subject to the specific rules to be established for that purpose.

#### Article 13

Trade promotion agreements shall refer to non-tariff matters and tend to promote intraregional trade flows.

They shall be subject to the specific rules to be established for that purpose.

#### Article 14

Member countries may establish, through the corresponding regulations, specific rules to conclude other modalities of partial scope agreements.

For this purpose, they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mong other matter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ourism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부록3]

### **CHAPTER III - SYSTEM IN FAVOUR OF COUNTRIES AT A RELATIVELY LESS ADVANCED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 Article 15

Member countries shall establish conditions favouring participation of countries at a relatively less advanced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based on the principles of non-reciprocity and community cooperation.

#### Article 16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m an effective preferential treatment, member countries shall establish market opening as well as set up programs and other specific forms of cooperation.

#### Article 17

Actions favouring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ies shall be concluded through regional scope and partial scope agreement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uch agreements, member countries shall execute negotiated rules concerning preservation of preferences, elimination of non-tariff restrictions and application of safeguard clauses in justified cases.

#### First section - Regional scope agreements

#### Article 18

For each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y, member countries shall approve negotiated lists of preferably industrial products originating from each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y, for which total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nd other restrictions shall be accorded, without reciprocity, by all other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Member countries shall set up the necessary procedures to achieve progressive extension of the respective liberalization lists. Corresponding negotiations may be carried out when deemed convenient.

At the same time, member countries shall endeavour to set up effective compensation mechanisms to take care of negative effects which might influence intraregional trade of the relatively less developed land-locked countries.

#### Second section - Partial scope agreements

##### Article 19

Partial scope agreements negotiated by the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ies with other member countries shall conform, wherever pertinent, with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rticles 8 and 9 of the present Treaty.

##### Article 20

In order to encourage effective and collective cooperation in favour of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ies, member countries shall negotiate Special Cooperation Programs with each one of them.

##### Article 21

In order to facilitate utilization of tariff cuts, member countries may set up cooperation programs and actions in the fields of preinvestment, financing and technology, mainly directed towards supporting the relatively less de-

[부록3]

veloped countries, with special regard, among them, to land-locked countries.

#### Article 22

Notwithstanding the proceeding articles, treatments in favour of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ies may include collective and partial cooperation actions calling for effective mechanisms meant to compensate the disadvantageous situation faced by Bolivia and Paraguay due to their land-locked location.

Provided that criteria referred to gradual timing are adopted within the regional tariff preference referred to in article 5 of the present Treaty, attempts shall be made to preserve the margins granted in favour of land-locked countries by means of cumulative tariff cuts.

At the same time, attempts shall be made to establish compensation formulae, both as regards the regional tariff preference when deepened, and regional and partial scope agreements.

#### Article 23

Member countries shall endeavour to grant land-locked countries facilities to establish free zones, warehouses or ports and other administrative international transit facilities in their territories.

### **CHAPTER IV**

#### **Convergence and cooperation with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areas of economic integration**

#### Article 24

Member countries may establish multilateral association or relationship systems encouraging convergence with other countries and areas of economic

integration of Latin America,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greeing with these countries or areas the establishment of a Latin American tariff preference.

Member countries shall in due course regul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ystems.

#### Article 25

Likewise, member countries may draw up partial scope agreements with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areas of economic integ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various modalities foreseen in the third section of chapter II of the present Treaty, and under the terms of the respective regulative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se agreements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rules:

- a. Concessions granted by participating member countries shall not be extensive to the others, excepting the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ies;
- b. When a member country includes products already negotiated in partial agreements with other member countries, concessions granted may be higher than those agreed with the former; in this case,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member countries shall be carried out in order to find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s, unless the respective partial agreements include clauses concerning automatic extension or waiver of preferences contained in the partial agreements referred to in the present article; and
- c. They shall be multilaterally assessed by the member countries within the Committee in order to acknowledge the scope of the agreements drawn

[부록3]

up and facilitate participation of other member countries in same.

## **CHAPTER V COOPERATION WITH OTHER AREAS OF ECONOMIC INTEGRATION**

### Article 26

Member countries shall undertake the actions necessary to establish and develop solidarity and cooperation links with other integration areas outside Latin America, through the Association's participation in horizontal cooperation programs carried out at international level, thus implementing the basic principles and commitments adop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and Action Program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of the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The Committee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facilitate compliance with the objectives set forth.

### Article 27

At the same time, member countries may draw up partial scope agreement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or respective economic integration areas outside Latin America, following the various modalities foreseen in the third section of chapter II of the present Treaty, and under the terms of the pertinent regulative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se agreements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rules:

- a. Concessions granted by membe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m shall not be extended to other members, with the exception of the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ies;
- b. When products already negotiated with other member countries in partial scope agreements are included, concessions granted may not be higher than those agreed with the former, and in such case they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to those countries; and
- c. They shall be declared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undertaken by member countries within the frame of the present Treaty, in accordance with captions a) and b) of the present article.

## **CHAPTER VI**

### **.INSTITUTIONAL ORGANIZATION**

#### Article 28

The political bodies of the Association are:

- a. The 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referred to as the “Council” in this Treaty);
- b. The Evaluation and Convergence Conference (referred to as the “Conference” in this Treaty); and
- c. The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is Treaty).

#### Article 29

The technical body of the Association is the General Secretariat (referred to as the “Secretariat” in this Treaty).

Article 30

The Council is the supreme body of the Association and shall adopt whatever decisions may correspond to the higher governing policy of the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The Council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 a. To issue general rules aimed at a better compliance with the objectives of the Association, as well as at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integration process;
- b. To examine the results of the tasks carried out by the Association;
- c. To adopt corrective measures of multilateral scope,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as per terms of article 33, caption a) of the present Treaty;
- d. To establish the guide-lines to be followed by the other bodies of the Association in their tasks;
- e. To set the basic rules to govern the relations of the Association with other regional assoc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agencies;
- f. To review and update basic rules governing convergence and cooperation agreement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respective areas of economic integration;
- g. To take cognizance of questions submitted by the other political bodies and decide upon them;
- h. To delegate upon the other political bodies the power to decide on specific matters aimed at a better compliance with the Association objectives;



- y. To accept accession of new member countries;
- j. To adopt amendments and additions to the Treaty as per precepts of article 61;
- k. To appoint the Secretary-General; and
- l. To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Article 31

The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of the member countries. However, when in some countries the competence of integration matters is assigned to a Minister or Secretary of State other than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ember countries may be represented at the Council, with full powers, by the respective Minister or Secretary.

Article 32

The Council shall meet and take decisions with the presence of all member countries.

The Council shall meet when convened by the Committee.

Article 33

The Conference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 a. To examine the operation of the integration process in all its aspects and the convergence of partial scope agreements through their progressive multilateralisation, as well as to recommend the Council the adoption of multilateral scope corrective measures;
- b. To promote actions of broader scope regarding economic integration;

[부록3]

- c. To periodically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differential treatments,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the evolu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countries and consequently their degree of development, but also the effective use made by beneficiary countries of the applied differential treatment, as well as of the procedures aimed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such treatments;
- d.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system in favour of countries at a relatively less advanced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dopt measures for its more effective application;
- e. To carry out multilateral negotiations to determine and deepen the regional tariff preference;
- f. To foster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regional scope agreements, wherein all member countries participate, which refer to any matter pertaining to the present Treaty, as per precepts of article 6;
- g. To comply with all the tasks entrusted to it by the Council;
- h. To commend the Secretariat such studies as it deems convenient; and
- y. To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 Article 34

The Conference shall be composed of Plenipotentiaries of member countries.

The Conference shall hold regular sessions every three years at the request of the Committee. It shall also meet at any other time in extraordinary session, when convened by the latter to deal with questions of its specific competence.

The Conference shall meet and take decisions with the presence of all member countries.

Article 35

The Committee is the permanent body of the Association and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and duties:

- a. To promote the conclusion of regional scope agreements, under the terms of article 6 of the present Treaty and, for that purpose, to convene governmental meetings at least once a year with the following aims:
  - i. Give continuity to the activities of the new integration process;
  - ii. Evaluate and guide the operation of the process;
  - iii. Analyze and promote measures to attain more advanced mechanisms of integration; and
  - iv. Undertake sectoral and multi-sectoral negotiations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reach regional scope agreements basically referred to tariff cuts;
- b. To adopt the measure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esent Treaty and all its supplementary rules;
- c. To regulate the present Treaty;
- d. To perform the tasks entrusted to it by the Council and the Conference;
- e. To adopt the annual work program of the Association and its annual budget;
- f. To fix the contributions of member countries to the Association budget;
- g. To adopt, as proposed by the Secretary-General, the structure of the Secretariat;

[부록3]

- h. To convene the Council and the Conference;
- y. To represent the Association before third parties;
- j. To commend studies to the Secretariat;
- k. To submit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and the Conference;
- l. To present reports on its activities to the Council;
- m. To propose formulae to solve issues brought forth by member countries claiming non-observance of some of the rules or principles of the present Treaty;
- n. To multilaterally assess partial agreements as may be drawn up by the countries under the terms of article 25 of the present Treaty;
- ñ. To declare the compatibility of partial agreements to be drawn up by member countries under the terms of article 27 of the present Treaty;
- o. To create auxiliary bodies;
- p. To adopts its own Rules of Procedure; and
- q. To take care of business of common interest not falling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other bodies of the Association.

#### Article 36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a Permanent Representative of each member country with the right to one vote.

Each Permanent Representative shall have a Deputy.

#### Article 37

The Committee shall meet and adopt resolutions with the pres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 countries' Representatives.

Article 38

The Secretariat shall be headed by a Secretary-General and composed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The Secretary-General shall hold offic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may be re-elected for an equal term.

The Secretary-General shall act in such capacity with respect to all the political bodies of the Association.

The Secretariat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and duties:

- a. To submit proposals to the corresponding Association bodies, through, the Committee, leading towards a better accomplishment of the objectives and duties of the Association;
- b. To carry out the necessary studies to fulfill its technical duties and those entrusted to it by the Council, the Conference and the Committee, and to perform the other activities provided for in the annual work program;
- c. To carry out studies and actions leading to proposals to member countries, through their Permanent Representatives, regarding conclusion of the agreements foreseen by the present Treaty, within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Council and the Conference;
- d. To represent the Association before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deal with questions of common interest;
- e. To administer the Association assets and represent it for such purposes in public and private law acts and contracts;

[부록3]

- f. To request technical advice and cooperation of individuals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g. To propose the creation of auxiliary bodies to the Committee;
- h. To process and furnish member countries, in a systematic and updated manner, statistical information and data on foreign trade regulation systems of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eparation and carrying out of negotiations within the various Association mechanisms, as well as the further utilization of the respective concessions;
- y. To analyze on its own initiative, for all countries, or at the request of the Committee, compliance of agreed commitments, and evaluate legal provisions of member countrie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alter concessions granted;
- j. To call meetings of non-governmental auxiliary bodies and coordinate their operation;
- k. To periodically evaluate the progress of the integration process and permanently follow up the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Association and the commitments resulting from the agreements achieved within in framework of same;
- l. To organize and put into operation an Economic Promotion Unit for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carry out actions to obtai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studies and projects to comply with the promotion program. At the same time, to draw up an annual report on the advantages obtained from the system in favour of the relatively less developed countries;
- m. To prepare the Association's expenditure budget, for approval by the Committee, as well as such subsequent reforms which might be necessary;

- n. To prepare and present to the Committee the draft annual work programs;
- ñ. To engage, admit and dismiss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ruling its structure;
- o. To comply with requests received from any of the political bodies of the Association; and
- p. To present an annual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Treaty and the legal provisions derived therefrom.

Article 39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appointed by the Council.

Article 40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head of the technical body, as well as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shall not send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nat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ttitude not consistent with their character as international officers.

Article 41

Member countries pledge themselves to respect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duties of the Secretary-General and Secretariat staff or of its engaged experts and consultants, and to abstain from influencing them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 Article 42

Auxiliary bodies shall be established for consultation, assessment and technical support. In particular, one body shall be set up composed of officers responsible for the integration policy of member countries.

At the same time, consultative auxiliary bodies shall be set up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various sectors of economic activity of each one of the member countries.

#### Article 43

The Council, the Conference and the Committee shall adopt their decisions by the affirmative vote of two thirds of the member countries.

Decisions on the following matters excepted from this general rule shall be adopted by a two-thirds affirmative vote, provided there is no negative vote:

- a. Amendments or additions to the present Treaty;
- b. Adoption of decisions corresponding to the higher governing policy of the integration process;
- c. Adoption of decisions executing the results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to determine and deepen the regional tariff preference;
- d. Adoption of decisions leading to give partial scope agreements a multilateral regional level;
- e. Acceptance of accession of new member countries;
- f . Regulation of the Treaty provisions;



- g. Establishment of the percentages of member countries' contributions to the budget of the Association;
- h. Adoption of corrective measures arising from the evaluations of the progress achieved within the integration process;
- y. Authorization of a term of less than five years regarding obligations, in case of Treaty denouncement;
- j. Adoption of guide-lines to be followed by the Association bodies in their tasks; and
- k. Establishment of basic rules governing the relations of the Association with other regional assoc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agencies.

Abstention shall not mean a negative vote. Absence at the time of voting shall be interpreted as abstention.

The Council may eliminate subjects from this list of exceptions by the affirmative vote of two thirds of the member countries, provided there is no negative vote.

## **CHAPTER VII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44

Any advantages, favourable treatments, franchises, immunities and privileges which member countries apply to products originating from or bound to any other member country or non-member country, pursuant to decisions or agreements not foreseen in the present Treaty or the Cartagena Agreement, shall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extended to the other member countries.

[부록3]

#### Article 45

Any advantages, favourable treatments, franchises, immunities and privileges already granted or to be granted under agreements between member countries or between these and third countries to facilitate border traffic shall be exclusively applicable to the countries which sign or may have signed them.

#### Article 46

As regards taxes, charges and other internal duties, products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a member country shall be entitl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member countries to a treatm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pplied to similar national products.

Member countries shall adopt such steps as may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eceding provis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Constitutions.

#### Article 47

In the case of products included in the regional tariff preference or in regional or partial scope agreements which are not produced or will not be produced in substantial quantities in its territory, each member country shall endeavour to avoid that taxes or other internal measures applied result in annulment or reduction of any concession or advantage obtained by any member country as a result of the respective negotiations.

If a member country considers itself at a disadvantage by the measures contai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t may resort to the Committee so that the situation raised may be examined and pertinent recommendations issued.

Article 48

Within the territory of other member countries, capitals originating from member countries shall have the right to a treatm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granted to capitals coming from any other non-member countr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set out in agreements which might be concluded on this matter by member countries under the terms of the present Treaty.

Article 49

Member countries may establish supplementary rules on trade policy regulating, among other matters, the application of non-tariff restrictions, a system of origin, the adoption of safeguard clauses, export promotion systems and border traffic.

Article 50

No provision under the present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precluding the adoption and observance of measures regarding:

- a. Protection of public morality;
- b. Implementation of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 c.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of arms, munitions, and other war

[부록3]

materials and,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all other military equipment;

d. Protection of human, animal and plant life and health;

e. Imports and exports of gold and silver in bullion form;

f.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al or archeological value; and

g. Exportation, use and consumption of nuclear materials, radioactive products or any other material used for the development and exploitation of nuclear energy.

#### Article 51

Products imported and exported by any member country shall have the right to free transit throughout the territory of the other member countries, and be exclusively subject to payment of charges normally applicable for services rendered.

### **CHAPTER VIII LEGAL STATUS, IMMUNITIES AND PRIVILEGES**

#### Article 52

The Association shall be endowed of complete legal status and specially of the capacity:

a. To contract;

b. To acquire such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indispensable to carry out its objectives and to dispose of it;

c. To file suits; and

d. To keep funds in any currency and effect the necessary transfers.

Article 53

Representatives and other diplomatic officers of member countries accredited before the Associ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officers and advisers of the Association, shall be endowed of diplomatic immunities and privileges and such other rights necessary for exercising their duties within the territory of member countries.

Member countries hereby pledge themselves to draw up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term an agreement aimed at regulating the contents of the proceeding paragraph, wherein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be defined.

The Association shall draw up an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in order to determine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which the Association, its bodies and its international officers and advisers shall be entitled.

Article 54

The legal status of the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established by the Montevideo Treaty signed on 18 February 1960 shall continue, in all its effects, within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Therefore, from the date when the present Treaty enters into forc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shall correspond to the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 CHAPTER IX - FINAL PROVISIONS

### Article 55

The present Treaty may not be signed with reservations, neither may these be received on the occasion of its ratification or accession.

### Article 56

The present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signatory countries at the earliest possible term.

### Article 57

The present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s regards the first three countries to ratify it.

Concerning the other signatories,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the respective instrument of ratification and in the order in which such ratifications are deposited.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which shall report the date of deposit to the Governments of the signatory States of the present Treaty, as well as to those which have adhered thereto.

The Government of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shall notify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present Treaty to the Government of each one of the signatory States.

Article 58

Upon its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Treaty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to those Latin American countries which may so request. Acceptance of such accessions shall be adopted by the Council.

The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e adherent country thirty days after the date of its admission.

Adherent countries shall on that date put in force the commitments resulting from the regional tariff preference as well as the regional scope agreements concluded prior to the date of their accession.

Article 59

The present Treaty provisions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sulting from agreements signed by any of the signatory countries prior to the date of their enforcement.

Article 60

The present Treaty provisions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sulting from agreements signed by any of the signatory countries in the term between its signature and the date of its ratification. For countries which later becom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fer to agreements signed prior to their incorporation.

However, each member country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harmonize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s in force with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Treaty.

Article 61

Member countries may introduce amendments or additions to the present Treaty. These shall be executed in protocols to enter into force upon ratification by all member countries and deposit of the respective instruments, subject to other criteria established thereof.

Article 62

The present Treaty shall have an indefinite duration.

Article 63

Any member country wishing to withdraw from the present Treaty shall report such intention to the other member countries during one of the Committee sessions, formally delivering the denouncement document to the Committee one year after the date of advice referred to above. Once such denouncement has been executed, all rights and obligations corresponding to its condition as a member country shall automatically cease for the denouncing Government.

Notwithstanding the above, rights and obligations resulting from the regional tariff preference shall continue to be effective for a period of five more years, except if, at the time of denouncement, the member countries agree to the contrary. The above term shall start as from the date the denouncement is executed.

With reference to rights and obligations resulting from regional and partial scope agreements, the situation of the denouncing member country shall adjust to the specific rules which may have been established in each



agreement. Should these rules not exist, the general provision contained in the previous paragraph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apply.

Article 64

The present Treaty shall be known as the 1980 Montevideo Treaty.

**CHAPTER X - TRANSITIONAL PROVISIONAL**

Article 65

Pending ratification of the present Treaty by all signatory countries, as from the date of its enforcement by ratification of the first three countries, signatory countries which have not yet ratified shall be subject, both as regards their reciprocal relations and their relations with ratifying signatory countries, to the provisions of the legal structure of the Montevideo Treaty dated 18 February 1960, where appropriate, and specially to the resolutions adopted at the Meeting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held on 12 August 1980.

These provisions shall no longer be applied to relations between signatory countries which have ratified the present Treaty and those which have not done so, as from one year following the date of its enforcement.

Article 66

The bodies of the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established by the Montevideo Treaty dated 18 February 1960 shall cease to exist a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present Treaty.

[부록3]

#### Article 67

Non-ratifying signatory countries may participate in the Association bodies with the right to speak and vote whenever possible or of interest to them as long as ratification is pending, or until expire of the term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65.

#### Article 68

Signatory countries ratifying the present Treaty after its enforcement shall be subject to all provisions adopted prior to that moment by the Association bodies.

#### Article 69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at its Meeting of 12 August 1980 shall be incorporated to the legal framework of the present Treaty upon its entry into force.

DONE at the city of Montevideo, on the twelfth day of the month of August of the year nineteen hundred and eighty, in an original in the Spanish and Portuguese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valid. The Government of the Eastern Republic of Uruguay shall act as depositary of the present Treaty and forward duly authenticated copy of same to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signatory and adherent countries.

[부록4]

## **MERCOSUR-INDIA PTA**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and the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States Parties to the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 **CONSIDERING**

That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provides for a first stage of action aimed at increasing trade, including the mutual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s;

That implementation of an instrument providing for the granting of fixed tariff preferences during said first stage would facilitate subsequent negotiations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That the negotiations needed to implement the granting of fixed tariff preferences and to establish trade disciplines between the Parties have been conducted;

That regional integration and trade among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the creation of free trade areas, are compatible with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to the integration of their economies into the global economy, and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peoples;

That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ir economies includes the gradual and reciprocal liberalization of trade and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coop-

[부록4]

eration amongst them;

That Article 27 of the Treaty of Montevideo 1980, of which the MERCOSUR Member States are signatory Parties, authorizes the conclusion of Partial Scope Agreement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economic integration areas outside Latin America;

HEREBY AGREE AS FOLLOWS:

## **Chapter I**

### **Purpose of the Agreement**

####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are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The ‘Signatory Parties’ are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the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and the Republic of India.

#### Article 2

The Parties hereby agree to conclude thi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as a first step towards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 **Chapter II**

### **Trade Liberalisation**

#### Article 3

Annexes I and II to this Agreement contain the products on which

tariff preferences and other conditions are agreed for the importation from the respective territories of the Signatory Parties.

- a) Annex I sets forth the products on which tariff preferences are granted by MERCOSUR to the Republic of India.
- b) Annex II sets forth the products on which tariff preferences are granted by the Republic of India to MERCOSUR.

#### Article 4

The products included in Annexes I and II ar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Harmonised System (HS).

#### Article 5

Tariff preferences will be applied to all customs duties in force in each Signatory Party at the time of importing the relevant product.

#### Article 6

A ‘customs duty’ include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but does not include:

- a)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VI and XVI of GATT 1994, the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 other duties or charges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VIII of GATT 1994 and the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1

[부록4]

(b) of the GATT 1994.

#### Article 7

Except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or in GATT 1994, the Parties shall not apply non-tariff barriers to the products included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Non-tariff barriers shall refer to any administrative, financial, exchange-related or other measure whereby a Party prevents or hinders mutual trade by virtue of a unilateral decision.

#### Article 8

If a Contracting Party concludes a preferential agreement with a non Party, it shall upon request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on any additional benefits as granted therein.

### **Chapter III General Exceptions**

#### Article 9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ny Signatory Party from taking actions and adopting measures consistent with the Articles XX and XXI of the GATT 1994.

### **Chapter IV State Trading Enterprises**

#### Article 10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a Signatory Party from main-

taining or establishing a state trading enterprise as understood in Article XVII of GATT 1994.

#### Article 11

Each Signatory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 trading enterprise that it maintains or establishes acts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e Signatory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accord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in the import from and export to the other Signatory Parties.

### **Chapter V**

#### **Rules of Origin**

#### Article 12

The products included in Annexes I and II of this Agreement shall meet the rules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Annex III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qualify for tariff preferences.

### **Chapter VI**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3

On matters relating to taxes, fees or any other domestic duties, the products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any of the Signatory Parties shall receiv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Signatory Parties the same treatment as applied to the national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Chapter VII**  
**Customs Valuation**

Article 14

On matters related to customs valuation, the Signatory Parties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VII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

**Chapter VIII**  
**Safeguard Measures**

Article 15

The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safeguard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ed products which have been accorded tariff preferences established in Annexes I and II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ules agreed upon in the Annex IV of this Agreement.

Article 16

The Signatory Parties shall mainta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to apply safeguard measures consistent with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Chapter IX**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17

In apply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Signatory Parties shall be governed by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shall be consistent



with Articles VI and XVI of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Chapter X**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Article 18

The Signatory Parties shall abide by the rights and obligations set out in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Article 19

The Signatory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area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 the objective of facilitating trade.

#### Article 20

The Signatory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nclude mutual equivalence agreements.

## **Chapter XI**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21

The Signatory Parties shall abide by the rights and obligations set out in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부록4]

#### Article 22

The Signatory Parties agree to co-operate in the areas of animal health and plant protection, food safety and mutual recogni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rough their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including, inter-alia, by means of equivalence agreements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to be concluded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international criteria.

### **Chapter XII**

#### **Administration of the Agreement**

#### Article 23

The Parties agree to create a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composed by the MERCOSUR's Common Market Group or its representatives and by India's Secretary of Commerce or its representatives.

#### Article 24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hold its first meeting within sixty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hen it shall establish its working procedures.

#### Article 25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meet ordinarily at least once every year, at such venues as shall be agreed by the Parties, and extraordinarily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a Party.

## Article 26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shall adopt its decisions by consensus and shall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inter alia*:

1)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ts Annexes and additional Protocols, and continuation of the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2) To consider and submit to the Parties any modifications and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3) To evaluate the process of trade liberalisation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study the development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recommend further steps to create a Free Trade A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4) To perform other functions that may arise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ts Annexes and any additional Protocols.

5) To establish mechanisms to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areas covered by thi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6) To exchange opinions and make suggestions on any issue of mutual interest relating to areas covered by this Agreement, including future actions.

7) The creation of subsidiary bodies as may be necessary, *inter alia* on Customs, Trade Facilitation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Chapter XIII**

###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 Article 27

Any Party may initiate a proposal to amend or modif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y submitting such proposal to the Joint Administration

[부록4]

Committee. The decision to amend shall be taken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 Article 28

The amendments or modifications to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adopted by means of additional Protocols thereto.

### **Chapter XIV Settlement of Disputes**

#### Article 29

Any dispute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interpretation of, or non compliance with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established in the Annex V of this Agreement.

### **Chapter XV Entry into Force**

#### Article 30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all Signatory Parties have formally notifi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to that effect.

#### Article 3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India unless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below.

## **Chapter XVI**

### **Withdrawal**

#### Article 32

Should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sh to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it shall give formal notice of its intention to the other Party at least sixty days in advance. Once withdrawn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sumed by the Party concerned shall cease to apply, but it shall be bound to comply with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tariff preferences established in Annexes I and II of this Agreement for a term of one year,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 **Chapter XVII**

### **Depositary**

#### Article 3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for the MERCOSUR.

#### Article 34

In fulfilment of the Depositary functions assigned in the above Artic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notify the other Member States of MERCOSUR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부록4]

**Chapter XVIII**  
**Transitory Provision**

Article 35

Annexes I to V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expeditiously with a view to early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the city of New Delhi, on this the 25th day of January 2004,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Spanish,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oubt or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부록5]

### **MERCOSUR-SACU PTA**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and the Republic Oriental del Uruguay, States Parties to the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Botswana, the Kingdom of Lesotho, the Republic of Namibia,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the Kingdom of Swaziland, Member States of SACU.

WHEREAS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MERCOSUR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provides for a first stage of actions aimed at increasing trade, including the mutual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s;

WHEREAS the SACU Agreement of 2002 establishes a Common Negotiating Mechanism for Botswana, Lesotho, Namibia, South Africa and Swaziland in regard to trade relations with third Parties;

WHEREAS implementation of an instrument providing for the granting of fixed preferences during said stage will facilitate subsequent negotiations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WHEREAS the negotiations needed to implement the granting of preferences and to establish trade disciplines between the Parties have been conducted;

WHEREAS these negotiations have taken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the smaller and the lesser developed

[부록5]

economies in MERCOSUR and SACU;

WHEREAS regional integration and South-South trade, including through the creation of free trade areas, are compatible with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to the integration of their economies into the global economy, and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peoples;

WHEREAS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ir economies includes the gradual and reciprocal liberalization of trade and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co-operation ties among themselves;

WHEREAS the Parties reiterate their will to promote the South Atlantic as a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WHEREAS Article 27 of the Treaty of Montevideo 1980, of which the MERCOSUR Member States Parties are Signatory Parties, authorizes the conclusion of Partial Scope Agreement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economic integration areas outside Latin America.

HEREBY AGREE AS FOLLOWS:

## **Chapter I**

### **Purpose of the Agreement**

####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are MERCOSUR and SACU. The ‘Signatory Parties’ are the Governments of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the Republic Oriental del Uruguay,



the Republic of Botswana, the Kingdom of Lesotho, the Republic of Namibia,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the Kingdom of Swaziland.

#### Article 2

The Parties hereby agree to establish fixed preference margins as a first step towards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MERCOSUR and SACU.

### **Chapter II** **Trade Liberalisation**

#### Article 3

Annexes I and II to this Agreement contain the tariff preferences and other conditions agreed for the importation of negotiated products from the respective territories of the Signatory Parties.

- a) Annex I sets forth the preferences granted by MERCOSUR to SACU;
- b) Annex II sets forth the preferences granted by SACU to MERCOSUR.

#### Article 4

The products included in Annex I and II ar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Harmonised System (HS) 2002.

#### Article 5

Tariff preferences shall be applied to all customs duties in force in each Signatory Party at the time of importing the relevant product.

#### Article 6

A customs duty include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in

[부록5]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but does not include:

a)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and XVI of GATT 1994,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 other duties or charges imposed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i. Article VIII of GATT 1994; or

ii. the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1 (b) of the GATT 1994.

d) duties imposed by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Botswana, the Kingdom of Lesotho, the Republic of Namibia and the Kingdom of Swaziland for the development of infant industries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SACU Agreement 2002. In such cases, the SACU Signatory Party intending to apply any such duties shall promptly notify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where these duties adversely affect the preferential exports of the Republic of Paraguay and/or the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aiming at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matter, which shall be notified to the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 Article 7

Except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or in GATT 1994, the Signatory Parties shall not apply non-tariff restrictions to the exchange

of products included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Non-tariff restrictions shall refer to any administrative, financial, exchange-related or other measure whereby a party prevents or hinders mutual trade by virtue of a unilateral decision.

#### Article 8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sed products shall be subjected to the domestic regulations of the Signatory Parties.

#### Article 9

The Parties agree to negotiate a 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to be annexed to this Agreement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ignatory Parties for MERCOSUR maintain separate customs jurisdictions.

### **Chapter III** **Rules of Origin**

#### Article 10

The products included in Annexes I and II of this Agreement shall meet the rules of origin specified in Annex III in order to qualify for tariff preferences.

### **Chapter IV**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1

In matters relating to taxes, fees or any other domestic duties, the pro-

[부록5]

ducts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any of the Signatory Parties shall receiv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Signatory Parties the same treatment applied to the national produ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

## **Chapter V**

### **Customs Valuation**

#### Article 12

On matters related to customs valuation, the Signatory Parties shall refer to Article VII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

## **Chapter VI**

### **Safeguard Measures**

#### Article 13

The implementation of safeguard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ed products that are the object of the tariff preferences established in Annexes I and II sha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ules agreed upon in Annex IV of this Agreement.

## **Chapter VII**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Article 14

In apply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Signatory Parties

shall be governed by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shall be consistent with Articles VI and XVI of the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Article 15

The Signatory Parties undertake to give notice, within thirty (30) days and through their competent bodies, of the initiation of investigations in connection with dumping practices or subsidies affecting mutual trade, as well as the preliminary and final conclusions thereof.

### **Chapter VIII**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Article 16

##### Scope And Coverage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re intended to prevent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metrology of the Signatory Parties from becoming unnecessary technical barriers to mutual trade.

2. This Chapter applies to all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s defined in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3.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s defined in Annex A of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 Article 17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definitions as per Annex 1 of the WTO TBT Agreement and the decisions of the WTO TBT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WTO TBT Agreement shall apply.

## Article 18

### General Provisions

The Signatory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in respect of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the WTO TBT Agreement.

## Article 19

### Trade Facilitation

The Signatory Parties shall intensify their joint work in the field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market access. In this process, the Signatory Parties shall seek to identify initiatives that are appropriate for particular issues or sectors.

## Article 20

### Cooperation

1. The Signatory Parties shall strengthen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metrology in order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of their respective systems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access to their respective markets.

2. For such purpose, the Signatory Parties undertake the following cooperation:

- a)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the WTO TBT Agreement
- b) to strengthen their respective bodies dealing with standardisation, 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assessment and metrology, as well as their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systems;
- c) to strengthen the technical reliability of standardisation, 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assessment and metrology bodies
- d) to increase participation and seek coordination of common positions a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n issues related to this Chapter;
- e)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 f) to exchange information on the variety of mechanisms to facilitate the accep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 g) to strengthen mutual technical confidence between the competent bodies, aiming at negotiations of mutual recognition on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metrology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et by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the WTO TBT Agreement.

## **Chapter IX**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21

This Chapter applies to all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f a Signatory Party that ma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rade between the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means any measure referred to in Annex A, paragraph 1, of the WTO SPS Agreement.

Article 22

The Signatory Parties reaf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set out in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ticle 23

The Signatory Parties agree to cooperate in the areas of animal health, plant protection and food safety, through their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in order to strengthen mutual technical confidence. Such cooperation may lead to, inter alia, negotiations of equivalence agreement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with due regard to the Signatory Parties' individual domestic legislation, the WTO SPS Agreement and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SPS status.

**Chapter X**

**Administration of the Agreement**

Article 24

The Parties agree to create a 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mprised of the Common Market Group, or its representatives on the side of MERCOSUR, and of the Common Negotiating Mechanism on the side of SACU.

Article 25

The Committee shall hold its first meeting within sixty (6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o establish its working procedures.



Article 26

The Committee shall meet ordinarily at least once every year, at such venues as shall be agreed by the Parties, and extraordinarily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a Party.

Article 27

The Committee shall adopt its decisions by consensus and shall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inter alia:

- a)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ts Annexes and Additional Protocols and the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 b) to consider and submit to the Parties any modifications and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 c) to evaluate the process of trade liberalisation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study the development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recommend further steps to create a free trade a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 d) to perform other functions that may arise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ts Annexes and any Additional Protocols;
- e) to establish mechanisms to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trade between the Parties;
- f) to exchange opinions and make suggestions on any issue of mutual interest relating to trade, including future action
- g) to address non-tariff measures that unnecessarily restrict trade between the Parties.

**Chapter XI**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28

Any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interpretation of, or non-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established in the Annex V of this Agreement.

**Chapter XII**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Article 29

Any Party may initiate a proposal to amend or modif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y submitting such proposal to the Committee. The decision to amend shall be taken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30

The amendments or modifications to this Agreement shall be adopted by means of Additional Protocols thereto.

**Chapter XIII**  
**Incorporation of New Members**

Article 31

I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corporates one or more new Member States, it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s on the terms referred to in Article 32.

Article 32

The incorporation into this Agreement of new members to MERCOSUR or to SACU, as Signatory Parties, shall be formalised by means of an Additional Protocol.

**Chapter XIV**

**Entry into Force, Notification and Termination**

Article 33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signature of all the Signatory Parties and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all Signatory Parties have formally notifi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the respective internal procedures to that effect. For MERCOSUR the notification will be done by the MERCOSUR Pro Tempore Presidency and for SACU the notification will be done by the SACU Secretariat.

Article 34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for the cre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MERCOSUR and SACU unless terminated by either Party giving to the other Party twelve (12) months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Chapter XV**

**Withdrawal**

Article 35

Any Signatory Party which withdraws from the SACU Agreement or the MERCOSUR Agreement shall ipso facto on the same day as the with-

[부록5]

drawal takes effect cease to be a Signatory Party to this Agreement. Should any SACU State wish to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as a Signatory Party, it shall give formal notice of its intention to the other Signatory Parties at least sixty (60) days in advance.

#### Article 36

Once withdrawn,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sumed by the withdrawing party shall cease to apply, but it shall be bound to comply with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tariff preferences established in Annexes I and II of this Agreement for a term of one year,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The Committee shall evaluate the impact of the withdrawal on the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nd, as appropriate, recommend adjustments to the Parties.

### **Chapter XVI**

#### **Depositary**

#### Article 3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for MERCOSUR. The SACU Secretariat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for SACU.

#### Article 38

In fulfilment of their depositary functi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and the SACU Secretariat shall notify the States Parties of MERCOSUR and Member States of SACU respectively, of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Done in the city of Belo Horizont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the 16th day of December 2004, in two copies in the Spanish,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oubt or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부록6]

**MERCOSUR-GCC FRAMEWORK AGREEMENT**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Kingdom of Bahra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he Sultanate of Oman, the State of Qatar and the State of Kuwait, Parties to the Charter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hereinafter referred to as “GCC States” on one hand,  
and

The Argentine Republic,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Republic of Paraguay, and the Republic Oriental del Uruguay, Member States of the MERCOSU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RCOSUR”, on the oth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friendship already existing between them, and

Desiring to enhance and develop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m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interest,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ir countries,

Have concluded the following Framework Agreement:

**ARTICLE I**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economic, technical and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them, and encourag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echnical expertise in those fields.

## ARTICLE II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ider means and tools for expanding and liberalizing their trade relations, including the negotiation of a trade agreement, with the objective of concluding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m, taking into account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he provision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ARTICLE III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ek to provide a climate favorable for furthering trade exchange between them through:

- Enhanc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foreign trade;
- Removing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 Encouraging business relations particularly between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foreign trade;
- Giving attention to training and technology transfer.

## ARTICLE IV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encouraging capital flows between them, setting up joint investment projects and facilitating corporate investments in the various fields of economy, trade, agriculture and industry.

## ARTICLE V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exchanging visits of representatives, delegations and economic, technical and trade promotion missions between them, and organizing temporary exhibitions and provide necessary facilities and assistance to this end.

## ARTICLE VI

A Joint Committee for economic, commercial, technical, and investment cooper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This Committee shall convene alternatively in GCC Member States and MERCOSUR Member States on a regular basis or when necessary; level of participation to be specified in time. Funct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as follows:

- Following up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other agreements or protocols conclud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criteria for the negotiation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 Addressing any difficulties or disputes that might arise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Adopting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fostering their economic relations and increasing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m;
- The Committee shall be authorized to set up any subcommittees or specialized working teams, at its discretion and when deemed necessary. The Committee shall designate the duties and functions of such subcommittees and working teams, provided that said subcommittees and working teams shall submit their reports and recommendations to the Joint Committee.

## ARTICLE VII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GCC Charter and those of the GCC Economic Agreement, this Agreement and any measures taken hereunder, shall in no way affect the authority of GCC Member States to individually



[부록6]

undertake bilateral activities with MERCOSUR in the fields covered by this Agreement or conclude bilateral agreements with MERCOSUR.

#### ARTICLE VIII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 ARTICLE IX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finalisation of the necessary legal procedures.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rom the date of the latest notification received. This Agreement shall remain valid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ermination date, of hi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When this Agreement is so terminated, al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deriving from any activities or programs undertake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valid,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 ARTICLE X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X,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be the depository of this Agreement for MERCOSUR. The Republic of Paraguay shall notify the other Member States of MERCOSUR of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Done in Brasilia,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May 10th, 2005, in two copies, in the Arabic, Spanish,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all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Where discrepancy occur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